

해양유산3
**OCEAN
Heritage**
2021

CONTENTS

논 문

이규호	양(梁)에 전해진 고구려 정보와 『양직공도(梁職貢圖)』 장경모본(張庚模本)	7
나용재	『양직공도(梁職貢圖)』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특징과 제작 시기 검토 - 파사국(波斯國) 사신도(使臣圖)를 중심으로 -	29
김경록	조선시대 해양인식(海洋認識)과 해금정책(海禁政策)	65
나행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 내용 검토 - 2015년도와 2019년도 검정본의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	91

해 제

문경호	『조행일록(漕行日錄)』 해제	125
-----	-----------------	-----

서 평

이근우	『고지도, 종이에 펼쳐진 세상』의 다양한 지도읽기	147
-----	-----------------------------	-----

리 뷰

김경민	2021 실감형 미디어아트 기획전시 <심연深淵의 상상想像 : Imagine the Abyss> 전시를 되돌아보며	159
조민주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기념전시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	169
김효영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 학술대회	177

2021
해양유산3(Ocean Heritage)

편집위원

위원장 **이진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위 원 **김문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승욱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은정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장경준
국립항공박물관 전시교육실장

양(梁)에 전해진 고구려 정보와 『양직공도(梁職貢圖)』 장경모본(張庚模本)

이규호 동국대학교

I. 머리말

II. 『양직공도(梁職貢圖)』 장경모본(張庚模本) 고구려 제기(題記)의 내용구성

III. 양(梁)에 전해진 당대(當代) 고구려 정보와 직공도

IV. 맺음말

초록

양직공도는 6세기 초반 양나라에 찾아온 사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적은 사신도이다. 현전하는 양직공도의 종류는 세 종류인데, 모두 원본이 아닌 모본(模本)이다. 북송(北宋)시대에 그려진 직공도에는 사신의 그림과 함께 관련정보가 같이 적혀있고, 나머지 두 직공도는 사신도만 남아 있다. 이 양직공도에는 백제와 왜 등 당시 동아시아 국가의 사신도 역시 그려져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기에 적힌 각국에 대한 정보는 이후 양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인 『양서(梁書)』에서 외국열전을 편찬할 때에 주요 참고자료가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신도만이 남아있는 양직공도의 모본을 살피면, 본래 양직공도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신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 역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사신도 없이 각국에 대한 정보만이 적힌 새로운 종류의 모본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고구려와 신라에 관한 기록 일부가 확인되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양서』 고구려 열전이 당대의 정보 보다는 주로 이전 시대의 사서인 『삼국지』의 내용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서』의 편찬에 『양직공도』가 주된 참고자료로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면, 고구려 역시 그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필 필요가 있고, 새로운 모본의 발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본고에서 검토해본 것이다.

그 결과, 새로 발견된 양직공도 모본의 내용은 원본과 상당히 유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보의 내용은 이전 시기의 사서를 답습한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고구려인의 의복과 서적에 대한 것이었다. 의복에 대한 정보는 주로 관복(冠服)에 관한 것으로서, 전후의 사서에 보이는 관련 내용들과 비교하면 6세기 초반의 상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구려와 양이 외교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것으로서, 고구려 사신의 모습과 그의 입에서 나온 정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적 역시 같은 경로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일부나마 양에 전해지고, 그것이 『양직공도』 모본으로 전해진 것은 고구려 사신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의 질과 양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양나라의 사신이 직접 고구려에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사신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새롭게 추가된 한편, 고구려 내부사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사서의 내용을 답습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양직공도(梁職貢圖), 장경모본(張庚模本), 고구려, 양서(梁書), 사신

I. 머리말

중국 정사 동이열전은 자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각 시대의 사정을 전해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취급된다. 고구려의 경우 『삼국지』, 『후한서』가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건국~3세기 중엽부터 시작하여, 4~6세기 초반은 『위서』를 비롯한 남북조 시대 사서들이, 6세기 중반~멸망은 『주서』 이후 『신당서』에 이르는 사서들이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4~6세기는 주지하듯 5호16국~남북조 시대로서,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이어나갔다. 고구려는 이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왔고, 그들의 역사를 정리한 사서에는 거의 빠짐없이 고구려에 관한 열전이 입전되어 있다. 『양서』 고구려전도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양서』 제이전(諸夷傳)의 편찬에 『양직공도』가 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 『양서』에 열전이 실려 있는 백제의 경우, 이 『양직공도』 백제국사(百濟國使) 제기(題記)의 내용을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² 반면에 같은 동이전에 속한 왜국(倭國)은 『양직공도』에 제기가 남아있으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삼국지』를 비롯한 이전 사서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³ 이러한 점에서 『양서』 동이전 각국에 대한 서술은 『양직공도』가 중요한 전거 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당대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직공도』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양 주변국 사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신이라 함은 외교관계를 담당할 자이므로, 고구려 사신이 그려진 것 역시 양과 고구려의 외교관계를 바탕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과 고구려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사신파견과 책봉호의 수여를 두고 그동안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⁴ 이들 연구에 의하면 당시 양은 당시 혼란에 빠진 북위의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외교적 파트너로서 일정기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서』 고구려전에는 당시 고구려의 사정을 전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있을 법하지만, 여기에는 한참 이전인 『삼국지』, 『후한서』 고구려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고 있다. 외교관계에 대해서만 위의 두 사서 이후의 내용들이 전해질 뿐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삼국지, 위략, 후한서 등이 저본으로 사용되어 양서 고구려전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러한 면에서는 같은 사서를 참고하여 열전을 구성했으나 양으로의 사신 파견이 확인되지 않는 왜와도 비슷하

1. 榎一雄, 1963,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26.

2. 李弘植, 1971,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國使臣圖經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3. 河内春人, 2014, 「中國における倭人情報」, 『梁職貢圖と東部ユラシア世界』, 勉誠出版.

4. 김진한, 2007, 「6世紀 前半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軍史』64; 정원주, 2013, 「安藏王의 始祖廟 親祀와 政局運營」, 『백산학보』96; 강진원, 2016, 「고구려 安藏王의 대외정책과 남진」, 『大東文化研究』94; 최일레, 2016,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韓國古代史研究』82; 백다해, 2020, 「6세기 전반 高句麗와 梁 교섭의 실상」, 『지역과역사』46.

5. 高柄翊, 1970,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李成市, 1998, 「『梁書』 高句麗傳と東明王傳說」,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2~60쪽.

면서도 다르다. 이에 『양서』의 편찬이 당 태종대에 진행된 것에 주목하여, 고구려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⁶

『삼국지』에 단독열전이 없었던 백제의 『양서』 열전 내용과 『양직공도』의 관계를 고려하면 『양서』 고구려전의 작성에도 『양직공도』가 일정부분 저본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신도가 그려진 세 종류의 『양직공도』 모본을 비교해보면, 본래 사신도와 제기가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고구려와 신라는 사신도만 남아있어 제기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기왕의 연구들에서 『양서』 고구려전을 다룰 때, 전거자료로서 『삼국지』 등이 주로 거론된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한원』⁷과 『속고승전』⁸에 일부가 인용되어 있지만, 백제와 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체적인 내용이 당대의 사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지도 알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양직공도』의 또 다른 판본으로 장경모본(張庚模本)의 존재가 알려져 주목된다.⁹ 여기에는 그림이 없고 제기만이 남아있는데, 기존의 판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구려와 신라의 제기가 실려 있다. 특히 장경모본의 내용 중에는 『한원』에 인용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종래 일부나마 전해지던 고구려 제기가 『양직공도』의 그것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본문에서 살펴겠지만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에는 의복과 서적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한다. 이들 기록은 『양서』 고구려전에는 보이지 않아, 『양직공도』 고구려 제기가 왜(倭)와는 달리 전대의 사서만을 재구성하여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 가운데 의복이 있다는 것은, 고구려에서 양으로 간 사신이 모티브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당시 양(梁)을 찾은 고구려 사신단의 모습이 현전하는 제기에 반영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경모본 고구려 제기의 내용을 통해 『양직공도』와 『양서』 고구려전의 관계를 밝히고, 『양서』 고구려전이 가지는 당대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양직공도(梁職貢圖)』 장경모본(張庚模本) 고구려 제기(題記)의 내용구성

먼저 장경모본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②高句驪晉東夷夫餘之別種也。漢世居玄菟之高驪縣，故以號焉。光武初，高句驪王遣使朝貢，則始稱王。④-1其俗，人性凶急惡，而潔淨自善。④-2婦人衣白，男子衣絺錦，飾以金銀。貴者冠幘而無後，以金銀爲鹿耳，羽加之幘上。賤者冠折風，其形如古之弁，穿耳以金

6. 尹龍九, 2012, 「현존(梁職貢圖)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46, 246~247쪽; 백길남, 2018, 「중국왕조의 '百濟略有遼西' 記事 서술과 인식 -百濟郡 설치를 중심으로-」, 『百濟學報』25, 198쪽.

7. 『한원』 고려기. (원문사료)

8. 『續高僧傳』권24, 護法下, 唐新羅國 大僧統 釋慈藏傳. "案梁職貢圖, 其新羅國, 魏曰斯盧, 宋曰新羅, 本東夷辰韓之國矣."

9. 趙燦鵬, 「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의新發現」, 『文史』94, 2011.

環。上衣曰表，下衣曰長袴，腰有銀帶。④-3頗習書，其使至中國則多求經史。④建武中，奉表貢獻。

전체적인 내용은 길지 않지만 크게 세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다. 종족과 거주지 등 기원에 관련된 ②, 습속과 관련된 ④, 교섭과 관련된 ④로 나뉜다. ④는 다시 고구려인의 성질에 대한 ④-1과 의복에 관한 ④-2, 서적과 관련된 ④-3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대체로 『삼국지』 이래 중국 정사 고구려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의 제기 내용을 각 사서들과의 비교한다면 전승정보와 신출(新出)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의 구분에 따라 각 구절과 관련된 중국 정사의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출처 등을 먼저 파악한다.

표1. ② 기원

장경모본	사서	기사
高句驪晉東夷夫餘之別種也。漢世居玄菟之高驪縣，故以號焉。光武初，高句驪王遣使朝貢，則始稱王。	삼국지	高句驪在遼東之東千里...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후한서	高句驪在遼東之東千里...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위서	高句驪者，出於夫餘
	양서	高句驪者，其先出自東明...其後支別爲句驪種也。其國，漢之玄菟郡也...漢武帝元封四年，滅朝鮮，置玄菟郡，以高句驪爲縣以屬之。

표에 나타나듯이, 고구려의 기원과 관련된 정보는 기존의 정사기록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가 종족적으로 부여의 별종이라는 정보는 이미 『삼국지』나 『후한서』에 등장하고 있다. 장경모본의 내용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구려가 동이 부여의 별종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진(晉)’이라 한 것이다. 『양직공도』보다 성립시기가 앞선 사서들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양직공도』를 제작할 당시에 양에서 그에 대한 별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진(晉)’이라는 시점은 해당 왕조의 역사를 고려할 때 서진과 동진의 경우 모두를 상정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비록 현전하는 『진서』에는 별도의 고구려전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에서 고구려에 수여한 인장 등의 존재를 통해 양자 간의 교섭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¹⁰ 후자는 동진의 성립 이후일 것이므로 317년보다 늦은 시기에 전해진 것으로 보게 된다. 고구려는 고국원왕 6년인 336년과 13년인 343년에 동진으로 사신을 파견한 바 있으므로,¹¹ 이 때 파견된 사신에 의해 관련 정보가 전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0.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驪率善」印과 高句驪의對西晉 관계」, 『한국고대사연구』67.

11. 『삼국사기』권18, 고국원왕 6년조. “六年，春三月，大星流西北，遣使如晉，貢方物。”; 同 13년조. “秋七月...遣使如晉朝貢。”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晉)’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인 시점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먼저 『삼국지』의 시간적 배경은 서진보다 앞선 조위대(曹魏代)로서, 해당 시기에 이미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라는 전승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한다. 후술하겠지만 『양직공도』가 편찬될 당시에 『삼국지』는 선행 기록으로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삼국지』의 배경 연대는 진(晉)보다 앞선다. 『양직공도』와 『양서』, 『삼국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양직공도』 작성 당시 고구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시간적 배경은 진(晉)이 아니라 위(魏)라고 썼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라면 고구려인 자신들이 전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고구려인 스스로 부여에서 출자(出自)했다고 전하는 기록은 『광개토왕비』와 『모두루묘지』 등 400년대에나 확인된다는 점에서 반세기 가량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금석문에서 부여 출자는 시조 추모왕(鄒牟王)에서 찾고 있다. 만약 부여 출자에 대한 정보가 고구려인에 의해 전해졌다면 추모왕의 연대인 한(漢)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진(晉)은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구체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한(漢)의 현도군 고려현에 세거(世居)했으므로 국호로 삼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삼국지』나 『후한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양서』에는 고구려가 한(漢)의 현도군이라 하고, 한 무제의 조선 정벌 후 한사군을 설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경모본에 보이는 『양직공도』의 내용이 『한서』 지리지나 『삼국지』 동옥저전(東沃沮傳)과 같은 기록을 참조하여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구려를 국호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현도군 고구려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만한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막연하게나마 양대(梁代)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표2. ㉑-1 성질

장경모본	사서	기사
其俗, 人性凶急惡, 而潔淨自善.	삼국지	其人性凶急, 喜寇鈔...其人潔淨自喜
	후한서	其俗淫, 皆潔淨自憲...其人性凶急
	위서	其俗淫...然潔淨自喜
	양서	人性凶急...其人潔淨自喜

다음으로는 습속 가운데 고구려인의 성질에 관한 내용들이 보인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서술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삼국지』부터 『양서』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들이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후대의 사서에도 이어지는데, 『위서』에는 ‘其俗淫...然潔淨自喜.’이라 하였고, 『수서』에는 ‘潔淨自喜...性多詭伏.’, 『통전』은 ‘皆潔淨...其人性凶急’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삼국지』 부여전의 부여인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 중원왕조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중원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했던 『위서』만이 고구려인의 성격에 대하여 ‘흉급(凶急)’하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3. ㉑-2 의복

장경모본	사서	기사
婦人衣白, 男子衣結錦, 飾以金銀. 貴者冠幘而無後, 以金銀爲鹿耳, 羽加之幘上. 賤者冠折風, 其形如古之弁. 穿耳以金環. 上衣曰表, 下衣曰長袴, 腰有銀帶.	삼국지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후한서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위서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爲飾
	양서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所著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주서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수서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구당서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國人衣褐戴弁, 婦人首加巾幘
	신당서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釦...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幘
	한원	梁元帝職貢圖云, 高驪婦人衣白, 而男子衣結錦, 飾以金銀. 貴者冠幘, 而後以金銀爲鹿耳, 加之幘上, 賤者冠折風, 穿耳以金環...上衣曰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左佩礪, 而右佩五子刀, 足履豆禮鞮

㉑-2는 고구려의 의복에 관한 정보를 전한다. 장경모본에는 남녀가 입는 옷의 이름을 기술한 뒤, 금은으로 장식한다는 정보를 전한다. 이어서 귀한 자(貴者)는 뒤가 없는 책(幘)을 쓰고 금은으로 귀를 만들며 깃털을 책 위에 더한다고 하고, 천한 자(賤者)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고깔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귀를 뚫어 금귀고리를 하는 것이나, 상하의의 이름 및 허리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으로 알려졌던 『삼국지』나 『후한서』보다 풍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후한서』에 의하면 고구려는 공회(公會)를 할 때에 의복을 금수(錦繡)로 하고 금은으로 장식하며, 대가와 주부는 책(幘)을 쓰고 소가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다고 하였다. 큰 틀에서 보면 장경모본의 기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귀한 자

(貴者)와 천한 자(賤者)는 대가(大加)와 소가(小加)와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책(幘)과 절풍(折風)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복을 금으로 장식한다는 점에서 동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것 역시 확인된다. 남녀가 입는 옷의 이름으로서 각각 결금(結錦)과 백(白)이 전해지는 것이나, 책(幘)에 금으로 귀를 만들고 깃털을 더한다는 것은 『삼국지』나 『후한서』에 보이지 않던 내용이다. 오히려 이런 내용은 『위서』를 시작으로 양(梁) 이후 시대에 해당하는 사서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위서』에는 책(幘)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깃털을 꽂아 귀편을 드러낸다고 하여 관을 장식하는 깃털의 존재가 처음 등장한다. 후대에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자세해져서 관의 이름으로 골소(骨蘇)가 새롭게 등장함과 함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관의 색이나 허리띠, 가죽신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고구려 의복은 『삼국지』를 시작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착용하는 관복(冠服)을 중심으로 국민(國人)이 착용하는 것까지 점차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복(冠服)이 관인 및 신분제와 관련됨을 고려한다면 시간에 따라 분화해 갔던 고구려 관제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하겠다. 즉, 본래 존재했지만 전해지지 않았던 정보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고구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늘어난 관복의 양상이 각 시기별 정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한원』에 인용된 『직공도』의 내용과 장경모본의 제기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양자는 몇몇 글자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통해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는 본래 『양직공도』 고구려 제기의 내용에 해당했을 것이며, 『양서』 고구려전과는 다른 별도의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¹²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신의 왕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한다.

표4. ㉑-3 서적

장경모본	사서	기사
頗習書, 其使至中國則多求經史	구당서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신당서	人喜學, 至窮里廡家, 亦相矜勉, 衢側悉構廡屋, 號扁堂,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
	통전	其國中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玉篇·字統·字林

12. 전상우, 2020,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과 편찬 방식』, 『동북아역사논총』68, 259쪽.

다음으로는 고구려가 자못 글에 익숙하며, 사신이 중국에 이르면 경사(經史)와 같은 서적을 많이 구했음을 전한다. 이 역시 『양서』 고구려전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보이다. 관련 기록은 후대의 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 『통전』에서 확인된다. 그에 따르면 서적을 좋아한다거나(愛書籍), 배우기를 좋아하여(喜學) 경당(扁堂)을 세우고 미혼자제가 경서 읽기와 활쏘기를 익혔다고 한다. 뒤이어 고구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서적의 명칭이 나온다.

당대(唐代) 고구려의 서적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은 장경모본의 제기가 축약된 형태로 모두 담고 있다. 즉, 정사류에 등장하는 것으로는 당대(唐代)가 처음이지만 이미 양대(梁代)에 사신을 통하여 다양한 서적을 구하고자 했던 당시 고구려인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늦어도 6세기에는 중국의 서적을 구하는데 열심이었던 고구려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사신의 파견을 통한 외국서적의 획득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서』 백제전에는 원가(元嘉) 27년(450)에 표를 올려 서적을 구한 사실이 있으며,¹³ 『양서』 백제전에는 대동(大同) 7년(541) 불교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구한 내용이 전한다.¹⁴ 이로 보아 구한 책의 종류는 다르지만 필요한 서적을 구함에 있어 고구려와 백제 모두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여 획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표5. ㉒ 교섭

장경모본	사서	기사
建武中, 奉表貢獻.	삼국지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후한서	建武八年, 高句驪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양서	光武八年, 高句驪王遣使朝貢, 始稱王

마지막으로는 후한 광무제 건무 연간(25~57)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공헌했다는 짤막한 기사가 전한다. 이는 앞서 ㉑의 내용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던 ‘光武初, 高句驪王遣使朝貢, 則始稱王.’과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¹⁵ 표에 보듯이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거의 동일한 형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발췌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를 시작으로 각 사서에는 이후의 교섭기사가 연이어 나타난다. 『양직공도』의 제기는 필사를 통해 전해져왔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중복 기록한 현상은 오사(誤寫)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전하는 장경모본의 제기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교섭기사가 일부만 전해진 형태

13. 『송서』 권97, 백제전. “二十七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 太祖並與之.”

14. 『송서』 권97, 백제전. “中大通六年·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并請涅槃等經義·毛詩博士, 并工匠·畫師等, 敕並給之.”

15. 통전의 연호에도 건무(建武)(317~318)가 있지만, 이 기간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고, 본래 『양직공도』 고구려 제기에는 후한 건무연간부터 양(梁)에 이르는 교섭기사들이 축약되어 서술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국 제기의 내용은 이러한 추정에 참고가 된다.

B. 옛 來夷 馬韓의 무리로, 晉末 駒麗가 遼東을 畧有하자, 樂浪 역시 遼西 晉平縣을 차지하였다. 晉 이래로부터 항상 蕃貢을 행하였다. 義熙 연간에(405~418), 그 王 餘腆이, 宋 元嘉 연간에(424~453), 그 王 餘毗가, 齊 永明 연간에(483~493), 그 王 餘太가 모두 中國의 官爵을 받았다. 梁 初에 太를 征東將軍으로 삼았다. 곧 고구려에게 격파되었다. 普通 2년(521), 그 王 餘隆이 사신을 보내 表를 올리며 말하기를, 여러 차례 高麗를 격파하였다 하였다.¹⁶

B의 내용은 『양직공도』 북송모본에 남아있는 백제의 제기이다.¹⁷ 교섭기사를 보면 동진(東晉)~양(梁)에 이르기까지 남조의 각 왕조별로 사신을 보낸 백제왕의 이름과 작호를 받은 사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고, 고구려와의 전쟁사실을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다. 양자 간의 교섭사실 이외에 백제 요서영유(遼西領有)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의 경우에도 양자 간의 교섭 기사 이외의 사건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때 다음의 기사를 주목해볼 수 있다.

C. 垂가 죽자, 아들 寶가 즉위하여, 句驪王 安을 平州牧으로 삼고, 遼東·帶方二國王에 봉하였다. 安이 처음으로 長史·司馬·參軍官을 두고, 이후 遼東郡을 畧有하였다.¹⁸

C는 『양서』 고구려전에만 확인되는 내용이다. 후연의 모용보가 즉위한 뒤 고구려(句驪王) 안(安, 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 봉요동(封遼東)·대방이국왕(帶方二國王)으로 삼았는데, 그가 처음으로 장사(長史)·사마(司馬)·삼군(參軍)의 관(官)을 설치하고 요동군을 다스렸다(畧有)고 한다. 이는 고구려가 막부를 운영하였던 근거사료로 활용되었고,¹⁹ 『양서』 고구려전 가운데 원전을 알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자, 고유 전승자료로서 이해되었다. 그런데 B와 같이 『양직공도』 백제기의 독자적 내용이 『양서』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앞서 의복·서적과 같은 『양직공도』의 독자 정보 고구려 역시 『양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 C의 내용 역시 여기에 해당될지 모른다.

16. 『양직공도』 백제. “舊來夷馬韓之屬, 晉末駒麗畧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晉平縣. 自晉已來常修蕃貢. 義熙中(405~418), 其王餘腆, 宋元嘉中(424~453), 其王餘毗, 齊永明中(483~493), 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爲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普通二年(521), 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17. 장경모본에도 백제의 제기가 있는데, 북송모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 북송모본을 대표로 제시하였다.

18. 『양서』 권54. 고구려전.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畧有遼東郡.”

19. 임기환, 2004, 「4세기 고구려의 막부제와 낙랑·대방 경영」,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189~190쪽.

다만 이 내용이 『양직공도』에 처음 등장한 것 같지는 않다.

D. 其官位加長史·司馬·參軍之屬. 拜則申一脚, 坐則跪, 行則走, 以爲恭敬. 國有銀山, 採爲貨. 並人貂皮, 重中國綵纈, 丈夫衣之, 亦重虎皮.

D는 『건강실록(建康實錄)』에 남아있는 『남제서』 고구려전의 후반부 일문(逸文)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하면 고구려의 관위(官位)로서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이 보인다. 이를 통해 C(『양서』)의 내용은 D(『남제서』)를 일부 참고하여 썼을 수 있다 생각된다. 여기에는 『한원』에 보이는 은산(銀山) 관련 기록도 보이고 있다.²⁰ 시대를 달리하는 기록인 C와 D가 일치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조 계통의 사서에도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따라서 표 5에 제시한 장경모본의 기술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당대에 전해진 독자적 정보가 기술되어 있었고, 그 유력한 기사 중의 하나로 C 내지 D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에서 고구려, 백제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정보를 갱신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C의 기사 앞에는 후연과 고구려가 요동군과 현도군을 두고 쟁탈한 사실이 전하고,²¹ 그보다 앞서는 전연의 모용황이 고구려의 환도성을 함락시킨 사실을 전한다.²² 전연이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표문을 올리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요동의 정세에 대해서는 전연에 의해 정보들이 전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요동을 차지한 세력에 의해서 정보가 전해졌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전 시기의 사서를 답습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별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서 양국 간 사신 파견에 주목하고, 그러한 사정이 『양직공도』에 투영되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양(梁)에 전해진 당대(當代) 고구려 정보와 직공도

앞 장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현전하는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내용은 이전 시기의 사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부분과 새롭게 정보를 얻어 작성한 부분으로 나뉜다. 본 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이 언제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답습한 부분은 왜 그러한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새롭게

20. 『한원』 고려기. “高麗記云, 銀山在安市東北百餘里, 有數百家, 採之以供國用也.”

21. 『양서』 고구려전. “孝武太元十年, 句驪攻遼東·玄菟郡, 後燕慕容垂遣弟農伐句驪, 復二郡.”

22. 『양서』 고구려전. “晉永嘉亂, 鮮卑慕容廆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句驪王乙弗利頻寇遼東, 廆不能制. 弗利死, 子釗代立, 康帝建元元年, 慕容廆子晃率兵伐之, 釗與戰, 大敗, 單馬奔走. 晃乘勝追至丸都, 焚其宮室, 掠男子五萬餘口以歸.”

게 작성된 부분은 그것이 어느 시점의 내용을 전하는 것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구려인의 의복과 관련해서는 기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사서별 의복 분류

	왕	貴者/大臣	賤者/使人/次	國人/庶人/人/男子	婦人	기타
장경모본		幘, 金銀鹿耳, 加羽	折風, 耳金環	袷錦, 金銀飾	白	表, 長袴, 銀帶
한원		幘, 金銀鹿耳	折風, 耳金環	結錦, 金銀飾	白	衫, 長袴, 銀帶, 豆禮鞮
위서		折風, 插鳥羽, 貴賤有差				
주서		骨蘇(紫羅冠), 金銀飾, 插鳥羽(有官品者)				
수서		紫羅冠, 金銀飾	插鳥羽	皮冠		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구당서	五綵, 白羅冠, 白皮小帶, 冠帶金飾	青羅冠, 插二鳥羽, 金銀飾	緋羅冠, 插二鳥羽, 金銀飾	褐衣, 弁	巾幘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신당서	五采, 白羅冠, 金釧革帶	青羅冠, 插二鳥羽, 金銀飾	緋羅冠, 插二鳥羽, 金銀飾	褐衣, 弁	巾幘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의복 관련 기록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구분된다. 장경모본의 기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다. 모본에는 귀한 자(貴者)는 책(幘)을 쓰고 금은으로 귀를 만들며 새 깃을 더하고, 낮은 자(賤者)는 절풍(折風)을 쓰고 금귀고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남자의 의복은 금(錦)을 사용하고 금은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위서』에는 책(幘)에 대한 구절이 없고, 절풍에 새 깃을 꽂는데 귀천에 차이가 있다고만 전한다. 그러나 4~5세기에 조영된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 벽화고분의 묘주가 쓰고 있는 것이 책(幘)으로 알려져 있어,²³ 책을 썼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의 누락이라고 보는 쪽이 타당할 듯하다.²⁴ 그렇다면 『위서』의 서술은 책과 절풍을 쓰는 자로 구분한 뒤, 귀천에 따라 새 깃을 꽂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모본에 비해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주서』에는 책과 절풍 대신 자라관(紫羅冠)으로 골소(骨蘇)만이 소개되고 있다. 금은으로 장식하고 관뿔이 있는 자는 새 깃을 꽂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골소는 책을 가리키는 고구려식 표현으로 보인다. 『주서』는 앞뒤의 사서와 달리 귀천에 따른 관(冠)의 구별이 없이, 관뿔의 유무에 따라 새 깃을 꽂는다고 한다. 그런데 『수서』에 의하면 자라관(紫羅冠)은 귀한 자(貴者)가 쓰는 관이라 하였으므로 『주서』에서도 자라관은 귀한 자(貴者)가 썼던 관이었을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주서』에는 『위서』와 반대로 신분이 낮은 자가 썼던 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서』는 귀천(貴賤)의 구분이 아니라 귀한 자(貴者)와 사인(使人)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명칭만 달라질 뿐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전자는 『주서』와 동일하게 금은으로 장식한 자라관(紫羅冠)을 쓰는 한편, 후자는 새 깃만을 꽂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계층으로서 인(人)이 보이는데, 모두 피관(皮冠)을 쓴다고 한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왕의 복식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왕은 오채(五綵)를 사용하고 백라관(白羅冠)을 쓰며 금만을 사용하여 허리띠와 관을 장식한다. 다음으로 관(官)이 높은 자는 금은으로 장식한 청라관(靑羅冠)에 새 깃을 꽂고, 그 다음은 금은으로 장식한 비라관(緋羅冠)에 새 깃을 꽂는다고 한다. 『수서』까지만 해도 자라관(紫羅冠)만 보였던 것이 청라(靑羅)와 비라(緋羅)로 나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인(國人)은 변(弁)을 쓴다고 하는데, 절풍의 모양이 고깔과 같다고 한 『삼국지』 등의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서』 이후 어느 시점부터 절풍은 관인이 아닌 자가 쓰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의 고구려 의복 관련 기록은 셋으로 그룹을 묶을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책과 절풍으로 쓰는 것을 나눈 『양직공도』와 『위서』가 첫 번째 그룹이 된다. 책과 절풍을 씌우므로 귀천을 구분하는 것은 『삼국지』에서 대가와 소가가 책과 절풍을 쓴 것과 대응된다. 따라서 장경모본과 『위서』에서 말하는 귀천(貴賤)은 관인으로서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을 장식하는 것으로 새 깃이 추가되었다. 즉 4세기 중엽~5세기 초에는 새 깃을 꽂은 책을 쓴 귀한 자(貴者)와 절풍을 쓴 천한 자(賤者)로 구별되었다.

이어서 골소(紫羅冠)와 새 깃을 꽂는 것으로 나눈 『주서』와 『수서』가 두 번째 그룹을 구성한다. 책(幘)을 썼던 귀한 자(貴者)는 자라관을 쓰게 되었고, 천한 자(賤者)에 대응하는 사인(使人)은 어떠한 관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새 깃을 꽂았다. 관뿔이 있는 자는 새 깃을 꽂는다는 『주서』의 기록을 고려하면, 새 깃의 착용 여부가 관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절풍을 쓰는 계층이 보이지 않고, 피관(皮冠)을 쓰는 인(人)이 나타나는데, 당대(唐代)에

23. 공석구, 1998,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고구려발해연구』, 5.

24. 전호태, 2000, 「고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인의 신분관」,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5. 임기환, 2004, 앞의 책, 248쪽.

국인(國人)이 쓰는 관으로서 弁(절풍)이 보이는 것을 보면, 피관(皮冠)이 절풍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 무렵부터 지위가 낮은 관인이 썼던 절풍은 인(人) 혹은 국인(國人)으로 표현된 계층이 쓰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왕을 비롯한 네 계층이 관(冠)의 색깔과 종류에 따라 나눈 『구당서』, 『신당서』가 세 번째 그룹이 된다. 귀한 자(貴者)가 썼던 자라관은 관귀자(官貴者) 혹은 대신(大臣)이 쓴 청라관(靑羅冠)이 되었고, 그 아래에는 새롭게 비라관(緋羅冠)이 등장하였다. 『주서』, 『수서』 단계에 사인(使人)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미상의 관(冠)이 비라관(緋羅冠)으로 변화했을 수 있다. 왕이 5채를 쓰고 금으로 장식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관인(官人)의 관(冠)이 공통적으로 금은 장식과 새 깃을 꽂으면서도 지위의 고하에 따라 비단의 색깔을 달리하였음을 보여준다.²⁶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구분은 각 사서의 배경 연대와도 부합한다. 여기에 대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썼다는 『삼국지』의 기록까지 합하면, 중국 정사 고구려전에 등장하는 의복

도1. 고구려 사신도(使臣圖)



고덕겸모본



염립본

관련 기록은 일정한 계통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책/절풍 → 책+새 깃/절풍 → 자라관+새 깃/??+새 깃/皮冠(절풍?) → 백라관+금장식/청라관+금은장식+새 깃/비라관+금은장식+새 깃/절풍’의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관품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공복(公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원왕조의 사람들은 고구려인의 공복 입은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을까. 『양직공도』에 그려진 사신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왼쪽 그림과 같이, 고구려 사신의 모습은 두 종류가 전한다. 주목되는 것은 관(冠)에 꽂혀 있는

두 개의 새 깃으로, 귀한 자(貴者)가 꽂는다는 장경모본의 서술에 부합한다. 또한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관은 책으로 보이는데, 뒤로 늘어뜨린 부분이 없다는 것 역시 장경모본의 서술과 일치한다. 그 외에 보이는 약간의 차이로서 염립본에는 금귀고리가 그려져 있는데 반해, 고덕겸모본에는 귀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두 그림이 양대(梁代)의 것이 아닌 후대의 모본이라는 점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제기의 내용을 보고 그리는 사람이 다르게 이해하여 그린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장경모본과 한원을 다른 사서들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차이점은 ‘금은록이(金銀鹿耳)’라는 묘사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경모본과 『한원』의 내용을 비교하면 『한원』에는 양직공도와 달리 ‘새 깃(羽)’에 대한 표현이 없이 금은록이(金銀鹿耳)를 책 위에 꽂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한원』의 내용에 따르면 양직공도에서 말하는 책의 장식은 금은록이(金銀鹿耳)가 되며, 직공도 독자의 기록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에 의하면 분명 사신의 관(冠)에는 새 깃과 같은 장식이 꽂혀 있으며 형태상으로 보아 사슴 귀와 같은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후의 사서들을 비교해보아도 금은록이(金銀鹿耳)라는 표현은 이후로 이어지지 않는 돌출된 표현이므로, 그것을 바로 새 깃과 동일하게 이해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다만 사슴의 귀라는 형태에 주목할 때, 우측의 그림에서 관의 하단 부에 보이는 두 개의 삼각형 모양 장식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새 깃이 묘사된 관 상단부의 장식과 별개로 보이는데, 금은록이(金銀鹿耳)가 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보고 묘사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전하는 두 고구려 사신은 양대(梁代)의 모습으로서,²⁷ 구체적으로는 장경모본의 귀한 자(貴者)를 묘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상상이 아니라 직접 본 바에 근거하여 그렸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500년대부터 양(梁)에 꾸준히 사신을 보내왔고, 이 가운데 『양직공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520~30년대에는 총 네 차례의 사행이 확인된다.²⁸ 아마도 『양직공도』에 그려진 인물은 이 기간에 양을 방문한 고구려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장경모본과 『한원』의 양직공도 관련 서술에 의복과 관련하여 부인이 착용한 옷과 기타 의복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보들은 시기로 보아 양대(梁代)를 시작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역시 양에 전해진 새로운 정보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관복에 대한 정보가 양을 방문한 사신을 통해 습득되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 때 이 정보들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26. 선행연구에서는 자라관(紫羅冠)과 비라관(緋羅冠)의 착용양상이 비슷하다고 보고 청라관이 분화된 것으로 보았다(임기환, 앞의 책, 250쪽). 그에 따르면 금은으로 장식하고 새 깃을 꽂는 것은 비라관에만 해당하는 서술이다. 하지만 이전 단계인 『양직공도』, 『위서』에서부터 관인으로서 책을 쓰는 자가 새 깃을 꽂고 금은으로 장식했다고 했으므로, 금은 장식과 새 깃은 모든 관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27. 李成市, 2014, 「『梁職貢圖』高句麗·百濟·新羅のについて」, 『『梁職貢圖』と東部ユラシア世界』, 勉誠出版, 434쪽.
28. 『삼국사기』 권19, 안장왕 2년 정월 및 9월, 8년 3월, 9년 11월. 이 가운데 2년 정월과 8년의 사행은 『양서』 고구려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이해하려면 당시 고구려의 사신단에 부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의복 관련 기록 말미에 등장하는 바지나 저고리 등에 대한 서술은 관(冠)에 대한 보완설명이라 생각된다. 표6에 정리했듯이 고구려 관인의 신분은 관의 형태나 장식유무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이 경우 관인(官人)이 관만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옷에도 구분이 있었겠지만, 가장 특징적이었던 관(冠)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옷에 대해서는 형태상의 특징이나 공통점에만 주목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기록상 지속적으로 관(冠)의 구별을 통해 신분의 구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면, 적어도 관인(官人) 사이에 의복 상의 구별보다는 관의 구별에 중점을 둔 고구려의 사정을 반영한 기술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부인(婦人)에 관한 서술은 앞서의 설명대로라면 사신단에 부인(婦人)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신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전하는 기록에 한하는 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할 때에 부인(婦人)을 비롯한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근래에 고구려에서 통역관으로 여성이 있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어,²⁹ 공적 업무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그 업무가 통역이었다면, 외국으로 가는 사행에 필수적이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양에서 당시 고구려 장사(長史)의 의복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조시기에 고구려에서 사신으로 파견된 자들 가운데 長史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 晉 安帝 義熙 9년(413), 高麗王 高璉이 長史 高翼을 보내 表를 올리고, 赭白馬를 바쳤다.³⁰

[宋]少帝 景平 2년(424), 璉이 長史馬婁 등을 보내 闕에 이르러, 方物을 바쳤다.³¹

[宋]世祖 孝建 2년(455), 璉이 長史董騰을 보내 表를 올리고 國哀 2주기를 위로하고, 아울러 方物을 바쳤다.³²

E는 동진(東晉)부터 송대(宋代)에 걸쳐 사행(使行)한 고구려 장사(長史)들의 활동을 전한다. 양(梁)대의 사실은 아니지만 이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앞서 본 『양서』 고구려전의 장사(長史), 사마(司馬), 참군(參軍) 설치 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고구려에 장사 등을 두었다는 서술은 장사(長史) 직함을 지닌 자가 남조에 사신으로 파견된 것에 기인했

을 가능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신으로서 고구려 관인의 모습을 양에 보여주고, 장사 등의 설치와 같은 사정을 전했다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적을 구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장경모본 고구려 제기에 남아 있는 새로운 정보들은 바로 『양직공도』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을 매개로 양에 전파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반대로 장경모본에 전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의복과 서적입수 등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당시 양이 고구려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고구려 사신에게도 나름 목적이 있는 이상, 상대국에 자국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공국에 대한 정보가 정체되는 시기가 생겼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 역시 『삼국지』 등 이전 시기 사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삼국지』와 장경모본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보다 후대의 기록인 『주서』 이후의 고구려전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각 사서 사이에 내용 상 큰 변화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³³

중국정사 고구려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고구려에 대한 정보들이 크게 바뀌는 시기가 두 번 보인다. 첫 번째는 『위서』 고구려전이다. 주몽신화가 서두에 등장하고, 형(兄)과 사자계(使者系) 관명이 관제의 주축으로서 소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서』 이후의 고구려전이다. 대대로의 등장과 그를 둘러싼 다툼, 소유에 따라 차등 있게 걷는 조세 수취, 반역죄에 대한 처벌 등 사회의 분화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주서』 이후의 사서들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전하는 『한원』 「고려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구려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삼국지』, 『위서』, 『한원』 「고려기」는 각 시기를 대표하는 사료로서 취급된다. 그런데 이 사서들의 고구려 관련 기록들은 현지에 직접 가서 얻은 정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삼국지』는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³⁴ 『위서』는 435년 이오(李敖)의 고구려 사행(使行),³⁵ 『한원』 「고려기」는 641년 진대덕(陳大德)의 고구려 사행(使行)이³⁶ 해당 정보들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곧 직접 가서 겪지 않는 이상, 중국 측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고구려와 남조 사이에는 왕래에 더 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고구려에 대한 정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는 고구려와의 교섭기사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29. 정승혜, 2017, 「古代의 譯人」, 『목간과문자』 17, 178~180쪽

30. 『남사』 권79, 고구려. “晉安帝 義熙九年(413), 高麗王 高璉遣長史 高翼奉表, 獻赭白馬.”

31. 『송서』 권97, 고구려. “少帝 景平二年(424), 璉遣長史馬婁等詣闕, 獻方物.”

32. 『송서』 권97, 고구려. “世祖 孝建二年(455), 璉遣長史董騰奉表慰國哀再周, 并獻方物.”

33. 민족지적 기록을 채택함에 있어 이전 사서의 채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면(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역사』 45, 2019, 15쪽), 별도의 정보 추가 없이는 이전 사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34. 『삼국지』 권30, 東夷傳 序.

35. 『삼국사기』 권18, 장수왕 23년 6월. “二十三年, 夏六月, 王遣使入魏朝貢, 且請國諱. 世祖嘉其誠款, 使錄帝系及諱以與之, 遣貢外散騎侍郎李敖, 拜王為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36. 『자치통감』 권196, 貞觀15년 7월; 『삼국사기』 권20, 영류왕 24년.

그러나 한편으로 고구려를 방문하는 것이 꼭 새로운 정보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송(宋)의 경우 경평(景平) 2년인 424년에 고구려 사신방문의 답례로 알자(謁者) 주소백(朱邵伯)과 부알자(副謁者) 왕소자(王邵子) 등을 보냈고,³⁷ 원가(元嘉) 12년(435) 고구려에 망명한 풍홍을 처리하는 문제로 군대를 파견했지만,³⁸ 이를 계기로 『송서』에 이전에 없던 내용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양국 간의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정보의 유입 정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삼국지』는 조위와 고구려의 전쟁과정에서 그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것이었고, 『위서』 역시 북연을 사이에 두고 긴장관계가 생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고려기」는 애초에 고구려 정탐을 목적으로 파견된 후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양(梁) 역시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알기 어렵다. 520년 2월 양(梁)은 고구려 안장왕에게 책봉호를 내림과 동시에 영동장군(寧東將軍)의 의관과 칼 및 패물(佩物)을 전할 사신을 파견하게 하였다.³⁹ 문제없이 도착했다면 양의 사신은 고구려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접했겠지만, 북위에 의해 사로잡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양 사이의 사신파견은 541년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양국은 520~30년대에 교섭의 빈도를 높였는데, 『양직공도』의 성립연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비록 거의 일방적인 고구려에서 양으로의 사행이었지만, 이를 통해 『양직공도』에는 고구려 사신에 대한 모습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 현전하는 『양직공도』 제기의 일문에서 당대의 정보가 남아 있는 점은 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 새롭게 발견된 『양직공도』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를 중심으로 양에서 파악한 고구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구성의 측면에서 장경모본의 고구려 제기는 일문(逸文)이지만 기원, 습속, 교섭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정사류의 열전 구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원』에 인용된 『양직공도』의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하여, 사료적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정보의 서술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 사서의 내용을 전거로 삼아 작성한 부분과 당시의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새로운 정보가 남아있는 부분은 의복 및 서적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사신으로 양을 방문한 고구려 사절단의 모습이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기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의복 관련 기록은 시기적으로 『위서』의 고구려 의복 관련 기록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시의 모습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주서』와도 구분되는 바, 대체로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까지의 고구려 의복 관련 정보의 유입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전하는 2종의 고구려 사신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서적에 대한 정보 역시 중국정사 고구려전에 한하면 『구당서』 단계에 이르러서야 보이지만, 백제가 송대(宋代)부터 중국 서적을 획득하고자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양대(梁代)에는 고구려도 서적의 획득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종래 『양서』 고구려전의 고유전승자료로 이해되었던 광개토왕대 장사 등의 설치 기사는 남조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고구려의 장사들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37. 『송서』권97 고구려

38. 『송서』권97 고구려 : 『삼국사기』권18 장수왕 26년 3월

39. 『위서』권100 고구려. “正光初, 光州又於海中執得蕭衍所授安寧東將軍衣冠劍佩, 及使人江法盛等, 送於京師.”; 『삼국사기』권19 안장왕 2년 2월. “二月, 梁高祖封王爲寧東將軍·都督營平二州諸軍事·高句麗王, 遣使者江注盛, 賜王衣冠劍佩, 魏兵就海中執之, 送洛陽.”

참고문헌

- 강진원, 2016, 「고구려 安臧王의 대외정책과 남진」, 『大東文化研究』94.
- 高柄翊, 1970,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공석구, 1998,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고구려발해연구』5.
- 김진한, 2007, 「6世紀 前半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軍史』64.
- 백길남, 2018, 「중국왕조의 '百濟略有遼西' 記事 서술과 인식-百濟郡 설치를 중심으로-」, 『百濟學報』25.
- 백다해, 2020, 「6세기 전반 高句麗와 梁 교섭의 실상」, 『지역과역사』46.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윤용구, 2012, 「현존(梁職貢圖)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46.
- 윤용구, 2019,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역사』45.
-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한국고대사연구』67.
- 이흥직, 1971,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國使臣圖經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 임기환, 2004, 「4세기 고구려의 막부제와 낙랑·대방 경영」,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전상우, 2020, 「『양서』 고구려전의 원전과 편찬 방식」, 『동북아역사논총』68.
- 전호태, 2000, 「고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인의 신분관」,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 정승혜, 2017, 「古代의 譯人」, 『목간과문자』17.
- 정원주, 2013, 「安臧王의 始祖廟 親祀와 政局運營」, 『백산학보』96.
- 최일례, 2016,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韓國古代史研究』82.
- 榎一雄, 1963,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26.
- 李成市,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說」,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李成市, 2014, 「『梁職貢圖』高句麗·百濟·新羅のについて」, 『『梁職貢圖』と東部ユラシア世界』, 勉誠出版.
- 河内春人, 2014, 「中國における倭人情報」, 『梁職貢圖と東部ユラシア世界』, 勉誠出版.
- 趙燦鵬, 2011, 「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の新發現」, 『文史』94.

Abstract

Information about Goguryeo Transmitted to Liang and the Jang Gyeong-Mo version of Yangjikgongdo

Lee Gyu-ho

Yangjikgongdo is a painting of envoys that depicts the envoys of Liang in the early sixth century and offers brief information about the state. There are three kinds of the painting remaining today, and all of them are imitations rather than originals. The one painted in Northern Song has the records of information about the envoys along with their paintings. The other two have only the envoy depictions left. This painting received attention early on for its depiction of envoys from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Baekje and Japan those days. It is understood that the information recorded on the painting was a principal reference in the publication of foreign biography series in Yangseo, a book of Liang history.

It is estimated that the remaining imitations of the painting that have only the envoy depictions left contained information about the envoys of Goguryeo and Silla as well as their depictions. A new type of imitation was recently found which contained only the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 without any depictions of envoys. In Yangseo, the biography series of Goguryeo consulted the content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 history book from the previous era, much more than the information of its times. If it is recognized that Yangjikgongdo was used as a main reference in the publication of Yangseo, it will be possible that Goguryeo was also the case. This possibility should be kept in mind in an examination. The discovery of the new imitation made it possible, which was why the present study reviewed it.

The results suggest a possibility that the content of the newly discovered imitation of Yangjikgongdo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original painting. The content of the concerned information followed history books from the previous era in some parts, and there were the records of new information about the clothes and books of Goguryeo people. The information about the clothes of Goguryeo people mainly covered official uniforms. Compared with the content

of history books before and after its creation, this information reflected the situations in the early sixth century almost as they were. This content was acquired in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Goguryeo and Liang,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formation came from the mouths of Goguryeo envoys as well as their aspects. Books followed the same path, as well.

That is, Goguryeo envoys played a huge role in the transmission of new information about Goguryeo to Liang in some parts and to the imitation of Yangjkgongdo. Naturally,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formation were very limited as no envoys of Liang visited Goguryeo themselves. They must have added the information from Goguryeo envoys anew and followed the content of old history books for more specific content about the internal affairs of Goguryeo.

Keyword Yangjkgongdo, Jang Gyeong-Mo version, Goguryeo, Yangseo, envoy

논문투고일 : 2021. 09. 24.
심사완료일 : 2021. 11. 26.
게재확정일 : 2021. 12. 01.

『양직공도(梁職貢圖)』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특징과 제작 시기 검토

파사국(波斯國) 사신도(使臣圖)를 중심으로

나용재 단국대학교

- I. 머리말
- II.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문제점과 원인
- III. 파사국(波斯國) 복식(服飾)의 시기별 유형과 특징
- IV. 파사국(波斯國)-중국 간 교류 양상과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제작 시기 검토
- V. 맺음말

초록

『양직공도』를 모사하였다고 전하는 3종 모본의 사신도는 그간 국내에서 6세기 전반기 삼국의 복식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양이 멸망한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원본이 제작되었을 때의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모본의 사신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다룰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파사국 사신도를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본 사신도의 특징과 제작 시기를 밝히고자 하였다.

3종의 모본이 상호 간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이 관찰되는 것은 저본 종류의 다양함이나 모사자의 화풍,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식의 변화가 모본 제작 때 반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 파사국 사신도를 검토해 보았다.

파사국과 관련된 문헌 기록과 고고·미술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모본 사신도에 묘사된 복식은 양이 멸망한 이후에 해당하는 파사국 후기에 보이는 형태에 부합한다. 모본 중에서는 『고덕검모본』이 이와 가장 유사하다. 원본 『양직공도』의 파사국 사신도는 실제 사신을 대상으로 그렸다고 보기 어렵고, 실령 그렇더라도 모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모본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고덕검모본』은 7세기 초~7세기 후반 사이에 수와 당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파사국의 복식이 반영되어 제작된 계통의 모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송모본』과 『왕회도』는 파사국이 존속하던 시기는 물론, 멸망 이후에도 한동안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복식은 주로 7~8세기의 돌궐 및 그에 영향을 받은 소그드인들 관련 자료에서 관찰된다. 『북송모본』과 『왕회도』는 7세기 후반 이후 토화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그드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된 파사국 사람들의 복식 형태가 반영되었거나, 혹은 소그드인들에 대해 당에서 갖고 있던 이미지가 투영되어 제작된 계통의 모본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양직공도』, 사신도, 파사국, 복식, 모본 제작시기

I. 머리말

양(梁) 원제(元帝) 소역(蕭繹)이 6세기 전반기에 제작하였다는 『양직공도(梁職貢圖)』는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모본(摹本)들만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사신도(使臣圖)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남당고덕검모양원제번객입조도(南唐顧德謙摹梁元帝蕃客入朝圖)』(이하 『고덕검모본』), 『남경박물관 구장 북송모본(南京博物院 舊藏 北宋摹本)』(이하 『북송모본』), 『당 엮립본 왕회도(唐 閻立本 王會圖)』(이하 『왕회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3종의 모본에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제기(題記)나 사신도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학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사신도를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사신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에 집중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중국 정사 조선전 계통에 해당하는 문헌자료에 언급된 삼국의 복식 및 관련 제도와의 비교와 검토를 행하는 것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는 6세기 초·중반, 나아가서는 그 이전 시기까지의 삼국의 복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전하고 있는 3종의 모본은 엄밀하게는 소역이 그린 『양직공도』와는 별개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된 삼국의 사신도는 원본과 다름없이 6세기 전반기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주제들, 예컨대 제기에서 확인되는 삼국의 기원이나 정치제도, 그리고 대외관계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교차하여 비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밀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3종 모본에 그려진 왜국(倭國) 사신도가 『삼국지(三國志)』가 편찬된 3세기 단계에 인식되었던 왜인(倭人)의 모습에 부합되도록 그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국 사신의 용모나 복식 역시 6세기의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로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삼국을 포함한 전체 사신도를 대상으로 한 사료비판의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종의 모본에서 국명과 그에 해당하는 사신도가 함께 확인되는 것은 30개국에 가깝다. 이들 전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러한 광범위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¹ 그렇다면 차선책으로써 특정

1.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왕회도』에 그려진 사신도에서 보이는 복식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安炫柱, 2020, 『唐代《王會圖》의 使

국가의 사신도를 선택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다.

각 모본에 포함된 사신도 중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에 독립적으로 입전된 국가에 한정할 경우, 3종 전부에서 중첩되는 사신도는 10개 국가다.² 다만 여기서도 모본 사신도의 용모나 복식 등의 요소를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질과 양이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고가국(周古柯國)·가발단국(呵跋檀國)·호밀단국(胡密丹國)의 경우가 그러하다.³ 그런데 이 중 파사국(波斯國)은 400여년간 오리엔트 지역의 패자(覇者)로 군림하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고, 중국의 여러 왕조와도 활발히 교류한 나라였다. 이에 다양한 종류의 문헌 및 고고·미술 방면의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연구도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어 3종 모본의 사신도에 그려진 모습을 검토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파사국 사신도를 대상으로 하여 현전하는 3종 모본 사신도의 특징과 제작 시기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으로의 삼국 사신도와 관련된 연구 및 『양직공도』 모본 사신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필자는 미술사와 복식사, 그리고 파사국에 관한 이해가 알아 논지 전개의 과정에서 무리한 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많은 질정을 바란다.

II.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문제점과 원인

사신도가 함께 전하고 있는 『양직공도』의 3종 모본은 6세기 전반기에 양을 방문하였던 사신들의 용모와 복식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공통된 요소도 일부 확인되지만, 그와 반대로 동일한 원본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이점 역시 적지 않게 발견된다.⁴ 이는 파사국(波斯國) 사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의 ‘도 1’~‘도 3’ 및 ‘표 1’이 참고된다.

『양직공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는 종래 국내 학계에서 삼국 사신에만 집중하던 경향성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지역에 소재한 방대한 양의 시각 자료를 동원하여 전체 사신도에 반영된 복식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 향후 유라시아 지역의 복식사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 역시 해당 연구의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지닌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본 사신도의 복식 형태가 기본적으로 6세기 단계의 원본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별 국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비하여, 복식 요소에서 보이는 시간성이 『양직공도』 및 그 모본들의 사신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동태적 시각에서의 고찰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2. 百濟國, 倭國, 鄒至國, 波斯國, 龜茲國, 周古柯國, 呵跋檀國, 胡密丹國, 白題國, 狼牙脩國이 해당한다.

3. 위서(梁書)에서는 주고가국(周古柯國)·가발단국(呵跋檀國)·호밀단국(胡密丹國)의 사신도와 관련하여 교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들의 용모와 의복이 활국(滑國)과 동일하다는 정도의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된다.

4. 尹龍九, 2012, 『『梁職貢圖』의 流傳과 摹本』 『목간과 문자』 9, 한국목간학회, pp.130~131.



도 1. 『고덕검모본』 파사국 사신도



도 2. 『복숭모본』 파사국 사신도



도 3. 『왕회도』 파사국 사신도

표 1. 모본 간 파사국 사신도의 비교

	『고덕검모본』	『복숭모본』	『왕회도』
모자	내부에 두 줄의 얇은 선	내부에 한 줄의 얇은 선	
	장식적 요소 없음	連珠文과 같은 원형의 장식이 嵌入 혹은 부착	
상의		검정색 계통	청색 계통
	左衽	翻領+매듭형 고리장식(紐)	
	團領	翻領+매듭형 고리장식(紐)	
하의	소매부분에 장식적 요소(格子紋紋과 유사)	장식적 요소 없음	소매·상의 중심부와 밑단에 장식적 요소(連珠文과 유사)
	① 상·하의가 연결된 深衣로써, 바지는 따로 없이 목이 긴 신발(靴, B=검정색 계통, C=황갈색 계통)만 착용한 상태		
	② 바지를 착용하였으나, 길게 내려오는 상의로 인하여 모본 상에서는 목이 긴 신발만 보이는 상태		
장신구 및 기타 요소	해당 사항 없음	上同	③ 발목 윗부분은 바지이며, 목이 짧은 종류의 신발(履)을 착용한 상태
		帶(검정색 계통)	耳飾帶(끝부분의 색상이 다름)

이처럼 파사국 사신에 한정해보더라도, 각 모본에 묘사된 모습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3종의 모본이 임모(臨摹)의 대상으로 삼은 저본이 달랐을 경우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대에 이미 소역의 원본 외에도 배자야(裴子野)의 『방국사도(方國使圖)』

나 강승보(江僧寶)의 『직공도(職貢圖)』와 같은 그림들이 존재하였는데, 그렇다면 각 모본들이 제작될 당시에는 『양직공도』 외에도 저본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유통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

다만 『고덕검모본』은 13세기 남송(南宋)의 이종(理宗)이 작성하였다고 추정되는 “양원제 번객입조도(梁元帝蕃客入朝圖)와 “정위남당고덕겸소임(定爲南唐顧德謙所臨)”의 표제(標題)와 제지(題識)가 확인되며⁶, 이에 따라 청대에 편찬된 『석거보급속편(石渠寶笈續編)』에서도 이 작품을 『남당고덕겸모양원제번객입조도(南唐顧德謙摹梁元帝蕃客入朝圖)』라고 지칭하고 있다.⁷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적어도 남송 이래로는 이 모본을 10세기 초 남당의 고덕겸이 소역의 『양직공도』를 저본으로 삼아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송모본』의 경우에는 김유약(金維諾)의 연구⁸를 통해 소역의 『양직공도』를 저본으로 만들어진 모본임에는 분명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왕회도』는 그 제작 시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⁹ 에노키 카즈오(榎一雄) 및 후카즈 유키노리(深津行德)에 의하면 『복송모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본을 활용하여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¹⁰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선행 연구성과를 참고할 때, 현전하는 3종의 모본 사신도를 그리는데 활용된 저본은 소역의 원본이었거나, 적어도 이를 베낀 또 다른 모본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고덕검모본』의 경우 다른 두 모본과 달리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백묘(白描)에 가까운 기법으로 그려졌고, 세부 표현도 소략하여 마치 계통 자체가 다른 듯한 모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회화사에서 백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북송대 이공린(李公麟)에 의해 완성된 독립된 회화 양식이며, 다른 하나는 회화·벽화·조각 등을 제작할 때 밑그림이나 초본(草本)의 역할을 한 분본(粉本)에 주로 사용된 기법을 의미한다.¹¹ 여기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후자다. 이는 일종의 교본으로 임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채색 등의 작업이 완료된 완성본의 모본(母本)이자 전형(典型)으로 함께 전승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¹² 그렇다면 『양직공도』 역시 이러한 분본을 마련하는 단계를 거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A-1. 또한 황제(明皇: 唐玄宗)께서 천보(天寶) 연간에 홀연히 촉도(蜀道) 가릉(嘉陵)의 풍경을 그리워하여 마침내 오생(吳生: 吳道子)에게 역마(驛駟)를 빌려주어 가서 그려오도록 명하였다. 돌아온 날에 미처서 황제께서 그 형상을 물으니 아뢰어 말하길 “신에게는 분본이 없습니다. 모두 마음 안에 기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뒤 대동전(大同殿)에 그릴 것을 명하였는데 가릉강(嘉陵江) 300여리의 산수를 하루에 끝마쳤다. 당시 장군 이사훈(李思訓)이 있었는데 산수화로 이름을 드날렸다. 황제가 여기 대동전에 그리도록 명하였는데 수개월이 걸려 끝마쳤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이사훈의 수개월의 공과 오도자(吳道子)의 하루의 공적이 모두 오묘함에 이르렀다”라고 하시었다.¹³

A-1은 『당조명화록(唐朝名畫錄)』에 기록된 당대(唐代) 화성(畫聖)으로 추앙받던 인물인 오도자의 일화다. 이 일화가 엄밀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¹⁴, 분본을 제작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특기할만한 능력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종적인 작품을 완성함에 있어서 분본과 같은 선행 단계를 거치는 일이 보편적¹⁵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역 역시 『양직공도』의 제작을 위해 마찬가지로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9세기 장언원(張彥遠)이 편찬한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元帝蕭繹…任荊州刺史日 畫蕃客入朝圖 帝極稱善. 又畫職貢圖并序 善畫外國來獻之事.”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중국 학자 왕소(王素)는 여기에 착안하여 원본 『양직공도』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2단계와 3단계의 저본이 되는 1단계는 526년에서 539년 사이에 그려졌고, 『역대명화기』의 『蕃客入朝圖』가 바로 그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¹⁶ 이는 타견이라 생각되지만, 아쉽게도 그의 연구에서는 『蕃客入朝圖』의 채색 여부 및 현전하는 『고덕검모본』과의 관계에

5. 정은주, 2015, 「中國 歷代 職貢圖의 韓人圖像과 그 인식」 『漢文學論集』 42, 근역한문학회, p.80.

6. 深津行德, 1999, 「臺灣故宮博物院所藏『梁職貢圖』模本について」 『朝鮮半島に流入した諸文化要素の研究 2』(學習院大學東洋學研究所 調査研究報告 44), pp.50~54.

7. 현전하는 「고덕검모본」이 청대(清代)에 편찬된 「석거보급속편(石渠寶笈續編)」에 소개된 「남당고덕겸모양원제번객입조도(南唐顧德謙摹梁元帝蕃客入朝圖)」라는 점을 밝힌 인물은 가일웅(榎一雄)이다. 그는 표제(標題)와 제지(題識)가 남송(南宋)의 이종(理宗)이 작성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적어도 이 자료가 소역의 『양직공도』 모본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榎一雄, 1988, 「故宮博物院所藏の梁職貢圖について」 『東洋文庫書報』19, 東洋文庫, pp.62~63).

8. 金維諾, 1960, 「職貢圖의 時代與作者」 『文物』 1960-7.

9. 尹龍九, 2012, 앞의 논문, pp.127~128.

10. 榎一雄, 1988, 앞의 논문, pp.61~62; 深津行德, 1999, 앞의 논문, p.71.

11. 장준석, 2002, 「李公麟의 白描畫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5~46; 소현숙, 2017, 「고대 동아시아 불교조각과 화본(畫本)」 『불교미술사학』 23, 불교미술사학회; 윤기언, 2017, 「백묘를 통한 회화적 상징 표현연구 : ‘손’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7~35.

12. 蕭崇正 著, 안영길 譯, 2004, 「清代 宮廷의 繪畫稿本에 대한 고찰」 『美術史論壇』 19, 한국미술연구소; 윤기언, 2017, 위의 논문, p.29 및 pp.36~41.

13. 『唐朝名畫錄』 “又明皇天寶中忽思蜀道嘉陵江水 遂假吳生驛駟 令往寫貌. 及回日 帝問其狀 奏曰 臣無粉本 並記在心. 後宣令於大同殿圖之 嘉陵江三百餘里山水 一日而畢. 時有李思訓將軍. 山水擅名 帝亦宣於大同殿圖 累月方畢. 明皇云 李思訓數月之功 吳道子一日之迹 皆極其妙也.”

14. 정혜린, 2018, 「吳道子와 唐 畵畵의 미적 기준의 변화」 『美學』 84, 한국미학회, p.15.

이와 관련하여 이사훈(李思訓)은 몰년(沒年)이 개원 4년 혹은 6년에 해당하여 오도자보다 한 세대 정도 늦은 시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당조명화록(唐朝名畫錄)』에서는 그의 아들인 이소도(李昭道)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장언원 지음, 조승식 옮김, 2008, 『역대명화기 상-중국 옛 그림을 말한다』, SIGONGART, pp.101~104).

15. 蕭崇正 著, 안영길 譯, 2004, 앞의 논문, p.159.

16. 王素, 1992, 「梁元帝職貢圖新探-兼說滑及高昌國史的幾個問題」 『文物』 1992-2, pp.72~74.

해당 연구에서 왕소(王素)는 「직공도(職貢圖)」·「공직도(貢職圖)」라는 명칭의 2단계와 3단계까지를 상정하고 있다. 다만 「번객입조도(蕃客入朝圖)」·「직공도(職貢圖)」와는 달리 「직공도(職貢圖)」와 「공직도(貢職圖)」의 경우는 사료적 근거도 명확치 않으며, 「직공(職貢)」과 「공직(貢職)」이 용례나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양자를 별개의 그림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준, 2021, 「蕭繹의 생애와 『梁職貢圖』의 편찬」, 『양직공도』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한원연구회·국립해양박물관 2021 학술대회 발표집, pp.20~21).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북송대 이치(李廌)가 편찬한 『덕우재화품(德隅齋畫品)』에 소역이 형주자사 시절 그렸다는 『番客入朝圖』라는 이름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蕃客」과 「番客」은 둘 다 ‘외국 사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통하므로, 이는 『역대명화기』에 기록된 것이거나 혹은 그것의 모본이라 보아도¹⁷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2. 양(梁) 원제(元帝)가 형주자사(荊州刺史)를 지낼 때 그린 분본(粉本)이다. 노국(魯國) 이상 35개국으로 모두 그 사신을 그린 것인데, 멀리 떨어진 이민족(胡越)으로서 함께 입조(入朝)한 직공(職貢)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 형상과 모양이 각기 다르나 모두 촌스럽고 괴이하며 보잘 것 없고 누추하여 중화인(華人)의 기품이 없다. 정간공(丁簡公) 집안의 능연각(凌煙閣) 공신(功臣)과 공자(孔子)의 70명 문인의 모형(小樣) 같은 것들 역시 당(唐) 때의 분본으로써 모습과 자세가 사람마다 모양을 달리하니, 화가가 대체로 이것을 재능으로 여겼다. 이 그림의 제자(題字)가 자못 오묘한데, 고창(高昌)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모두 ‘정관(貞觀) 모년(某年)에 멸망하였다.’라고 주석하였다. 또한 그림의 풍격이 엽립본(關立本)이 그린 직공도(職貢圖)와 서로 비슷한데, 엽립본이 원제의 옛 그림(舊本)을 모방하였거나, 혹은 원제가 그린 것이 정관 연간까지 전해져 후세 사람들이 이로 인해 제자 아래에 사실을 기록한 듯 싶은데,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화법이 신묘하니 굳이 누구인지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양 원제든, 엽립본이든 모두 수백년 전 일품(一品)의 화필이다. 종이 봉투(紙縫)에 저장문(褚長文)이 심의한 인장(印章)이 있다. 장문이 그림을 감상하는 실력은 예전에 유명하였으니, 분명 이 그림이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¹⁸

A-2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番客入朝圖』가 분본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덕우재화품』의 저자는 이를 밑그림, 혹은 초본 단계에 해당하는 종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치의 활동 시기는 앞서 언급하였던 백묘를 독립된 회화 분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되는 이공린과 거의 겹친다.¹⁹ 즉 확실하게 백묘(白描)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番客入朝圖』가 채색이 이루어진 상태의 분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덕우재화품』

에서는 채색이 이루어졌음이 묘사된 다른 작품들에 대한 설명에서는 분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²⁰ 따라서 여기서의 『番客入朝圖』, 즉 『역대명화기』의 『蕃客入朝圖』는 백묘의 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표제에 『蕃客入朝圖』가 명시되어 있으면서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표현 역시 다소 생략된 듯 그려진 『고덕검모본』은 다른 두 모본들과 달리 『역대명화기』 등에 언급된 『蕃客入朝圖』, 즉 분본 계통에 속하는 모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양식과 내용 면에서 구분되는 ‘여러 단계’의 원본 『양직공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의 사신도라 할지라도 무엇을 저본으로 삼아 묘사했는지에 따라 상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간극은 모본 제작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커져갔을 것인데, 그 원인은 묘사의 방법론과 연관된다.

5~6세기 남제와 양에서 활동했던 화가이자 화론가였던 사혁(謝赫)은 『고화품록(古畫品錄)』이라는 일종의 회화이론서를 저술하였는데, 그 서문에는 창작 원칙이자 비평 기준인 육법(六法)이 열거되어 있다.²¹ 이 중 모본의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전이모사(傳移模寫)라는 개념이다. 사혁의 육법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²² 세 모본 역시 전이모사의 화법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전이모사가 말 그대로 완벽한 모방을 지향한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 요소의 가미를 염두에 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혁이 육법에 대해 소개는 하였으나, 정작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해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³ 다만 『고화품록』에서 육법에 의거해 상대적으로 낮은 품격인 5품으로 평가된 인물에 대한 내용을 통해 그 진의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볼 수 있다.

A-3. 유소조(劉紹祖)는 베껴 그리기(傳寫)를 잘하였고 그 뜻에 막힘이 없다. 참새와 쥐에 이르러서는 필적이 거침이 없어 때때로 무리 중에 출중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일러 말하기를 ‘옮긴 그림(移畫)’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대로 베껴 뿐 창작하지는 않았으니 그림에서 앞세울 만하지는 않다.²⁴

유소조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볼 때, 사혁이 주장한 전이모사는 기계적인 모방에 그

17. 林華東 著, 顧幼靜 譯, 2019, 『양 원제 蕭繹의 『직공도』』,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학연문화사, p.35.

18. 『德隅齋畫品』 「番客入朝圖」 「梁元帝為荊州刺史日所畫 粉本 魯國而上三十有五國 皆寫其使者欲見胡越一家 要荒種落 共來王之職 其狀貌各不同 然皆野怪癡陋 無華人氣韻 如丁簡公家凌煙功臣 孔子七十門人小樣 亦唐朝粉本形性態度 人人殊品 畫家蓋以此為能事也 此圖題字殊妙 高昌等國皆注云 貞觀某年所滅 又落筆氣韻 關立本所作職貢圖 亦相若 得非立本摹元帝舊本乎 或以謂元帝所作 傳至貞觀後人因事記於題下 亦未可知 然畫筆神妙 不必較其名氏 或梁元帝 或關立本 皆數百年前第一品畫也 紙縫有褚長文審定印章 長文鑒畫有名于古定 然知此不凡也。」

19. 이공린은 1049년경에 출생하여 1106년에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치는 그보다 10년 뒤인 1059년에 태어나 110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해당 사례로는 「棘鷓鴣條銅嘴圖」, 「寒龜曝背圖」, 「菡萏圖」 등이 있다.

21. 김연주·김은경, 2018, 『南北朝 時代 『古畫品錄』의 회화비평사적 의의』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pp.66~67.

22. 송대(宋代)의 화가이자 회화평론가인 곽사(郭思)가 그의 저서 『도화견문지(圖畫見聞志)』에 “六法精論 萬古不移”라고 언급한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갈로 펴, 강관식 譯, 2010,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pp.94~95).

23. 김연주·김은경, 2018, 앞의 논문,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p.67.

24. 『古畫品錄』 「第五品」. 「劉紹祖 善於傳寫 不閑其思 至於雀鼠 筆跡歷落 往往出群 時人馬之語 號曰移畫 然述而不作 非畫所先」

치는 것이 아닌 화가 본인의 창의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함을 지향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분본 계통으로 추정되는 『고덕검모본』은 차치하고서라도, 동일하게 채색본 단계 계통의 모본으로 판단되는 『복송모본』과 『왕회도』 사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은 이유는 모사자의 화풍에 의한 개변 때문이 아닐까 한다.²⁵

결국 현전하는 3종의 모본에 그려진 사신도는 자료의 성격상 애초부터 상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그것이 소역의 원본을 충실하게 전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모본의 제작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제작자로 칭해진 인물의 화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도 충분치 않다. 따라서 원본 『양직공도』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비교하였을 때 각 모본의 사신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역대명화기』에서 확인되는데, 아래의 A-4가 바로 그것이다.

A-4. 만약 의복 수레 풍토 인물에 대해 논한다면, ㉔시대마다 각각 다르고 남과 북이 다르니, 그림을 보는 올바른은 자세히 살피는 데 있다. 오도자가 중유(仲由: 자로)를 그렸는데 목검(木劍)을 차고 있고, 염령공(閔令公: 염립본)이 왕소군을 그렸는데 이미 위모(幃帽)를 쓰고 있는데, ㉕이는 목검이 진대(晉代)에 만들어지고 위모가 우리 당에서 유행한 것임을 모르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 역시 그림에 있어서 한 병폐(病)다. …(중략)… ㉔따라서 이사진(李嗣眞)이 동전(董展: 董伯仁·展子虔)을 평하여 말하길 “평원(平原)의 땅에 거주하여 강남의 정치 풍음을 모르고 용마(戎馬)를 탔으나 잠거(簪裾)의 의미를 모른다. 이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같은 말은 도리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²⁶

A-4의 ㉔는 작품을 평론하는 사람 및 화가들은 시대성과 지역성을 올바르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다만 그에 대한 부연으로써 이사진의 동백인과 전자전에 대한 평가를 소개한 ㉔로 미루어볼 때, 장언원에 의해 처음 정립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늦어

25. 한편 모사의 방식에는 원작 위에 얇은 종이나 비단을 올리고 그대로 그리는 幃, 원작을 옆에 두고 보면서 똑같이 그리는 臨, 원작을 관찰 후 새롭게 재구성해 그리는 倣의 세 가지가 있는데, 『고덕검모본』은 倣, 『복송모본』은 幃 또는 臨, 『왕회도』는 臨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다(安炫柱, 앞의 논문, p.35). 다만 애초에 원본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복송모본』과 『왕회도』는 사신도 간 차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 역시 『고덕검모본』과 마찬가지로 倣의 방식으로 모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6. 歷代名畫記》卷2「叙師資傳授南北時代」:「若論衣服車輿土風人物年代各異南北有殊觀畫之宜在乎詳審。只如吳道子畫仲由便戴木劍閔令公畫昭君已着幃帽。殊不知木劍創於晉代幃帽興於國朝。舉此凡例亦畫之一病也。且如幃巾傳於漢魏幕離起自齊隋幃頭始於周朝【折上巾軍旅所服即令幃頭也。用全帽卑向後幃髮俗謂之幃頭。自武帝建德中載為四脚也】巾子創於武德。胡服靴衫豈可輒施於古象衣冠組綬不宜長用於今人。芒屨非塞北所宜牛車非嶺南所有。詳辯古今之物商較土風之宜指事繪形可驗時代。其或生長南朝不見北朝人物習熟塞北不識江南山川遊處江東不知京洛之盛。此則非繪畫之病也。故李嗣眞評董展云地處平原關江南之勝迹參戎馬乏簪裾之儀。此是其所未習非其所不至。如此之論便為知言。」

도 당 중기 이래로 화론가 및 화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준칙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㉕를 통해 이것이 그리 잘 지켜진 것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엿볼 수 있다. 즉 정립된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화가 개개인이 활동한 시기에 통용되던 상식이 그들의 작품에 큰 고민 없이 반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원본 『양직공도』에 묘사되었을 6세기 전반기에 양을 방문했던 사신들의 용모나 복식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상이 반영됨에 의해서도 각 모본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특히 본고의 주제인 파사국 사신도의 경우, 파사국이 양이 존속하던 시기는 물론 수·당 때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며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에 장을 바꾸어 파사국 사신도 및 그와 관련된 다른 각종 자료들에 대한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비교와 검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Ⅲ. 파사국(波斯國) 복식(服飾)의 시기별 유형과 특징

파사국(波斯國)은 3세기 무렵 오늘날 이란 서남부에 위치한 파르스(Fars) 지역을 거점으로 흥기하여 7세기 중반까지 존속하였던 사산조 페르시아를 가르킨다.²⁷ 먼저 파사국 사람들의 용모나 복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습속에 대한 중국 측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⁸

B-1. 혼인법은 정혼을 위한 예물을 보냄을 마친 뒤, 신랑이 수십명을 인솔하여 신부를 맞이하러 간다. 신랑은 금선(金線)이 들어간 비단 도포(錦袍)를 입고 사자 문양이 새겨진 비단 바지(師子錦袴)를 입고 화려한 예관(天冠)을 쓴다. 신부 역시 이와 같다. 신부의 형제들이 바로 나와 손을 잡아 넘겨주면, 부부의 예식은 여기에서 끝난다.²⁹

27. 사산조 페르시아(224년~651년)에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정식 국명은 에란샤(Ērānshāh; Iranshahr: Realm of the Iranians/Ayrans)였다(Touraj Daryaee, 2009, Sasanian Persia - The Rise and Fall of an Empire, I. B. Tauris, p.3).

‘사산조’는 왕조의 명칭인데, 이는 건국자인 아르다시르 1세(Ardashir I)의 선조이자 이스타흐르(Istakhr)에 있는 아나히타(Anahita) 여신을 섬기는 사원의 사제였다고 추정되는 사산(Sasan)이라는 인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Touraj Daryaee, 2010, Ardashir and the Sasanians' Rise to Power, Anabasis: studia classica et orientalia 1, WYDAWNICTWO UNIWERSYTETU RZESZOWSKIEGO, pp.241~246; 압둘 호세인 자린쿠·루즈베 자린쿠 공저, 태일 옮김, 2011, 『페르시아 사산제국 정치사』, 예영커뮤니케이션, pp.28~29).

한편 ‘페르시아’는 파르스 지역 또는 그에 거주하던 부족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 단어 파르사(Parsa)에 기인한 영문 명칭이다. 그리스에서는 이를 페르시스(Persis)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점차 특정 지역이나 부족의 범주를 넘어서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Josef Wiesehofer, 2001, Ancient Persia: From 550 BC to 650 AD, I.B.Tauris, p.xi 및 p.21; Matt Waters, 2014, Ancient Persia: A Concise History of the Achaemenid Empire, 550-330 B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6).

28. 이와 관련하여 當代의 파사국 본인들은 물론 속적이었던 비잔틴 제국, 후대의 무슬림 제국에서 기록한 자료들도 많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많다. 다만 필자는 이와 같은 1차 자료들을 서술함에 사용된 언어들을 직접 해독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파사국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중국 측에서 관찰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파사국과 관련된 1차 자료들에 대한 영문번역 및 분석이 이루어진 서구권의 연구 성과 역시 활용해보고자 한다.

29. 『梁書』「婚姻法 下聘誌 女婿將數十人迎婦 婿著金線錦袍 師子錦袴 戴天冠 婦亦如之 婦兄弟便來捉手付度 夫婦之禮 於茲永畢。」 『南史』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師子錦袴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파사국이 師子國, 오늘날의 스리랑카를 통해 비단 등 다양한 외국의 물산을 수입하였다는 점(Touraj Daryaee, 2009, 앞의 책, pp.138~139)을 고려하면, 師子國의 비단으로 만든 바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파사국에서 梁에 사자를 바쳤다는 기록(『南史』卷 50 列傳 40 劉瓛族子顯)이 있으며, 파사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중동 지역의 직물자료에서 사자가 그려져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Heleanor B. Feltham, 2010, Lions, Silks and Silver: The Influence of Sasanian Persia, Sino-Platonic Papers 206,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을 통해 볼 때, 獅子 문양이 새겨진 비단 바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B-2. 그 습속은 장부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백피모(白皮帽)를 쓴다. 관두삼(貫頭衫)은 양쪽의 아래가 열려있다. 또한 두건(頭巾)과 피견(披肩)이 있는데, 가장자리를 직성(織成)으로써 한다.³⁰

B-3. 남녀 모두 맨발이다. 장부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백피모를 쓴다. 옷은 옷깃이 열리지 않았다. 두건과 피견도 있는데 대체로 소방(蘇方)을 사용하여 청색과 백색으로 만드는데 양쪽 가장자리를 비단으로 직성한다.³¹

B-4. 맨발의 습속이며 장부는 머리카락을 자른다. 옷은 옷깃이 갈라지지 않았다. 청색과 백색으로 두건과 피견을 만들고 가장자리는 비단으로써 한다.³²

B-1은 양에서 파악한 파사국에서 행해지던 혼인의 과정 및 혼례복에 대한 정보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혼인법이 파사국 사회에서 실제 시행되던 관습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³³, 혼례복에 대한 정보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행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신도의 검토를 위한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³⁴ 다만 파사국 사람들이 착용한 복식 중에는 상·하의가 구분되는 이부식(二部式)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B-2~4는 북위와 당에서 관찰한 파사국 사람들 가운데 주로 남성의 용모와 복식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B-2를 살펴보면, 용모와 관련해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풍습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모자의 종류로는 백피모와 두건이 있으며, 의복으로는 옆부분이 절개되어 열린 관두삼 및 어깨에 걸치는 솔이나 망토와 같은 종류로 이해되는 피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건과 피견의 경우에는 직성하였다고 언급된 점으로 볼 때, 가장자리를 무언가 다른 재료로 덧댄 것으로 이해된다.

B-3과 B-4는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단 용모 면에서 머리카락을 자

르고 맨발로 다닌다는 풍습이 있다고 전하는 점은 일치한다. 복식 면에서는 관두삼에 대한 내용인지는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일단 옷깃이 열리지 않은 형태, 즉 번령(翻領)이 아니라는 점³⁵과 두건과 피견의 색상과 제작 방식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 다만 B-4는 백피모 및 두건과 피견에 색상을 입히는 재료인 소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

B-1에 비하여 B-2~4는 보다 보편적인 파사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 또한 상세한 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역시 각 모본의 사신도를 검토하는데 유효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맨발 습속의 경우, 중동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맨발로 다녔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반면에 이발 풍습의 경우, 파사국 사람들이 종사하였던 다양한 직업 중에는 이발사³⁶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즉, B-2~4에서 언급된 복식에 대한 내용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사신도를 검토함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어떤 계층에 대해 설명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다. 3종의 모본에 그려진 파사국 사신도의 모델이 된 인물이 정말로 ‘공적인 목적을 위해 파견된 사신’이었다면, 그의 정치·사회적 신분은 지배층에 속했을 것이다. 파사국 사회는 중층적인 계급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식도 그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³⁷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의 정보가 사신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파사국 사람들의 용모나 복식이 묘사된 각종 회화 자료



도4. Naqsh-e Rjab 부조의 귀족·관리

도5. Bishapur 부조의 근위병 혹은 일반 병사

도6.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귀족·관리 인장

30. 『魏書』“其俗 丈夫剪髮 戴白皮帽 貫頭衫 兩廂近下開之 亦有巾帔 緣以織成”

『周書』와 『北史』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31. 『舊唐書』“男女皆徒跣 丈夫翦髮 戴白皮帽 衣不開襟 并有巾帔 多用蘇方靑白色爲之 兩邊緣以織成錦”

32. 『新唐書』“俗徒跣 丈夫祝髮 衣不開襟 靑白爲巾帔 緣以錦”

33. 파사국 사회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랑 측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 지참금의 액수는 신부의 아버지 혹은 후견인의 부나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Zamaneh Mofidi, 2018, The Common Elements in Marriage and Divorce Laws of Late Zoroastrian/ Sasanian Family Law and Early Muslim Jurisprudence in Mesopotami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p.44).

34. 한편 『양서(梁書)』에 기술된 파사국 관련 정보는 양(梁)과 파사국(波斯國)이 교섭하기 150여년 전인 동진대(東晉代)의 인물 석도안(釋道安)의 『西域諸國記』의 기록을 전제한 것이라는 견해도(윤용구, 2021, 『梁과 西域諸國의 교류와 영향 -『양직공도』의 波斯國 題記를 중심으로-』, 『『양직공도』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국립해양박물관 2021 학술대회 발표집) 제기되었다. 이는 B-1을 토대로 모본 사신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말로 梁代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5. 번령(翻領)은 오늘날 양복의 깃처럼 젖혀진 형태의 옷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치환되는 단어로는 절령(折領), 개금(開襟), 반금(反襟), 절금(折襟) 등이 있다(김소현 2003, 『호복: 실�크로드의 복식』, 민속원, p.32). 따라서 『구당서(舊唐書)』의 불부금(不副襟)과 『신당서(新唐書)』의 불부금(不副襟)은 모두 번령(翻領)이 아니라는 뜻이다.

36. Touraj Daryae, 2009, ibid, p.142

37. Touraj Daryae, 2009, ibid, p.52. 한편 파사국에서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색상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Bernard Golman, 1993, The Later Pre-Islamic Riding Costume, Iranica Antiqua 28, Peeters Publishers, Leuven(Belgium), p.225의 각주 84번). 다만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편이다.

‘도 4’는 현재 이란의 파르스 지역 내 소재한 나크쉬 에 라잡(Naqsh-e Rjab) 유적에 새겨진 부조다. ‘도 5’의 부조는 마찬가지로 파르스 지역에 소재한 유적인 비샤푸르(Bishapur)에 새겨진 것이다. ‘도 6’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란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묘사된 인물들은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이들로 파사국 전기에 해당하는 3~4세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소역의 『양직공도』 및 3종의 모본들은 6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자료는 B-1~4에서의 기록 및 각 모본에 그려진 파사국 사신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이 여럿 있다.

먼저 모자와 관련하여 파사국의 귀족 혹은 고위 관리가 묘사된 ‘도 4’와 ‘도 6’에서는 높고 둥근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쿨라(kulāf, kolāh)라고 하는데 파사국에서 일종의 관모(官帽)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7).³⁸ 진주나 각종 문양 및 기문의 상징 문장(紋章) 등으로 장식되기도 하며,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도 한다.³⁹ 제작 재료로써 양가죽도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⁴⁰ B-2~4에서 언급된 파사국의 백피모는 바로 이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⁴¹ 한편 ‘도 5’는

귀족이나 관리들보다는 다소 계급이 낮은 파사국 황실의 근위병 또는 일반 병사가 묘사되었는데,⁴² 외형상 이들이 착용한 모자가 B-2~4에 기록된 두건이 아닐까 한다.

3종 모본에서 파사국 사신이 착용한 모자의 경우, 그 형태와 특징은 쿨라에 부합되는 면이 많다. 다만 ‘도 4’와 ‘도 6’에서는 쿨라 하단부에 뒤쪽으로 리본과 같은 형태로 묶는 띠가 다소 길게 덧대어져 있어서 모본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의복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도 7. 파사국의 쿨라(前期)



左: '도 4' 머리 부분

右: Naqsh-e Rostam 부조의 귀족·고위 관리

38. 쿨라는 아시리아(B.C.2500~B.C.612/609) 때부터 중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Mary G. Houston, 2012,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Dover Publications, p.244). 파르티아(BC 247~AD 226)에서는 왕관의 한 종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파르티아의 뒤를 이은 파사국에서는 코림보스(kormbos)라 불리는 특유의 왕관 형식이 등장함에 따라 왕자나 신하의 관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장영수, 2011, 『사산조 초기 아르다시르 1세 부조에 묘사된 복식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 한국의류산업학회, p.884).

39. Alexander Nikitin, 1994, The Sasanian Shahrab of Balkh, Ancient Civilizations from Scythia to Siberia 1, Brill, p.365 및 p.368; Rika Gyselen, 2016, The Parthian Language in Early Sasanian Times, The Parthian and Early Sasanian Empires: Adaptation and Expansion, Oxbow Book.

40. Mary Brooks Picken, 2013,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Dover Publications, p.199

41. 김소현, 2003, 앞의 책, p.83에서도 백피모와 쿨라를 동일한 종류의 모자로 파악하고 있어 참고된다.

42. Bernard Golman, 1993, ibid, p.217;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3.

‘도 4’와 ‘도 6’은 머리를 통과시켜 착용하는 방식의 튜닉(tunic, ‘도 8’)을 입고 있는데, 옷깃은 원형이고 하단부의 양 옆부분이 절개되어 있다.⁴³ 그리고 가슴 부분에 있는 잠금 장치로 고정되는 무릎 정도까지의 길이를 가진 망토 혹은 코트의 일종인 캔디스(kandys)를 걸치고 있으며, 바지를 입고 있다. ‘도 5’ 역시 비슷한 형태의 튜닉과 바지를 착용하였다. 다만 망토나 코트로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 8. 前期 튜닉 참고 사례



左: Bishapur 부조의 귀족·고위 관리 우: Brooklyn Museum 소장 튜닉

즉 ‘도 4’~‘도 6’은 이부식의 복식 구성이라는 점(B-1), 양 옆부분이 열려있으면서 머리를 통과하여 입는 방식의 상의라는 점(B-2), 옷깃의 형태가 번령이 아니라는 점(B-3·4)에서 중국 측의 기록과 부합되는 측면이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각 모본 파사국 사신도와 비교해보면 어떠할까? 상의의 경우 『고덕검모본』만이 일부, 즉 옷깃이 온전하게 단령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부합되는 모습이 관찰된다.⁴⁶ 그러나 이 역시 하단부에는 절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좌임으로 여미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점, 그리고 길이의 차이

로 볼 때 ‘도 4’~‘도 6’의 튜닉과는 다른 종류의 의복으로 판단된다. 하의의 경우 세 모본 모두 바지를 착용하였다고 확실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들과의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신발을 살펴보면, 모두 목이 짧은 종류의 것을 착용하고 있다. 한편 ‘도 5’와 동일하게 비샤푸르 유적에 소재한 모자이크 벽화에 그려진 하프 연주자는 맨발로 묘사되어 있다

도 9. 파사국의 목이 짧은 신발(前期)



左上: '도 4' 신발 부분

右上: '도 5' 신발 부분

左下: '도 6' 신발 부분

右下: Naqsh-e Rostam 부조의 귀족·고위 관리

43. 튜닉은 관두의(貫頭衣) 형태의 옷으로 그 길이는 대체로 무릎 위 정도까지 내려온다. 허리띠를 사용하여 몸 한 가운데를 묶는데, 이로 인해 하단부 부분이 마치 치마와 같은 모습이 된다. 튜닉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Mary Brooks Picken, 2013, ibid, pp.1494~1496이 참고 된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한 ‘도 4’~‘도 6’에서는 하단부 옆쪽이 절개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Golman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도안들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튜닉이 파사국 내에서 시기를 막론하고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Bernard Golman, 1993, ibid). ‘도 4’~‘도 6’은 그림의 각도와 관련된 문제이거나, 돌에 새겨진 부조라는 재질상의 문제로 인해 관찰이 어려운 것이라 판단된다.

44. 골드만의 연구를 참고하면(Bernard Golman, 1993, ibid), 이 이부식(二部式) 유형의 복식은 파사국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할 나머지 자료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치나 신발로 인해 하의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지를 착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45. 또한 잠금 장치가 가슴 쪽에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도 4’와 ‘도 6’의 망토 혹은 코트가 피견(披肩, B-2~4)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6. 『복숭모본』과 『왕회도』는 번령(纓領)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고덕검모본』보다도 일치하는 부분이 적다.

(도 10). 즉 특정 직업군이나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맨발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마치 파사국 사람들 전체가 그러했다는 듯이 표현된 B-3·4는 정확하지 않은 인식에 기반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물론 B-3·4가 위의 자료들이 제작된 이후의 시점에 중국 측에서 관찰한 정보에 기반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파사국 후기에 속하는 다른 자료들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각 모본 사신도의 경우에는 모두 신발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4'~'도 6'과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목의 길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결국 부합하지 않는다.

도 10. 하프 연주자



비사푸르 유적 궁전 소재 모자이크 벽화

마지막으로 장신구 및 기타 요소의 경우, '도 4'와 '도 5'에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도 6'에는 이식(耳飾)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3~6세기에 해당하는 파사국 인장들에 묘사된 고위 계층 남성들 중에서도 이식을 착용한 모습이 여럿 확인된다.⁴⁸ 그렇다면 파사국 전 시기 동안 일정 신분 이상에

도 11. Taq-i-Bustan 멧돼지사냥 부조(1)



박수를 치고 있는 귀족·관리

도 12. Taq-i-Bustan 멧돼지사냥 부조(2)



화살을 전달하는 귀족·관리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는 이식 착용의 습속이 존재하였다는 점 정도는 인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B-1~4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각 모본 사신도 중 『왕희도』에서는 이식이 그려져 있어 상통하는

47. '도 4'의 해당 부분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한 관계로, 동일한 자료의 별도 사진을 확대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48. Christopher J. Brunner, 1979, Sasanian Stamp Seal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53~60.

49. 따라서 '도 4'와 '도 5'의 인물들 역시 머리카락이나 모자로 인해 해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 6'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모델들은 이식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도 4'와 거의 동일한 복식으로 묘사된 다라브(Darab) 유적 부조의 파사국 귀족·관리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서는 이식이 확인되는 점은(Bruno Overlaet, 2009, A Roman Emperor at Bishapur and Darabgird: Uranian Antoninus and the black stone of Emesa, Iranica Antiqua 44, p.526 of Pl. 24)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면이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일단 문헌자료에서 언급된 파사국 사람들의 용모 및 복식에 대한 정보 중 일부는 전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들과 부합되는 점이 확인되지만, 각 모본 파사국 사신도의 경우는 모자 외에는 상통하는 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에 해당하는 다른 자료들과는 어떠한가?

도 13. Hermitage Museum 소장 은판(1)



호스로우 1세(Khosrow I)와 귀족·관리

도 14. Hermitage Museum 소장 은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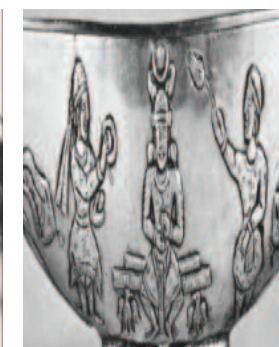
호스로우 2세(Khosrow II)의 사냥 장면

'도 11'과 '도 12'는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소재한 타크 이 부스탄(Taq-i Bustan) 유적에 새겨진 여러 부조 중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호스로우 2세(재위 590/591~628)를 향해 박수를 치거나 화살을 건네는 역할을 맡은 귀족 또는 관리를 묘사한 것이다.⁵⁰ '도 13'과 '도 14'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판에 새겨진 부조다. 전자는 호스로우 1세(재위 531~579)와 그의 측근 귀족 혹은 관리들의 모습이며, 후자는 호스로우 2세의 사냥 장면이 새겨져 있다.⁵¹ 따라서 '도 11'~'도 14'는 6세기 중반 이후인 파사국 후기의 복식 사정이 반영된 자료라 할 수 있다.

도 15. 파사국의 쿨라(後期)



左: '도 13' 귀족·관리의 머리 부분



右: Walters Art Gallery 소장 은접시⁵²

모자의 경우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족 혹은 관료들이 쿨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쿨라의 뒤로 리본 형태로 묶인 띠가 보이지 않고

50.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pp.121~122. Peck은 타크 이 부스탄의 부조가 호스로우 2세 때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Goldman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Bernard Golman, 1993, ibid, p.218). 이는 국내의 연구 경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채해정, 2008,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미술』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p.249).

51. Elsie H. Peck, 1969, ibid, pp.111~112.

52. '도 15'의 (右)에 묘사된 복식 및 왕좌 등의 묘사는 대체로 6~7세기, 혹은 그 이후에 해당하는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파사국이 멸망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P. O. Harper, 1979, Thrones and Enthronement Scenes in Sasanian Art, Iran 17, Taylor & Francis, Ltd, pp.61~62).

53. P. O. Harper, 1979, ibid; Encyclopædia Iranica online(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lothing-iv / 원문은 Elsie H. Peck, 1992, 『CLOTHING iv. In the Sasanian period』 『Encyclopædia Iranica』 5, Mazda Publishers, pp.739~752에 수록).

있어서(도 15) 각 모본 사신도와 유사성이 '도 4'·'도 6'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여겨진다. 시간성을 반영하는 요소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때가 짧거나 다른 위치에 부착된 것으로 묘사되는 사례는 대개 파사국 후기의 사정이 반영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³

상의의 경우 모두 원형의 옷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B-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령이 아니라 점에서 전기와 일치한다. 다만 튜닉, 즉 B-2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두삼 계열의 의복을 착용하였다고 생각되는 '도 13'·'도 14'의 것과는 달리, '도 11'과 '도 12'에 묘사된 귀족·관리들의 옷은 앞쪽이 절개되어 양팔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미어 입을 방식의 겉옷인 카프탄(caftan, 도 16)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⁴

이 부조에 새겨진 카프탄은 원형의 옷깃이 상당히 높게 위치하여 있고, 몸에 딱 맞으면서도 소매는 넓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전체적인 길이는 종아리의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⁵⁵ 여밈방식은 '도 12'에서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왼쪽 어깨 부분에 뭔가 덧대어져 있음을 통해 볼 때, 오른쪽의 옷깃을 끌어다가 왼쪽 어깨에 고정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⁶ 따라서 여밈의 형태는 좌입과 같았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각 모본의 사신도와 대조해보면, 이와 같은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고덕검모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다.

도 16. 後期 카프탄 참고 사례



左: Panjikent 벽화 소그드인

右: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카프탄

54. Elsie H. Peck, 1969, ibid, pp.114~115.

55. Elsie H. Peck, 1969, ibid, p.116.

다만 '도 11'과 '도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조의 묘사된 상태로는 전체적인 길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Peck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왕의 의복이란 점에서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카프탄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타크 이 부스탄의 다른 부조를 통해 귀족·관리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6. Elsie H. Peck, 1969, ibid, p.116~117. 이러한 복식 요소는 같은 유적 내 다른 귀족 혹은 관리들을 묘사한 부조에서도 관찰된다. '도 4'~'도 6'에서의 튜닉과는 달리 동일하게 원형의 옷깃이지만 그 위치가 거의 목 아랫부분까지로 높아진 것은 바로 이러한 착장 방식으로 인한 현상이다.

57. Elsie H. Peck, 1969, ibid, p.114~123. 이는 이후 전개될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에 원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옮기도록 하겠다.

"In the boar hunt relief, the ruler and his nobles in the royal boat and the courtiers clapping in the boat above, all wear tight-fitting, stiff robes with long skirts reaching to mid-calf which we call caftans. The collars of these robes are high and the cuffs are wide and embroidered. This collar seems peculiar to Taq-i-Bustan since it is not found in other Sasanian representations. The only remotely close comparison is of the Pazyryk finds from the Altai dating from the fourth century B.C. Here, depicted on felt trappings from a tent, a goddess(?) and a rider wear high, stiff collars. The caftan, then, would seem to be a fashion originating in Central Asia with its beginnings in the stiff coats of the formerly nomadic people, the Kushans. It was adopted in Iran only toward the end of the Sasanian period. At Taq-i-Bustan the caftan assumes a special form which seems to be unique to this site. After the fall of the dynasty the caftan becomes very popular and widespread, appearing in arcas as far apart as Samarra and Afghanistan. More than the historical evidence, however, which at best can only be conjectural, is the evidence of the costumes themselves. Many of the garments at Taq-i-Bustan make their appearance in Sasanian art only in the closing years of the dynasty. The embroidered caftan of stiff material with its skirt descending on the sides in points is not seen on Sasanian representations before the reign of Khusrau I in the sixth century A.D."

하나는 이러한 형태에 해당하는 카프탄은 파사국에서는 타크 이 부스탄 부조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⁵⁷ 다른 하나는 이와는 또 다른 형태, 곧 옷깃의 형태가 번령이면서 좌·우 양쪽에 모두 달린 형태의 카프탄은 『북송모본』과 『왕회도』를 제외하면 파사국의 사람들을 묘사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주로 중앙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7세기~8세기 돌궐 및 그들의 영향을 받은 소그드와 관련된 자료에서 주로 관찰되는 점이다(도 17).⁵⁸ 즉, 『고덕검모본』의 파사국 사신도는 아무리 일러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의 인물을 모델로 하여 그려졌으며, 『북송모본』과 『왕회도』의 경우는 이보다 늦은 시기의 복식 사정이 반영되어 그려진 계통의 자료임을 짐작해볼 수 있게 된다.

신발의 경우 '도 13'의 귀족·관리들과 '도 14' 호스로우 2세의 것이 주목된다. 여기서는 신발이 정강이까지 올라오거나 혹은 무릎 부근까지 올라와서 하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목이 긴 종류로 묘사되어 있다. 카프탄과 마찬가지로 파사국에서 이 정도의 높은 신발은 호스로우 1세의 치세 후반기에 해당하는 6세기 중반 이후부터 비로소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⁹

이로 말미암아 볼 때, 문헌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맨발 습속은 후기의 경우에도 역시 실제 현실

도 17. 돌궐·소그드인 좌·우 번령 카프탄



左: Afrasiab 벽화 서벽 돌궐 사신

右: Panjikent 벽화 소그드인

도 18. 파사국의 목 긴 신발(後期)



左: '도 13' 귀족·관리의 신발 부분

右: The British Museum 소장 은도금 점시

58. Sergey A. Yatsenko, 2006, The Late Sogdian Costume (the 5th - 8th cc. AD), Ēran ud Anērān : Studies presented to Boris Ilich Marshak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Libreria Editrice Cafoscara, p.651 및 p.669;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 60, 한국복식학회, pp.120~122 및 pp.128~129.

59. Elsie H. Peck, 1969, ibid, p.114. 해당 연구에서 직접적인 연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에프탈, 즉 활국(滑國)에 대한 정벌이 이루어진 시기 이후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 호스로우 1세의 활국 공격은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1차는 557~557년, 2차는 572~577년에 이루어졌다.

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각 모본 사신도와 대조해보면 『왕회도』의 경우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목이 긴 종류일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⁰, 3종의 모본 전부 원본 『양직공도』가 제작된 이후에 가까운 시점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신구 및 기타 요소의 경우, 아쉽게도 제시된 자료에서는 특별히 문헌자료나 각 모본의 사신도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일단 문헌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후기의 상황을 이해함에도 유효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의 사정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었던 각 모본의 파사국 사신도가 후기, 구체적으로는 양이 멸망한 이후 시기에 등장하는 복식 요소와 부합되는 면이 많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검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IV. 파사국(波斯國) - 중국 간 교류 양상과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제작 시기 검토

『양직공도』 모본의 제기 및 『양서』·『남사』 등의 자료에서는 파사국과 양과의 교류가 528년~535년 사이 몇 차례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다.⁶¹ 원본 『양직공도』 파사국 사신도의 제작에는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가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양국의 교류는 동시기 북조 국가들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고, 기간과 횟수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양국 관계의 구체적 실상, 나아가 원본 『양직공도』에 그려졌을 파사국 사신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양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파사국은 카바드 1세(재위 488-496/499년 - 531) 말년 및 호스로우 1세의 초반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서는 5세기 후반에 파사국은 활국(滑國)과의 전쟁에서 대패함에 따라 꽤 오랫동안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를 겪었다.⁶² 그 중 하나가 바로 박트리아 지역의 상실로 인한 육상 실크로드에서의 영향력 감소⁶³인데, 중국과의 교류 양상에서도 그 흔적이 관찰된다.

표2.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파사국(波斯國)과 활국(滑國)의 남북조와의 교류 양상

연도	남조		북조	
	梁 波斯國	滑國	北魏·西魏·北周 波斯國	滑國
455			○	
456				○
461			○	
466			○	
468			○	
476			○	
502				○
507			○	○
509				○
511				○
512				○
513				○
516		△ ⁶⁴		
517			○	○
518			○	○
519				○
520		○		
521			○	
522			○	
524				○
525				○
526		○		
528	△ ⁶⁵			
529	△ ⁶⁶			
530	○			
532				○
533	○			
535	○	○		
541		○		
546				○(西魏)
553			○(西魏)	○(西魏)
555			○(西魏)	
558				○(北周)

‘표 2’를 통해 5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사국과 북위 사이의 교류가 활국에 비해 활발하였으나, 476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484년 페로즈 1세가 활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국내의 혼란으로 외교 사절의 파견이

60. 安炫柱, 2020, 앞의 논문, p.94.

61. 『북송모본』에서는 528년, 『양서』와 『남사』에서는 530년·533년·535년, 『장경모본』에는 529년에 교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2. 카바드 1세는 활국에서 한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2차례의 왕위 획득 과정 및 비잔틴제국과의 전쟁에서도 활국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활국 왕의 조카와 혼인을 맺었으며,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이러한 활국과 파사국 사이의 상하관계는 카바드 1세의 치세 후기 혹은 후계자인 호스로우 1세 때에 들어서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ydogdy Kurbanov, 2010, THE HEPHTHALITE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ANALYSIS, PhD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of the Free University, Berlin, pp.171~1770] 참고된다.

63. Vesta Sarkhosh Curtis-Sarah Stewart, 2010, The Sasanian Era, I.B. Tauris, p.90 ; Tianze Li, 2021, Sasanian's Role in the Trading Network of the Silk Roads: An Insight into the Coins Found along the Silk Roads, The Frontiers of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3, Francis Academic Press, pp.57~59.

64. 『북송모본』, 『장경모본』

65. 『북송모본』

66. 『장경모본』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상 활국의 종속국과 같은 위치로 변화함에 따른 육상 실크로드에서의 영향력 감퇴로 인한 현상이라 추측된다.

한편 507년에서 522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총 5차례의 통교가 확인된다. 이 시기에 파사국과 활국 사이의 역학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507·517년의 사신 파견은 활국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518·521~522년의 경우에는 거밀(居密)·소록(疏勒)·구자(龜茲) 등과 같이 활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국가들⁶⁸과 함께 사신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활국의 배려 혹은 감독 아래 이루어진 일로 이해된다.

반면 523년~552년까지의 시기에 파사국은 북조와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은 대체로 호스로우 1세의 치세 때에 해당하는데, 그는 각종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여 국력을 신장시켰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국에 공물을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장벽까지 건설하는 정책을 펼쳤다.⁶⁹ 이러한 행보로 활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파사국은 육상 실크로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고, 북조와의 교류도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파사국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한 메꿀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그 전과 달리 양과의 교류가 확인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관련된 노력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한다.

도 19. 고대 실크로드 3대 간선과 5대 지선



67.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북위(北魏) 정시(正始) 4년과 희평(熙平) 2년의 기록에는 활국(滑國)과 파사국(波斯國)의 사신이 동시에 입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8. 소록(疏勒)·구자(龜茲) 등은 『위서(魏書)』나 『양서(梁書)』에서 활국(滑國)이 정벌하여 거느렸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거밀(居密)의 경우는 다소 애매하다. 그런데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걸친 펀자브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그리스와 아랍 측 자료에서 Komedaie-Kumede로 불렸고 여기에는 『위서(魏書)』의 가배국(伽倍國), 『양서(梁書)』의 호밀(胡밀단국(胡密丹國)은 활국의 방소국(旁小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舊唐書)』의 호밀(護密)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동북아역사재단, 2010, 『講註 中國正史 外國傳7—魏書 外國傳 講註』, 동북아역사재단). 한편 『구당서(舊唐書)』 지리지(地理志)의 서역십육도독지부(西域十六都督州府)에 대한 설명에 호밀단국(胡密丹國)으로 추정되는 호밀다국(護密多國)이 있던 지역에 설치된 곤허주(崑墟州)와 조비주(鳥飛州) 사이에 지거주(至柘州)가 설치된 구밀국(俱密國)의 조슬성(措瑟城)이 언급되어 있다(昆墟州 於護密多國所治抵實那城置. 至柘州 于俱密國所治措瑟城置. 鳥飛州 於護密多國所治撰廷城置). 기재 순서를 보아 구밀국(俱密國)은 조밀단국(胡密丹國)과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칭상

파사국이 양과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바닷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광둥성(廣東省) 지역에서 출토된 파사국의 주화(鑄貨)로 미루어볼 때, 늦어도 5세기 후반 단계에서부터는 「페르시아만→인도·스리랑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 남부 해안 지역」의 경로로 해상 교역로가 개척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⁷⁰ 그런데 이는 인도와 스리랑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업용 기지를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의 형태로서, 당시 파사국의 상인들조차 직접 중국 남부지역까지 도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⁷¹ 그렇다면 파사국과 梁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교류의 실상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진행된 외교 활동과는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다.

북조의 경우에는 사신 파견과 관련된 해당 시기 파사국 국왕의 이름이라던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내부의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⁷² 이와 비교해보면 양에서 인식하고 있던 파사국에 대한 정보가 다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가정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아닐까 한다.⁷³

한편 파사국이 사신을 보내어 양에 바친 물품 중 특기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성물(聖物)인 부처의 치아(佛牙)인데, 이 역시 양국 간 교류의 성격이 온전히 공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게끔 하는 요소다. 파사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였고 불교 역시 이에 포함되지만, 대체로 중앙아시아 방면의 동쪽 변경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이다.⁷⁴ 더욱이 6세기 중반의 국왕인 호스로우 1세는 즉위 이전부터 마즈다크교(Mazdakism)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조로아스터교(拜火教)의 위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사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에

거밀(居密)과 동일한 실체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점과 함께 활국(滑國)이 그 전성기에 펀자브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다는 점(르네 그루세 펠, 김호동·유원수·정재훈 譯, 1998,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 사계절, pp.124~128)을 고려하면, 거밀(居密) 역시 『위서(魏書)』나 『양서(梁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활국(滑國)이 정벌하였다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였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69. Touraj Daryaee, 2009, ibid, p.29; Aydogdy Kurbanov, 2010, ibid, p.185.

70. Touraj Daryaee, 2009, ibid, pp.138~139; Joe Cribb, 2019, Fifth Century Sasanian Coins Found in Guangdong Province, Southern China, Journal of the Oriental Numismatic Society 236, JONS.

71. David Whitehouse and Andrew Williamson, 1973, Sasanian Maritime Trade, Iran 11,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ies, pp.48~49; Majid Montazer Zoori, 2020, Some Thoughts on the Iranian-Chinese Maritime Trade in Late Antiquity and during the Early Islamic Period,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vol.2, Harrassowitz, pp.549~551.

72. 예컨대 『위서(魏書)』에 기록된 파사국의 왕위계승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6세기 비잔틴 제국이 벌인 여러 전쟁에 증군한 역사가인 프로코피우스(Prokopios)의 『유스티니아누스의 전쟁(Υπὲρ τῶν πολέμων λόγος)』에서도 확인된다(Prokopios(Author), Anthony Kaldellis H.B.Dewing (Translator), 2014, The Wars of Justinian, Hackett Publishing Company, pp.55~56의 [17]-[22]). 즉 카바드 1세는 아들인 호스로우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그를 다음 국왕으로 한다는 문서를 남겨 재상 마호보드(Mahbod)에게 보관하도록 했는데, 카바드가 사망한 후 카부스(Kabus)라는 인물이 법률상 왕위 계승의 권리는 자신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호보드는 파사국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제지한 뒤, 유력자들이 모였을 때 카바드 1세가 남긴 유조를 꺼내서 공개하였다. 이에 모두가 호스로우 1세를 옹립함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왕위계승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마호보드의 행동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는 북위(北魏)가 갖고 있던 파사국에 대한 정보들이 꽤 신뢰할만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위와 같은 정보는 파사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상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 점에서 복구에 입조하였던 사신을 통해 습득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양서(梁書)』에서 파사국에 대한 정보가 『위서』에 비해 빈약한 이유가 정보원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3. 이는 『양서(梁書)』 및 『북송모본』 제기에 양(梁) 이전부터 남조(南朝)와의 교류가 확인되면서, 물리적으로도 파사국에 비해 교류가 용이한 임읍(林邑), 부남(扶南) 등에 대한 설명에서는 국왕 및 사신의 명칭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도 비교되는 양상이다.

74. Touraj Daryaee, 2009, ibid, pp.96~97; Richard E. Payne, 2015, A State of Mixture: Christians, Zoroastrians, and Iranian Political Culture in Late Antiqu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2~33.

‘불멸의 영혼[Anushirvan]’이라고까지 칭해진 인물이다.⁷⁵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파사국 조정에서 부처의 치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을지도 의문이며, 하물며 이교(異敎)의 성물을 공식적인 사절단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중계무역에 종사함에 따라 불교가 성행하였던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사정을 상대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었을 파사국의 상인이 입수하여 헌납한 사실이 윤색되어 기록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소역의 원본 『양직공도』 파사국 사신도는 사신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었던 인물의 모습이 반영되어 묘사된, 즉 일종의 ‘상상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⁷⁶ 또한 실제로 파사국의 사신을 관찰하여 그렸다고 할지라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이 멸망한 이후 시기의 특징이 관찰되는 모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3종 모본에서 보이는 파사국 후기의 복식 요소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신도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진다.

C-1. 양제(揚帝)가 운기위(雲騎尉) 이욱(李昱)을 보내어 파사(波斯)와 통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이욱을 따라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⁷⁷

C-1은 수의 대업(大業) 연간(605~618)에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마 이는 수의 돌궐(突厥)에 대한 견제와⁷⁸ 활국을 멸망시킨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파사국과 돌궐 사이의 갈등이 맞물렸기에⁷⁹ 성사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사

도 20. Benaki Museum 소장 벽화



파사국 왕과 수행원

도 21. Ajanta 석굴 제1굴 벽화



파사국 사신 혹은 상인

건이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파사국 후기의 복식 요소에 대한 정보가 7세기 초반에는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도 20’은 그리스 지역에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벽화의 잔존 부분으로, 파사국의 왕과 그를 수행하는 귀족·관리 혹은 병사들을 그렸다고 이해되고 있다.⁸⁰ ‘도 21’은 62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아잔타 제1굴 벽화의 한 장면인데,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파사국 사람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⁸¹ 즉 C-1에서 가까운 시점의 파사국의 복식 형태와 관련된 자료인 것이다. 여러 가지 복식 요소들이 확인되지만, 이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옷깃의 형태가 모두 변령이 아닌 단령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뒷 시기인 당대(唐代)에는 더욱 주목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파사국이 무슬림 세력에 의해 멸망한 이후, 지배층을 포함한 유민들이 대거 당으로 망명한 것이다.

C-2. 그 아들의 이름은 비로사(卑路斯)였는데, 다시 토화라(吐火羅)의 엽호(葉護)에게 투항하여 사로잡힘을 피하였다. 비로사는 용삭 원년에 대식(大食)이 자주 침범하여 소란스럽게 한다고 아뢰며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주기를 청하였다. 조를 내려 농주(隴州)의 남유현령(南由縣令)인 왕명원(王名遠)을 사신으로 하여 서역으로 보내서 그 땅을 나눠 주와 현을 설치하게 하고, 그 땅의 질릉성(疾陵城)을 분리해서 파사도독부(波斯都督府)를 만들고 비로사를 제수하여 도독으로 삼았다. 이후로 수차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함형(咸亨) 연간에 비로사가 직접 와서 입조하니 고종이 충분히 은상을 더하여 주고 우무위장군(右武衛將軍)의 벼슬을 주었다. 의봉(儀鳳) 3년에는 이부시랑(吏部侍郎) 배행검(裴行儉)에게 군사를 거느리도록 명하고 칙서를 보내어 비로사를 파사왕(波斯王)으로 삼도록 했다. 행검은 그 길이 멀어서 안서(安西)의 쇄엽(碎葉)에 이르렀다가 돌아오니, 비로사는 홀로 되돌아 갔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점차 대식에게 침략당하니 토화라에서 20여년 동안 객(客)으로 있게 되어 부락에 수천명이 있었는데 후에 점차 떠나고 흩어져다. 경룡(景龍) 2년에

75. Richard E. Payne, 2015, *ibid*, p.41 및 p.53.

76. 즉 파사국 상인 혹은 그들과 거래하던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 현지의 상인을 통해 얻어진 정보로 그려거나, 北朝를 통해 유입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렸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77. 『隋書』, “煬帝遣雲騎尉李昱使通波斯, 尋遣使隨昱貢方物”

78. 이에 대해서는 이정빈, 2015, 「607년 고구려 동돌궐 교섭의 배경과 목적」 『역사학보』 225, 역사학회, pp.2~9와 임정운, 2018, 「수 문제 시기 돌궐정책 -장손성의 책락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49, 중국고중세사학회가 참고된다.

79. 파사국과 돌궐과의 대규모 전쟁은 3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르네 그루쎄 著, 김호동·유원수·정재훈 譯, 1998, 앞의 책, pp.145~146이 참고된다. 보다 상세한 것은 Parvaneh Pourshariati, 2008, *Decline and Fall of the Sasanian Empire: The Sasanian-Parthian Confederacy and the Arab Conquest of Iran*, I.B. Tauris, pp.149~160 및 Khodadad Rezakhani, 2017, *ReOrienting the Sasanians: East Iran in Late Antiquity*,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176~179 참고된다. 한편 『隋書』와 『舊唐書』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등장한다.

80. Helen C. Evans, 2011, *Byzantium and Islam An Age of Transition (7th-9th Centuries)*, Metropolitan Museum of Art, p.28.

81. 과거에는 이 인물을 찰루키아(Chalukya) 왕조 때 풀라케신 2세(Pulakesin II, 재위 609~642)를 방문한 파사국 호스로우 2세의 사신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Walter M. Spink, 2005, *The Persian Embassy,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Volume 1 The End of the Golden Age*, Brill, p.181). 그러나 현재 이 그림은 석가모니의 전생 중 하나로 여겨짐과 동시에, 그가 열반에 들 당시에 언급한 쿠사와티(Kusavati)를 다스린 마하수다사나(Mahasudarsana)라는 왕과 관련된 자타카를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Dieter Schlingloff, 1988, *Studies in the Ajanta paintings: identifications and interpretations*, Ajanta Books International, p.59). 즉 산치(Sanchi) 대탑의 부조에서 쿠사와티에 거주하는 파사국 복장을 한 외국인들이 묘사된 것과 같이, 마하수다사나가 다스린 쿠사와티의 변역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Dieter Schlingloff, 1988, 위의 책, p.60). 한편으로는 당시 해양을 통해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 중국과의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던 파사국 상인들(Pia Brancaccio, 2011, *The Buddhist Caves at Aurangabad Transformations in Art and Religion*, Brill, pp.84~85)이 인도 중부 지역에서도 많은 수가 활동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잔타 석굴에 그려진 파사국 복장의 인물들은 그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파악하기도 한다(Walter M. Spink, 2005, *ibid*, p.183).

이르러 다시 와서 입조하니 벼슬을 내려 좌위위장군(左威衛將軍)으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들어 사망하니 그 나라가 드디어 멸망하고 부중(部衆)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⁸²

C-2는 파사국의 멸망 및 그 후예들에 관해 『구당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파사국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야즈데게르드 3세(Yazdegerd II, 재위 632~651)⁸³의 아들 페로즈 3세(Peroz III, 비로사)는 망국의 왕자 신세이긴 하더라도, 나름의 세력을 얼마간 유지하면서 당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⁴ 당은 이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페로즈 3세 및 그와 함께하였을 파사국 옛 지배층의 용모나 복식을 꽤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 22. 건릉(乾陵) 소재 페로즈 3세 추정 석상



‘도 22’는 당 고종의 무덤인 건릉에 세워진 석상 중 하나인데, 위의 C-2에 언급된 페로즈 3세를 모델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⁵ 이 석상은 ‘도 11’~‘도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령의 옷깃이 높게 위치하였으며, 하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카프탄

을 입고 목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최소한 7세기 후반까지도 중국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파사국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들이 착용하였던 복식은 『복송모본』이나 『왕회도』 보다는 『고덕검모본』에 그려진 바에 가까운 형태였음을 보여준다.⁸⁶

한편 『복송모본』과 『왕회도』의 파사국 사신도에서 보이는 변령 형태 옷깃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7~8세기에 돌궐 및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소그드인들과 관련된 자료에서부터 주로 확인되는 복식 요소다. 당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호복(胡服)이 상당히 유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페로즈 3세를 따라서 망명지에 정착한 파사국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이 7세기 후반 이후에는 변령의 옷깃이 달린 복식을 입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시 C-2를 살펴보면 페로즈 3세는 결국 파사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토화라, 즉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그의 무리들과 함께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페로즈 3세가 8세기 초엽에 사망한 뒤에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⁷ 그런데 토화라 지역은 오랫동안 소그드인들의 주요 활동 지역 중 하나였다.⁸⁸

이곳의 파사국 출신 주민들은 본질적으로 난민의 형태로 정착한 상태였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정통성을 가진 인물도 사망함에 따라 점차 소그드인들과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였을 토화라 지역의 주민들과 동화되어 갔을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변령 형태의 옷깃의 착용이 시작되었고, 당에서도 파사국 사람들의 복식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복송모본』과 『왕회도』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변화가 발생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⁸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덕검모본』의 파사국 사신도는 7세기~8세기 초반 사이에 수나 당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복식 요소가 반영되어 제작된 계통에 속하는 자료이며, 『복송모본』·『왕회도』의 경우는 8세기 초반 이후에나 그려질 수 있었던 계통의 모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복송모본』과 『왕회도』 간에는 시기적인 구분을 검토하기 위한 요소가 마땅치 않다. 다만 화풍의 차이로 간주해도 무방할 만한 것들을 제외하면, 이식의 묘사 여부가 주목된다. 양자는 동일한 채색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송모본』은 『왕회도』와 달리 거의 대부분의 사신도에서 이식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한 대 이래 중국에서는 귀를 뚫어 이식을 착용하는 행위가 범법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거나 오랑캐(外夷)의 습속으로 천시받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송대를 기점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⁹⁰ 그렇다면 『복송모본』과 『왕회도』의 차이도 이와 관련된

82. 『舊唐書』“其子名卑路斯 又投吐火羅葉護 獲免 卑路斯龍朔元年奏言頻被大食侵擾 請兵救援 詔遣隴州南由縣令王名遠充使西域 分置州縣 因列其地疾陵城爲波斯都督府 授卑路斯爲都督 是後數遣使貢獻 咸亨中 卑路斯自來入朝 高宗甚加恩賜 拜右武衛將軍 儀鳳三年 令吏部侍郎裴行儉將兵冊送卑路斯爲波斯王 行儉以其路遠 至安西碎葉而還 卑路斯獨返 不得入其國 漸爲大食所侵 客於吐火羅國二十餘年 有部落數千人 後漸離散 至景龍二年 又來入朝 拜爲左威衛將軍 無何病卒 其國遂滅 而部衆猶存”

83. 『구당서(舊唐書)』에서는 이사후(伊嗣侯)로 기록되어 있다.

84. 이러한 관계는 당(唐)이 멸망시킨 직후의 고구려나 백제 고지(故地)에 대한 관리 방식과 흡사하다.

85. Hamidreza Pashazanous-Esmaeil Sangari, 2018, The Last Sasanians in Chinese Literary Sources: Recently Identified Statue Head of a Sasanian Prince at the Qianling Mausoleum, Iranian Studies 51, Taylor & Francis. 여기서는 이 석상이 페로즈와 함께 파사도독부를 다스렸던 난메이(Nanmei: 南昧)라는 인물일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난메이라고 새겨져 있었다는 석상의 명문은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페로즈 3세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된다.

86. 『舊唐書』와 『新唐書』의 변령이 아니라는 정보(B-3-4) 역시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서술된 기록이었으리라 짐작된다.

87. Christoph Baumer, 2014, THE HISTORY OF CENTRAL ASIA-The age of the Silk Roads vol. 2, I.B. Tauris, pp.280~281. 여기에서는 페로즈 3세의 아들 나르세스가 다시금 파사국을 재건하기 위해 아랍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舊唐書』나 『新唐書』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또한 『구당서』에는 페로즈 3세의 사망 이후로도 파사국의 조공 기록이 8세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토화라 지역에 정착한 부중(部衆)들과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한다.

88. Christoph Baumer, 2014, ibid, p.15.

89. 혹은 페로즈 3세의 사망 이후에는 파사국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실제의 복식 사정과는 무관하게 서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소그드인들에 대해 갖고 있던 당대(唐代)의 이미지가 모본의 파사국 사신도에 덮어씌워졌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90. 李芽, 2015, 『中國歷代耳飾: 耳畔流光』, 中國紡織出版社, pp.81~87.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앞 장의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사국에서는 실제로 이식 착장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사국 외 다른 사신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차후의 기회를 통해 따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V. 결론

지금까지 소역의 원본 『양직공도』를 모사하였다고 전해지는 3종 모본의 사신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그에 반영된 역사적 맥락에 관하여 파사국 사신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3종의 모본이 소역의 원본 혹은 그것을 모사한 작품을 저본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원본 『양직공도』가 그려졌을 당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직공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통된 작품을 중심 저본으로 활용하였으나 부차적으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직공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종의 모본 중 『고덕검모본』은 밑그림이자 초본으로서 가장 먼저 제작된 계통에 속하는 모본으로 판단되며, 채색본인 『복송모본』과 『왕회도』는 완성본 계통에 속하는 모본으로 판단된다. 즉 ‘여러 단계’의 원본 『양직공도』가 존재하였고, 어떠한 것을 저본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모본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모사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커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모사의 방법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6세기 남제와 양에서 활동했던 사혁이 주창하였고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는 육법에서는, 전이모사라는 개념을 통해 모사 작업에서도 창의적 요소의 추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공유하고 있는 저본이 대체로 일치하더라도, 모사자가 달랐을 3종의 모본은 당연히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마지막 하나는 각 모본의 모델이 된 각국 사신들의 용모나 복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모사자들에 의해 반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 비교적 관련 자료가 풍부한 파사국의 사신도를 검토해보았다.

파사국과 관련된 문헌 기록과 고고·미술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양서』·『위서』·『구당서』·『신당서』 등에 언급된 파사국의 용모나 복식 관련 정보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 시기에 걸쳐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각 모본 사신도에 묘사된 모습은 대체로 파사국 전

기보다는 후기에 등장하는 복식 요소에 부합되는 면이 많이 관찰되는데, 3종의 모본 중에서는 『고덕검모본』이 가장 유사하다.

한편 파사국과 양에서부터 당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교류 양상을 검토해본 결과, 소역의 원본 양직공도에 그려졌을 파사국의 사신도는 실제 사신을 대상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각 모본에 그려진 복식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당대에는 파사국 후기의 복식을 착용한 사신 및 지배계층의 모습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당은 파사국이 멸망한 이후 그들의 지도자인 페로즈 3세를 비롯한 다수의 난민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7세기 후반에 건설된 고종의 건릉에 페로즈 3세로 추정되는 석상이 세워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도 『고덕검모본』에 부합되는 파사국 후기 이래의 복식 형태가 관찰된다. 따라서 『고덕검모본』의 파사국 사신도는 7세기~8세기 초 사이에 관찰되었던 파사국의 복식 요소가 반영되어 제작되었던 계통의 모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송모본』과 『왕회도』에서 묘사된 번령의 옷깃이 좌·우로 달린 카프탄은 파사국이 존속하던 시기는 물론, 멸망 이후에도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옷깃은 7~8세기 이후부터 돌궐 및 그에 영향을 받은 소그드인들에게서부터 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구당서』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파사국 유민들은 7세기 후반 이후 소그드인들의 주요 활동 지역 중 하나였던 토화라 지역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파사국 유민들은 점차 소그드인들의 복식 문화에 영향을 받아 좌우 번령의 옷깃을 착용하게 되었거나, 혹은 파사국의 복식 정보가 더 이상의 갱신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동일하게 호인(胡人)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소그드인들의 특징적인 복식 요소가 파사국 사신도에 덧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복송모본』과 『왕회도』의 파사국 사신도는 묘사된 복식 요소로 볼 때, 아무리 빨라도 7세기 후반 이후에나 제작될 수 있었던 계통의 모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파사국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나머지 사신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본고가 목표로 하였던 향후 각 모본의 삼국 사신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주의의 환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미진하였던 부분은 향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료

『魏書』 『梁書』 『周書』 『隋書』 『南史』 『北史』 『舊唐書』 『新唐書』 『古畫品錄』 『唐朝名畫錄』 『歷代名畫記』 『德隅齋畫品』.

국내 자료(학위논문)

안재柱, 2020, 『唐代《王會圖》의 使臣服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기연, 2017, 『백묘를 통한 회화적 상징 표현연구 : '손'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준석, 2002, 『李公麟의 白描畵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내 자료(논문·번역논문·발표문)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 60, 한국복식학회.

김연주·김은경, 2018, 「南北朝 時代 『古畫品錄』의 회화비평사적 의의」 『중앙사론』 47,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胤崇正 著, 안영길 譯, 2004, 「清代 宮廷의 繪畵稿本에 대한 고찰」 『美術史論壇』 19, 한국미술연구소.

소현숙, 2017, 「고대 동아시아 불교조각과 화본(畵本)」 『불교미술사학』 23, 불교미술사학회.

이정빈, 2015, 「607년 고구려 동돌궐 교섭의 배경과 목적 」 『역사학보』 225, 역사학회.

임정운, 2018, 「수 문제 시기 돌궐정착－장손성의 책략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49, 중국고중세사학회.

압둘 호세인 자린쿠·루즈베 자린쿠 공저, 태일 옮김, 2011, 『페르시아 사산제국 정치사』, 예영커뮤니케이션.

尹龍九, 2012, 『『梁職貢圖』의 流傳과 摹本』 『목간과 문자』 9, 한국목간학회.

——, 2021, 「梁과 西域諸國의 교류와 영향 -『양직공도』의 波斯國 題記를 중심으로-」 『『양직공도』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국립해양박물관

2021 학술대회 발표집.

장영수, 2011, 「사산조 초기 아르다시르 1세 부조에 묘사된 복식 연구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 한국의류산업학회.

정동준, 2021, 「蕭繹의 생애와 『梁職貢圖』의 편찬」. 『『양직공도』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한원연구회·국립해양박물관 2021 학술대회 발표집.

정은주, 2015, 「中國 歷代 職貢圖의 韓人圖像과 그 인식」 『漢文學論集』 42, 근역한문학회.

정혜린, 2018, 「吳道子和 唐 화론의 미적 기준의 변화」 『美學』 84, 한국미학회.

채해정, 2008,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미술」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국내 자료(단행본·번역본)

김소현, 2003, 『호복 : 실크로드의 복식』, 민속원.

갈로 펴, 강관식 譯, 2010,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동북아역사재단, 2010,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7—魏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르네 그루쎌 著, 김호동·유원수·정재훈 譯, 1998,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 사계절.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장언원 著, 조송식 譯, 2008, 『역대명화기 상-중국 옛 그림을 말하다』, SIGONGART.

국외 자료(학위논문·논문)

榎一雄, 1988, 「故宮博物院所藏の梁職貢圖について」, 『東洋文庫書報』19, 東洋文庫.

深津行徳, 1999, 「臺灣故宮博物院所藏『梁職貢圖』模本について」, 『朝鮮半島に流入した諸文化要素の研究 2』(學習院大學東洋學研究所 調査研究報告 44).

金維諾, 1960, 「職貢圖의時代與作者」 『文物』 1960-7.

王素, 1992, 「梁元帝职贡图新探-兼说滑及高昌国史的几个问题」 『文物』 1992-2.

Alexander Nikitin, 1994, The Sasanian Shahrab of Balkh, Ancient Civilizations from Scythia to Siberia 1, Brill.

Aydogdy Kurbanov, 2010, THE HEPHTHALITE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ANALYSIS, PhD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of the Free University, Berlin.

Bernard Golman, 1993, The Later Pre-Islamic Riding Costume, Iranica Antiqua 28, Peeters Publishers, Leuven(Belgium).

『양직공도(梁職貢圖)』 모본(摹本) 사신도(使臣圖)의 특징과 제작 시기 검토
파사국(波斯國) 사신도(使臣圖)를 중심으로

Bruno Overlaet, 2009, A Roman Emperor at Bishapur and Darabgird: Uranius Antoninus and the black stone of Emesa, Iranica Antiqua 44.

David Whitehouse and Andrew Williamson, 1973, Sasanian Maritime Trade, Iran 11,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ies.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Hamidreza Pashazanous·Esmael Sangari, 2018, The Last Sasanians in Chinese Literary Sources: Recently Identified Statue Head of a Sasanian Prince at the Qianling Mausoleum, Iranian Studies 51, Taylor & Francis.

P. O. Harper, 1979, Thrones and Enthronement Scenes in Sasanian Art, Iran 17, Taylor & Francis, Ltd.

Joe Cribb, 2019, Fifth Century Sasanian Coins Found in Guangdong Province, Southern China, Journal of the Oriental Numismatic Society 236, JONS.

Majid Montazer Zoouri, 2020, Some Thoughts on the Iranian–Chinese Maritime Trade in Late Antiquity and during the Early Islamic Period,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vol.2, Harrassowitz.

Prokopios(Author), Anthony Kaldellis H.B.Dewing (Translator), 2014, The Wars of Justinian, Hackett Publishing Company.

Rika Gyselen, 2016, The Parthian Language in Early Sasanian Times, The Parthian and Early Sasanian Empires: Adaptation and Expansion, Oxbow Book.
Sergey A. Yatsenko, 2006, The Late Sogdian Costume (the 5th – 8th cc. AD), Ēran ud Anērān : Studies presented to Boris Ilich Marshak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Libreria Editrice Cafoscarina.

Touraj Daryae, 2010, Ardashir and the Sasanians’ Rise to Power, Anabasis: studia classica et orientalia 1, WYDAWNICTWO UNIWERSYTETU RZESZOWSKIEGO.

Tianze Li, 2021, Sasanian’s Role in the Trading Network of the Silk Roads: An Insight into the Coins Found along the Silk Roads, The Frontiers of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3, Francis Academic Press.

Walter, M. Spink, 2005, The Persian Embassy,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Volume 1 The End of the Golden Age, Brill.

국외 자료(단행본)

李芽, 2015, 『中國歷代耳飾：耳畔流光』, 中國紡織出版社.

Christoph Baumer, 2014, THE HISTORY OF CENTRAL ASIA-The age of the Silk Roads vol. 2, I.B. Tauris,

Christopher J. Brunner, 1979, Sasanian Stamp Seal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Dieter Schlingloff, 1988, Studies in the Ajanta paintings : identifications and interpretations, Ajanta Books International.

Helen C. Evans, 2011, Byzantium and Islam An Age of Transition (7th–9th Centuries), Metropolitan Museum of Art.

Lerner, Judith A.; Sims-Williams, Nicholas, 2011, Seals Sealings and Tokens from Bactria to Gandhar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Mary G. Houston, 2012,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Dover Publications.

Mary Brooks Picken, 2013,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Dover Publications.

Matt Waters, 2014, Ancient Persia: A Concise History of the Achaemenid Empire, 550–330 B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sef Wiesehofer, 2001, Ancient Persia: From 550 BC to 650 AD, I.B.Tauris,

Khodadad Rezakhani, 2017, ReOrienting the Sasanians: East Iran in Late Antiquity Edinburgh University Press.

Parvaneh Pourshariati, 2008, Decline and Fall of the Sasanian Empire: The Sasanian–Parthian Confederacy and the Arab Conquest of Iran, I.B. Tauris.

Pia Brancaccio, 2011, The Buddhist Caves at Aurangabad Transformations in Art and Religion, Brill.

Richard E. Payne, 2015, A State of Mixture: Christians, Zoroastrians, and Iranian Political Culture in Late Antiqu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ouraj Daryae, 2009, Sasanian Persia – The Rise and Fall of an Empire, I. B. Tauris.

Vesta Sarkhosh Curtis·Sarah Stewart, 2010, The Sasanian Era, I.B. Tauris.

Zamaneh Mofidi, 2018, The Common Elements in Marriage and Divorce Laws of Late Zoroastrian/Sasanian Family Law and Early Muslim Ju-risprudence in Mesopotami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그림 출처

도 1. 『고덕검모본』 파사국 사신도.

劉芳如, 鄭淑方 主編, 2019, 『四方來朝-職貢圖特展』, 國立古宮博物院, p.31.

도 2. 『복송모본』 파사국 사신도.

劉芳如, 鄭淑方 主編, 2019, 『四方來朝-職貢圖特展』, 國立古宮博物院, p.208.

도 3. 『왕회도』 파사국 사신도.

劉芳如, 鄭淑方 主編, 2019, 『四方來朝-職貢圖特展』, 國立古宮博物院, p.21.

도 4. Naqsh-e Rjab 부조의 귀족·관리.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1.

도 5. Bishapur 부조의 근위병 혹은 일반 병사.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3.

도 6.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귀족·관리 인장.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22513>).

도 7. 파사국의 콜라(前期).

左: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1.

右: Soroor Khorashadi, 2017, Characterology of the Iranian Commander in front of the Emperor in the Rock Relief of Darabgerd,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ety of Iranian Archaeologists 3, The Society of Iranian Archaeology, p.84의 Fig.14.

도 8. 前期 튜닉 참고 사례.

左: Livius.org(<https://www.livius.org/pictures/iran/bishapur/bishapur-relief-6/bishapur-relief-6-persian-officers/>).

右: Brooklyn Museum(<https://www.brooklynmuseum.org/opencollection/objects/51792>).

도 9. 파사국의 목이 짧은 신발(前期).

左上: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1.

右上: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73.

左下: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22513>).

右下: Livius.org(<https://www.livius.org/pictures/iran/naqs-e-rustam/naqs-e-rustam-relief-of-narseh/naqs-e-rustam-investiture-relief-of-narseh-3/>).

도 10. 하프 연주자.

안나 반잔 著, 송대범 譯, 2008, 『페르시아 고대 문명의 역사와 보물』, 생각의 나무, p.165.

도 11. Taq-i-Bustan 멧돼지 사냥 부조(1).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Pl. XVIII.

도 12. Taq-i-Bustan 멧돼지 사냥 부조(2).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Pl. XV.

도 13. Hermitage Museum 소장 은판(1).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Fig. 11.

도 14. Hermitage Museum 소장 은판(2).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Fig. 10.

도 15. 파사국의 콜라(後期).

左: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Fig. 11.

右: P. O. Harper, 1979, Thrones and Enthronement Scenes in Sasanian Art, Iran 17, Taylor & Francis, Ltd, Pl. V.

도 16. 後期 카프탄 참고 사례.

左: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Fig. 15.

右: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27518>).

도 17. 돌궐·소그드인 좌우 변령 카프탄.

左: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 60, 한국복식학회, p.122.

右: 김용문, 2010,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服飾』 60, 한국복식학회, p.122.

도 18. 파사국의 목 긴 신발(後期).

左: Elsie H. Peck, 1969,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31, Artibus Asiae Publishers, Fig. 11.

右: The British Museum(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W_1963-1210-3).

도 19. 고대 실�크로드 3대 간선과 5대 지선.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p.603.

도 20. Benaki Museum 소장 벽화.

Helen C. Evans, 2011, Byzantium and Islam An Age of Transition (7th-9th Centuries), Metropolitan Museum of Art, p.28.

도 21. Ajanta 석굴 제1굴 벽화.

Walter M. Spink, 2005, The Persian Embassy, AJANTA: HISTORY AND DEVELOPMENT-Volume 4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year by year, Brill, Pl. 25.

도 22. 건릉(乾陵) 소재 페루즈 3세 추정 석상.

Hamidreza Pashazanous-Esmaeil Sangari, 2018, The Last Sasanians in Chinese Literary Sources: Recently Identified Statue Head of a Sasanian Prince at the Qianling Mausoleum, Iranian Studies 51, Taylor & Francis, p.506 및 p.509.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Time of Envoy Illustrations (使臣圖), Replicas of 『Liang Zhigongtu(梁職貢圖)』

- Focus on envoy illustration of Bosiguo(波斯國) -

Na Yong-jae

Three types of replicas, which are said to have imitated Liang Zhigongtu (“梁職貢圖”), have been regarded as materials that reflect the situations of costumes in the Three States in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in Korea. However, since they were produced after the fall of Liang (梁), it is difficult to be sure that the circumstances when the original copy was produced were faithfully reflected. Thus, to advance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Envoy Illustrations, the replicas in advance. However, since they cannot be dealt with as a whole at once, this paper selected the Illustration of Envoys from Bosiguo (Sasanian Persia, 波斯國) as a research subject and would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time of the Envoy Illustration as a replica.

There are not a few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ypes of replicas perhaps because the variety of the original copy or the style of the painter and changes in costumes over time were reflected in the production of the replica. This paper examined the Illustration of Envoys from Bosiguo, focusing on the latter.

The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records and archaeological and artistic materials related to Bosiguo showed that the costumes depicted in the Illustration of Envoys as a replica corresponded to the forms shown in the late Bosiguo after the fall of Liang. Of the replicas, Godeokgyeom's Replica (“南唐顧德謙摹梁元帝蕃客入朝圖”) is the most similar to thi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llustration of Envoys from Bosiguo in the original copy of Liang Zhigongtu illustrated the actual envoys, and even if it did, it is presumed that there were big differences from the replicas.

Concerning the production time of each replica, it is judged that Godeokgyeom's Replica is a replica on the line produced by reflecting the costumes of Bosiguo, which could be observed during the Sui and Tang Dynasties between the early and late 7th centuries. On the other hand, Northern Song Replica (“南京博物院 舊藏 北宋摹本”) and Wanghoedo (“唐 閻立本 王會圖”) are depicted in forms that have not been confirmed for a while after the fall as well as

during the period when Bosiguo was in existence. Costumes of these kinds are mainly observed in the materials related to Turks in the 7th to 8th century and Sogdians affected by them. It is judged that Northern Song Replica and Wanghoedo are replicas on the line produced by reflecting the costumes of the people of Bosiguo, who have lived in Tokhara since the late 7th century and hav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gdian culture or those on the line produced by reflecting Tang people's image over Sogdians.

Keyword 『Liang Zhigongtu(梁職貢圖)』, Envoy Illustration (使臣圖), Bosiguo (波斯國), Costumes, The production time of a replica

논문투고일 : 2021. 09. 24.
심사완료일 : 2021. 11. 26.
게재확정일 : 2021. 12. 01.

조선시대 해양인식(海洋認識)과 해금정책(海禁政策)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I. 머리말

II. 조선시대 해양의 의미와 범주

III. 조선의 해양인식과 통치정책

IV. 조선의 범월(犯越)과 해금정책의 강화

V. 맺음말

초록

조선은 해양을 연해안과 도서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해양의 자연요소와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 조선은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해방정책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했다. 조류와 같은 자연요소는 해양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을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항로를 역사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 무엇보다 조선은 해양의 지정학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해양정책을 전개했다.

조선의 해양정책은 국가안위와 국왕중심의 통치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통치질서의 안정화는 중국(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만한 대중국 관계가 필요로 했다. 이에 중국의 해양정책에 영향을 받아 조선도 해금정책을 기본으로 채택했다. 조선의 해양정책은 해방정책으로 표출되었으며, 해방의 핵심은 해양이란 공간을 통해 침범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함으로써 조선의 군사, 정치적 위기를 방지함에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은 수군력을 초기부터 양성하고 편제하였다. 해양이란 공간과 연결된 연해안과 도서지역에 조선은 마정을 시행함으로써 국방체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조선의 해양정책에서 계서적인 국제질서와 연결되는 세부 정책이 해금정책이다. 해금정책은 대내적으로 불법적인 해양진출을 제어하면서 대외적으로 해양을 통해 진입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는 이중성이 있었다. 조선의 해금정책은 국제질서와 연결되어 국내 통치정책이자 국외 외교정책이었다. 해금정책은 또한 조선시대 변경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조선의 국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규정하는 강계는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어야 했다. 왕권이 미치는 범주라는 점에서 왕화(王化)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강계를 함부로 벗어나 왕법(王法)을 어기는 점에 대해 단호한 금제(禁制)를 시행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은 해금정책을 범월(犯越)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금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은 범월의 개념을 해양에 적용하여 외교정책과 연계된 해금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명·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주제어 조선왕조, 해양인식, 해양정책, 해금정책, 해방정책, 마정(馬政)

I. 머리말

고대부터 해양과 함께 삶을 영위한 한국사는 시대별로 해양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 한국사의 해양은 현재의 개념처럼 바다와 관련된 전반적인 범주가 아닌 섬과 연안으로 이어진 제한된 범주로 인식되었다. 익숙한 삶의 공간으로 해양은 큰 바다의 개념보다 한국사의 시대별 선박기술 및 해양정책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해양은 한국사의 공간적 범주로 존재했으며, 해양을 통한 다양한 소통과 교역, 군사적 활동이 전개되었다. 해양을 통해 한국사는 역사공간을 확장하고 역사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 해양, 해양교류, 해양정책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진척되었다. 학계의 해양관련 연구는 해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고대와 중세를 비교하며, 항로, 해로, 선박, 표류 등에 대한 연구¹, 해양사 측면에서 한국사를 분석한 연구², 해양인식과 해양사를 정리한 성과³, 조선후기 서구의 진출에 따른 지식인의 해양관 변화를 밝힌 연구⁴, 조선시대 해역체제를 밝힌 연구⁵, 일본의 해양을 통한 조선인식을 정리한 연구⁶, 해양와 가장 밀접한 제주도를 분석한 연구⁷, 연안항해 및 항로를 통한 해양활동을 정리한 연구⁸ 등이 있다. 조선시대 해양관련 연구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표류민 연구이다.⁹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인식한 해양은 어떠한 것이며, 조선시대 지속적으로 시행된 해금정책이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조선이 인식한 해양, 해양의 범주, 해양과 관련된 국가통제, 조선의 변경인식과 연관된 해금,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중관계의 원활한 안정을 위한 해금정책의 내용 등에 대한 연

1.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출판사, 2013.
2. 조영록 편 『한중문화교류와 남북해로』, 국학자료원, 1997; 강봉룡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2005; 정진술 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도서출판 신서원, 2008.
3. 강봉룡, 「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 『역사학보』200, 2008.
4. 노대환, 「조선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123, 2003.
5. 모모키 시로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6. 池内敏, 「18세기 일본 민중의 조선인식」, 『東方學志』84, 1994.
7. 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民을 중심으로-」, 『탐라문화』8, 1989;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도 고려」, 『도서문화』20, 2002; 고창석, 「19세기 제주도인의 표류실태」, 『19세기 濟州社會研究』, 일지사, 1997; 荒野泰典, 「근세 동아시아의 표류민 순환체제와 국제관계」,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2003; 고훈희,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도서출판 각, 2006;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정운경, 『탐라문건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제주 르포』, 휴머니스트, 2008; 이창익, 윤용택, 쓰하 다카시, 『제주와 오키나와-동아시아 지역간 이동과 교류』, 보고사, 2013;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 2013; 구모룡, 「해역세계와 제주도학의 방법」, 『해양풍경』, 산지니, 2013; 송정규 저, 김웅태, 김새미오 옮김, 『해외문건록-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2015.
8. 고훈환, 「조선후기 연안항해와 외양항로의 개척」, 『동방학지』161, 2013.
9. 荒野泰典,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体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400, 1983; 岸浩,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119-120, 1986;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573, 1987; 高東煥,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14, 1993;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이훈, 『朝鮮後期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鄭成一, 「漂流記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謄錄〉과 〈漂民被仰上帳〉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99, 2002; 閔周一, 「中世日朝海域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구는 더욱 미흡하다. 조선의 해양인식은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시대상황에 따라 해양정책으로 나타났다.¹⁰ 해양정책의 전면에 해금정책이 주목된다. 해금정책은 조선의 통치질서 확립 및 해양으로 접근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였다.¹¹ 이런 경향의 해양관련 정책과 해금은 조선후기 서양세력과 표류의 급증으로 강고하게 시행되었다.¹² 해양인식과 정책은 국가의 입장에서 분명 경계인식과 관련된다.¹³

이런 관점에서 조선은 시대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양인식과 해양정책이 변화되었으며, 해금정책을 통해 대내적으로 안정적인 통치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대중국관계에서 변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조선에서 인식한 해양개념과 해양정책의 일환으로 대내외적으로 핵심정책이었던 해금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조선이 인식한 해양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해양인식의 연장선으로 해양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해양정책의 핵심내용이었던 해금정책이 조선의 국경(강계)과 연결되는 성격을 조중관계 중심으로 정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해양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성과로 역할하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해양과 국경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리이기 때문에 해양연구의 한 시론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II. 조선시대 해양의 의미와 범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왕실중심의 유교국가로써 통치질서를 지향했다. 전통적인 유학에서 지향한 사회구성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체제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은 안정적으로 통치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중농주의를 채택하고 상업과 수산업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만을 인정했다. 이러한 유교국가 조선의 지향점은 자치 해양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정책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조선의 해양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해금정책의 시행은 이미 일찍부터 시행되었다.¹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때, 대륙과 해양이란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조선이 위치한 공간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공간으로 평가한다.¹⁵ 이에 대해 근대 개항기 이전까지 실질적인 해양세력으로 일본이나 기타 세력을 규정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과도하게 분석해 보자면 일본은 해양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적합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해양세력은 해양을 활용하는 선박을 통해 해양을 장악함으로써 제해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의문이 든다. 왜구의 침략이 왕성하였던 14세기말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왜구는 제해권을 장악했다기 보다는 육지에 상륙하여 기동성 있게 지역을 침탈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즉, 해양활동보다 내지에서 침략하는 경향이 많았다. 임진전쟁시기 일본 수군은 결코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지상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며 평안도까지 진격하기도 했다. 반면에 해전에 있어 조선수군에 의해 연전연패하였다. 단순히 병력과 인원의 이동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했다고 하여 해양세력이라 규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이 인식한 해양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필요하다. 현대에 해양은 바다라는 개념과 달리 대륙간의 넓은 수역(水域)이자 큰 바다 즉, 대양(大洋)을 의미한다. 큰 바다가기에 해양은 연해와 대립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인식한 해양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해양은 조류(潮流), 도서(島嶼), 해로(海路), 수로(水路) 등 자연요소, 국제질서, 사행(使行), 해방(海防), 수군(水軍), 교역, 조운(漕運), 어업, 표류민 등 지정학적 요소로 구성된다.¹⁶ 이러한 구성요소는 해양의 발전에 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해양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¹⁷ 이 가운데 조선은 해양을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했다. 수시로 변화하는 대륙정세에 따라 조선이 대중국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행로(使行路)는 해로사행이었다. 대륙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은 원명교체, 명칭교체와 같이 조선의 안보에 매우 위기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은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관계에 집착했다.

이들 해양의 요소 가운데 자연요소는 해양개발 및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요소이자 발전요소로 작용한다. 조류에 의해 항로와 해양활동은 제한되며, 도서, 해로, 수로에 의해 해양개발과 활동은 발전하게 된다. 또한, 지정학적 요소는 해양활동에 제한 및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능한다.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양은 교류와 교역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활발한 해양 활동이 전개된다. 반면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거나 갈등양상으로 진행되면 해양은 그 갈등의 공간이 되거나 해방과 관련되어 해양공간의 활용이 제한된다. 교역, 조운, 어업 등의 요소는 해당 국가의 국가통치 지향점에 영향을 받아 해양공간에서 그 활동이 제한되거나 발전된다. 그러나 교역, 조운, 어업 등은 국가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보완하며, 건전한 국가경영이 가능했다. 표류민은 다른 지정학적 요소와 달리 상대적(常時的)인 요소는 아니지만, 자연요소에 의해 발생했다. 다만 국가의 입장에서 주변국과의 원만한 대외

10.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11. 임영정,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31, 1997.

12. 한임선, 신명호, 「조선후기 海洋境界와 海禁」, 『동북아문화연구』21, 2009; 戴琳劍, 「조선후기 정부의 海洋認識에 나타난 防禦의 성격 - 漂流民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32, 2019.

13. 한문중, 「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14. 임영정, 「조선시대 해금정책의 추이와 울릉도·독도」, 『독도영유역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1997, 11~21쪽.

15.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출판사, 2013. 51~68쪽. 저자는 반도사관이 일제에 의해 정립되어 한국사의 '공간', '주체', '시간'의 왜곡을 가져오고 '민족국가의 생성'과 '민족문화 생성', '세계관'의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본 글은 해양사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해양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정리함에 중점이 있다.

16.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188~189쪽.

17. 김재근, 『朝鮮王朝 軍船研究』, 한국문화연구소, 1977; 『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84;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출판부, 1989; 『한국의 배』, 서울대출판부, 1994; 이원식, 『한국의 배』, 大風社, 1990; 최완기, 『한국의 전통 선박 한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김성준, 『한국항해선박사』, 문헌, 2014.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표류민 송환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이 경험하는 대중국 해로사행은 조선의 연근해 항로와 달리 서해를 횡단하는 경로로 많은 위험부담이 있었으며, 실제 해로사행 과정에서 인명과 물질의 피해가 많았다. 이에 조선이 선택한 최적의 해로사행로는 한반도의 북서쪽에서 일부 도서를 연결하는 항로로 중국의 산둥반도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이는 각종 경험에서 축적된 조류, 물살, 식량과 식수의 조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선택이었다.¹⁸ 즉, 조선은 해로사행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연근해에 한정된 항로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한정된 항로는 해양을 육지와 근접되고 도서로 연결된 바다로 인식하게 하였다. 항로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상교통이란 측면에서 조선은 해로와 수로를 유사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먼 바다가 아닌 연근해, 내륙수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¹⁹

그럼 조선이 해양을 인식함에 있어 해양의 요소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에 세부적으로 조선이 보유한 해양요소는 어떠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조선의 해양인식에 국제질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질서가 불안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육로로 침입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대응을 준비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양을 통한 침입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반면에 왜구의 준동과 같은 해양을 통한 침입세력이 있다면 해양력을 확보하여 해양에서 이를 제거하고 방어한다는 개념보다는 섬과 연해지역을 보다 방어중심으로 하고자 했다. 이런 측면은 조선이 해방(海防)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²⁰

그러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이후 고려와 조선은 왜구에 대응하며, 명의 해금정책에 영향을 받아 화포를 개선하고 수군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통신사파견 등 대일본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15세기 중반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가 확립되면서 조선은 명의 해금정책과 여진·일본과의 관계에 제약을 받아 해양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구의 동양진출과 교역은 동아시아의 해양환경을 변화시켰으며, 서구와 교역을 통해 조총 등 무기체계를 갖춘 일본은 임진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수군력을 강화하고 강경한 대일본정책을 펼쳤다.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 사료에서 확인되는 해양(海洋)은 주로 이양선, 왜선, 황당선 등 주변국의 선박이 출몰하는 상황을 지방관이 급보로 조정에 보고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사례로, 1419년(세종 1년) 7월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이는 왜구 수십 척이 소청도 해양에 출몰한다고 황해도 감사가 급보하자, 태종은 황해도 감사에게 방비를 엄하게 하고, 연해 요로(要路)에 병선 20척씩을 예비하도록 지시했다.²¹ 3년 뒤, 1422년(세종 4) 8월에 왜구의 선박

이 흑산도 주변에 나타나자 전라도안무처치사(全羅道都安撫處置使) 조치(趙菑)가 진무(鎭撫) 김득명(金得明)과 박현우(朴賢祐)를 보내어 왜선(倭船) 한 척을 잡아 12명의 왜구를 죽이고, 나머지 왜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확보한 왜선에는 포로로 잡혔던 조선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조선인 포로를 확인하여 남녀 9명을 구출했다. 이때 조치는 왜구선박을 흑산해양(黑山海洋)에서 잡았다고 장계하였다.²² 즉, 흑산도 연안의 바다라는 의미로 흑산해양이란 표현을 했던 것이다. 이때 해양은 해양이란 광의의 의미보다 바닷가 내지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바다에 이들 주변국의 선박이 관측됨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눈으로 확인되는 먼 바다라는 범위를 가진 공간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눈으로 확인되는 먼 바다라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연안의 섬들을 넘어서는 멀고 큰 바다라는 의미로 해양을 표현한 사례도 있다. 1440년(세종 22) 5월에 경상도 관찰사가 삼포(三浦)의 금망조건을 보고했다.²³ 삼포에 출입하는 일본선박이 삼포뿐만 아니라 인근 섬에 머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포 인근의 섬과 멀리 떨어진 큰 바다까지 조선의 병선이 감시하여 내보낼 것을 규정했다. 즉, 해양이 현재의 해양이란 공간적 개념과 일치할 정도로 먼 바다, 큰 바다로 사용된 사례이다.

바다라는 의미로 함부로 바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으로 조선에서 법제로 규정한 것은 “위금하해(違禁下海)”이다. ‘바다로 나아가다,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해하다’의 의미는 ‘하해(下海)’이다. 조선의 법제에서 형률의 전범으로 적용된 『대명률』에 따르면, 병진(兵律)의 관진(關津)에 관련된 조항으로 “私出外境及違禁下海”조항이 있다.²⁴ 사사로이 국경이나 경계를 함부로 벗어나거나 해금의 범규를 어겨 바다로 나아간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이 병률로 분류된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요 관진(關津)을 파수하는 군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였기 때문이었다.

경제·사회적으로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해양활동은 어업활동이었다. 조선어선이 조선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와 통제는 조선정부의 정책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일본어선의 조선해역에서 어업활동이었다. 조선의 어업정책은 대부분 조·일간 어업분쟁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은 조어금약(釣魚禁約)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18.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189쪽.

19. 한정훈, 『조선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20.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인식과 해방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87, 2018, 261쪽.

21. 『세종실록』권4, 세종 1년 7월 5일(무신). “黃海道監司飛報, 倭寇之還自中國者, 約數十艘, 今月初三日, 出沒於小靑島海洋. 上王乃遣鎮撫李養性, 諭柳廷顯申嚴備禦, 又令沿海要路, 各備兵船二十艘以待變.”

22. 『세종실록』권17, 세종 4년 8월 16일(경자). “全羅道都按撫處置使趙菑遣鎮撫金得明朴賢祐, 捕獲船一隻於黑山海洋, 斬首十二級, 餘皆溺死, 奪被虜男婦九名. 遣賢祐來獻捷, 賜賢祐衣, 仍命兵曹第其軍功以聞.”

23. 『세종실록』권89, 세종 22년 5월 26일(정묘). “一, 倭人謀欲多受口糧, 疊齎書契, 分爲二行, 慮其詐謀敗覆, 乘夜往來. 請自今若有冒夜而來者, 把截船勒留之, 勿令入送. 待翼日考其船之大小及人物之數, 乃令入送. 其本土回還者, 亦依此例. 又毋得淹留諸島, 深入海洋爲限, 使守護船押送, 仍令點閱, 若有關漏者, 窮治之. 且恒居倭人因樵蘇昏夜出入者, 亦皆痛禁.”

24. 『大明律直解』卷15, 兵律, 關津, 私出外境及違禁下海. “凡將馬牛軍需鐵貨銅錢段匹絀絹絲綿 私出外境貨賣及下海者 杖一百, 挑擔馱載之人 減一等, 物貨船車 並入官 於內以十分爲率 三分 付告人充賞. 若將人口軍器出境及下海者絞 因而走泄事情者斬 其拘該官司及守把之人 通同夾帶或知而故縱者 與犯人同罪 失覺察者 減三等 罪止杖一百 軍兵 又減一等. (直解) 凡馬牛軍用鐵物銅錢及段匹 持是旅 地境外良中 私音丁 興利爲旅 下海買賣爲在乙良 杖一百齊 負持人及牛馬牽持人乙良 減一等 遺 錢物及船馬等乙良 並只 沒官爲乎矣 其內十分爲限 三分乙良 進告人亦中賞給齊 人物軍器等乙 如前放賣爲在乙良 絞死齊 因此 軍事乙 漏通爲在乙良 斬齊 所在官司及防禦人等亦 同情爲旅 知而故放爲在乙良 犯人以罪同遣 遲晚覺察爲在乙良 減三等 罪止杖一百齊 軍人乙良 又減一等.”

강력하게 단속과 징벌을 행사하여 해양권을 강화하고자 했다.²⁵ 남해안에 들어와 어업활동하는 일본(주로 대마도)은 호남권까지 어업지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명과 청은 서해안에서 광범위하게 조선의 어업활동에 피해를 주었다. 조선은 조·일 어업분쟁에 강력하게 대응한 반면, 명·청의 불법 어업활동은 대명·청관계를 고려하여 민감하게 대응했다.²⁶

한편, 왜구의 노략질과 서구세력의 진출이란 외부환경 변화, 전통 농업중심의 지배사상과 경제구조로 동아시아 삼국은 해양활동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해금(海禁)정책을 시행하였다.²⁷ 해금정책은 해양활동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지만, 조선과 명·청의 해양환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명·청은 해양을 통한 생산이 없더라도 운영이 원활한 사회·경제여건이었으며, 오히려 해양세력의 침입이 없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해로를 통한 조운(漕運), 광범위한 도서(島嶼)개발과 어업활동을 통한 생산 등이 국가운영에 매우 유용했다. 즉, 해금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도 점증하는 해양환경과 해양활동의 전면적 제약이 불가능했다. 조선은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제한되지만, 포괄적인 노력을 했다.

한편, 해금과 상관없이 조선을 포함한 한중일은 표류민 구호와 송환에 적극적이었다. 표류는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자국의 정보가 타국에 유출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삼국은 표류민 송환시 정보유출을 가장 고민했다. 조선은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사대관계와 교린관계를 이중적으로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일관계가 명·청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해양요소 가운데 도서(島嶼)는 해양에 속하면서 육지와 다른 자연환경으로 마정(馬政)이 강조되었다. 마정은 중요 군국사무(軍國事務)였기 때문에 조선이 중시하였으며, 명·청의 말교역 요구 때문에 도서(島嶼)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도서(島嶼)는 조운체계에서 중요한 수로에 위치하였다. 조선은 수시로 발생하는 조운의 파손이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자 관련사항을 국법체계에 명시하였다.²⁸ 명·청의 조운과 달리 조선의 조운은 내륙수로부터 해로 중심이었다.²⁹ 조운은 수군력과 연관된다.³⁰ 조선은 조운보호의 해양인식으로 수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건국초기부터 조선은 왜구방어를 위해 수군력을 강화하고 체제정비를 지속했다.³¹

25. 한문중, 「조선전기 조일간 어업분쟁과 해양권의 강화」,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26. 王賽時, 『山東沿海開發史』, 齊魯書社, 2005; 남이슬, 「강희연간 청국인의 해양범월과 조·청 양국의 대응」, 『명청사연구』44, 2015.

27. 임영정,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31, 1997;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한임선, 신명호, 「조선 후기 해양경계(海洋境界)와 해금(海禁)」, 『동북아 문화연구』21, 2009; 최낙민, 「명의 해금정책과 천주인의 해상활동 - 가 정연간 이후 해구활동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78, 2011;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28. 최완기, 「조운과 조창」, 『신편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2.

29. 조영현, 「명 후기 短命으로 끝난 漕糧의 海運과 그 의미」, 『역사교육』100, 2006.

30. 김용곤, 「조선전기 조운-조운과 관련하여-」, 『명지사학』 창간호, 1983.

31.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 軍役關係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5, 1970; 김재근, 「朝鮮王朝의 水軍」, 『군사』1, 1980; 나종우,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한일관계사연구』10, 1999; 이민웅, 『임진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조선시대 소극적인 해양역사를 중앙정부의 권력집중화 정책의 소산,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실현, 외세의존적인 성격,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조선의 지정학적 정책, 동아시아 세계의 비개방적인 체계 등에서 찾는 주장도 있다.³² 이러한 주장은 한국사를 해양사의 측면에서 정리한 결과이기에 일면 동의하는 점도 있지만, 적지 않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고대에 해양활동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선박기술이 발달한 후대에 상대적으로 해양활동이 축소되었음은 시대상황 및 국가정책과 관련된다. 조선은 정치제도와 국가체제가 보다 정밀하고 국가통치이념이 발달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정착되었다.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가 본격화된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계를 지향했다. 조선시대 해양자원의 개발, 해로의 확장, 해방의 강화 등 해양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의견과 구상이 국가차원에서 정책화되었는가 여부이다. 물론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개인문집에 제시되어 다수의 사대부 지식인층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해양인식을 분석함에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인식한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³³

조선은 명·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대중국관계를 최우선시 하여 대외관계를 맺고, 원활한 조일관계의 전개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 해양환경과 해양요소는 조선의 대외관계 및 국내통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시대별로 명 중심 국제질서와 청 중심 국제질서로 구분하여 다양한 해양요소와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적 의미의 대양을 의미하는 해양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정책은 무엇보다 해양으로 운항할 수 있는 거대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조선술의 발달과 항해에 필요한 항법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선과 가장 인접하였던 동아시아 중심국가 중국의 경우, 강남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한 거대한 선박 건조를 통해 해금정책에도 불구하고 명 영락연간 정화의 원정이 가능했다. 또한, 해양항해에 필수적이었던 선박의 항행 기준이 되는 나침반이 있어서 가능했다.³⁴ 이에 비하여 조선은 선박제조술 및 나침반의 운용에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명과 청이 일본을 향해 항해한다면 전통적인 한반도를 통한 일본으로 가는 항해노정과 달리 강남에서 일본의 규슈지역으로 간다면 반드시 거대한 선박으로 나침반을 활용한 항해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조선은 해상을 통한 대외진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박으로 연근해를 항해할 경우 주변의 섬들을 활용하고 별다른 항해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조선은 원거리 항해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동중국해와 같은 큰 바다를 가로 질러 외국으로 항해하는 기회가 없었다.

32. 현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출판사, 2013. 41~43쪽.

33. 이러한 분석에 대해 조선시대 해양정책의 역사적 실체와 달리 현재 역사학계의 미진한 연구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현재 한국학계에서 해양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본 글의 대상시기인 조선시대 해양 인식 및 해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34. 이준태, 「중국의 전통적 해양인식과 해금정책의 의미」, 『아태연구』,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2010. 243~244쪽.

Ⅲ. 조선의 해양인식과 통치정책

이상과 같은 해양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조선은 이런 해양의 여러 요소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인식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자연요소 및 지정학적 요소 등 해양의 제 요소를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해양정책화했다.³⁵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변동에 주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육로를 변경으로 상정하고, 국방정책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선의 해양정책으로 해금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조선초기, 임진 및 명청교체기, 조선후기, 개항기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먼저 건국시기를 포함한 조선초기는 여말선초의 국제정세가 강력하게 조선의 해양인식 및 해금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시기이다. 조선의 국방정책 가운데 해양정책은 육로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한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수립되었다. 육로에 적용되는 국방정책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해양정책은 대중국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즉, 안정적인 대중국관계를 통해 조선의 안보를 강화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해양정책에도 적용한 것으로 명대 북노남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명 강남지역을 침범하던 왜구에 대해 해금정책을 강화했듯이 조선도 해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조선은 초기부터 왜구의 침구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해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수군력을 강화하여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해양자원의 개발과 항로의 정비 등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³⁶ 이러한 해방정책은 조선이 왕조개창이후 유학을 중심으로 중농주의 사회를 지향하였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³⁷

해양은 조선의 입장에서 해양자원의 생산을 통한 국가의 재원을 확대하는 공간보다는 인접국과 해양으로 통하는 지정학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해양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 점은 고려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왜구의 준동 때문이었다. 왜구의 준동은 조선의 입장에서 해양을 통해 침범하는 해양세력이라 인식되었으며, 국가통치 차원에서 군사적인 해방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1421년(세종 3) 조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왜구의 침범을 대비하여 대규모 병선을 동원하여 왜구의 본거지를 공략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에서 해방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해방정책은 대마도와 근접한 경상좌도에 집중되었다.³⁸ 당시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척치사가 올린 장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대마도 왜구는 잠시 복속하였다가 또 반역하기를 거듭

하여 통제가 어려웠다. 이에 경비를 강화할 것을 지방군사지휘관이 건의한 것이다. 처치사의 관할 12포구에 있는 병선은 각각 3~6척으로 왜구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륙(水陸)의 멀고 가까운 요해처를 분간하여, 여러 포구의 병선을 모아서 즉시로 변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을 통한 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보다는 해방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었다.

조선의 수군력에 대한 편제의도와 구성은 『경국대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전국의 병선규모를 규정하고, 병선도 구체적으로 수군 80명이 탑승하는 대맹선(大猛船), 수군 60명이 탑승하는 중맹선(中猛船), 수군 30명이 탑승하는 소맹선(小猛船)으로 구분하고, 수군은 탑승하지 않더라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도 건조하여 배치했다.³⁹ 조선의 수군은 선박을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으로 부르며, 군용선(軍用船)을 의미했다. 세종대에는 조선수군이 보유한 선박은 13종 829척이었다.

조선은 해양을 통해 인접한 국가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이들로 인한 갈등상황을 통제하고자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초기에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이다.⁴⁰ 『해동제국기』에 제시된 일본은 조선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류하여 군사적 갈등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조선과 일본의 수호(修好) 및 통문(通問)을 통해 교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선의 대일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해동제국기』에 서술된 일본의 여러 국가의 조빙(朝聘)·왕래(往來)·관곡(館穀)·예접(禮接)에 대한 구례(舊例)를 찬술한 점에서 확인된다.⁴¹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반영된 대일관계는 일정부분 조선의 해양영역을 개방하여 일본군이 교역과 어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삼포금약(三浦禁約)이었다. 위와 같이 개방하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특히 인적구성이 확대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다. 세종대 60명 수준에서 점차 확대되어 세조대에는 내이포(乃而浦, 300호, 1,200여 명), 부산포(釜山浦, 110호, 330여 명), 염포(鹽浦, 36호, 120여 명) 수준이었다. 조선이 특히 경계한 사항은 조선의 영역에 거류하는 일본인은 잠재적으로 일본의 조선진출 전초기지가 된다는 점이었다.⁴²

한편, 조선의 해방정책이 단순히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여 해양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방점을 두었다. 13

35.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146, 2018.

36. 임영성,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31, 1997.

37.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191~192쪽.

38. 『세종실록』권11, 세종 3년 2월 23일(병진).

39. 『경국대전』 병전, 土官職, 諸道兵船.

40. 『海東諸國記』, 序.

41. 『海東諸國記』, 朝聘應接紀. 『해동제국기』의 朝聘應接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使船定數, 諸使定例, 使船大小船夫定額, 給圖書, 諸使迎送, 三浦熟供, 三浦分泊, 上京人數, 三浦宴, 路宴, 京中迎饗宴, 畫奉杯, 京中日供, 關內宴, 禮曹宴, 名日宴, 下程, 例賜, 別賜, 留浦日限, 修船給糧, 日本船鐵釘體制, 上京道路, 過海料, 給料, 諸道宴儀, 禮曹宴儀 등 사항관련 규정 이외에 '三浦禁約', '釣魚禁約'을 명시되어 있다.

42. 『海東諸國記』, 朝聘應接紀, 三浦禁約.

세기 몽골과 남송이 충돌하였던 상황에서 남송은 일본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대응하고자 했다. 이에 제주도는 그 핵심지역이었다. 이후 원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자 몽골은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루가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시대 제주도는 일본과 명의 해양교류의 중간 기착지로 중시되기도 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은 북진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에서 제주도의 중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양의 조류흐름에 있어 제주도는 주요 표류기착지가 되기도 했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왕위의 권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조명관계에 적극적이었다. 홍무연간이후 지속적으로 봉전(封典)을 통해 조선을 압박했던 명은 요동문제와 여진족의 관할권 문제로 조선과 갈등했다. 이 과정에 일본정세의 변화로 인해 왜구가 명과 조선에 침구하면서 조선은 안정적인 조명관계를 위해 대마도정벌 등 군사정책을 시행했다.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해서 조선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서 확인되듯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했다. 해양교류와 교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해양정책의 일환으로 어업정책과 거류정책을 시행했다. 조선의 해양인식은 가장 큰 도서(島嶼)이자 마정의 주 대상지였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위해 제주도는 새로운 해양으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라 소극적인 표류 등 해양세력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임진전쟁 및 명청교체기의 조선은 해금정책의 강화라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전쟁을 경험하며 수군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통상적으로 육로를 이용하던 사행로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해로사행이란 별도의 해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해로사행은 조선의 대명관계, 대청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조선은 해로사행을 통해 외교사건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해금정책은 해방정책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은 해방정책에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동쪽과 남쪽은 일본과 연결되고, 남쪽과 서쪽으로 중국의 오(吳), 월(越), 연(燕), 제(齊)지역과 연결되기에 해방을 설치하였다.⁴³ 이들 조선의 해방정책은 수군전력에 의해 운용되었는데, 임진전쟁을 경과하며 통제영을 설치하는 등 수군력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이후 조선의 수군은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 경기수영(京畿水營), 방어영(防禦營),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 경상우수영(慶尙右水營),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 공충수영(公忠水營),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 황해도수영(黃海道水營), 평안도방어영(平安道防禦營) 등의 주요 편제에 의해 구성되었다.

해방정책은 군사목적이 물론 우선적이었지만, 마정(馬政), 조운, 어채, 향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경제적 기능도 함께 수행했다. 마정의 경우, 말목장 경영에 필요한 방대한 지역과 마정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마정의 국가기관이 설치되었다. 마정은 해당

지역의 수취제도와 연계되어 국가재정운영에 의해 실시되었다. 즉, 마정, 조운, 어채, 향로 등 해방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기능과 함께 사회경제적 기능을 창출하고, 특정 지역의 독특한 문화현상을 전승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마정지역이었던 제주도는 조선의 해방, 해금, 마정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었다.⁴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제주도는 말사육에 최적이었기에 일찍부터 마정의 중심지였다.⁴⁵ 또한 마정은 조선에 있어 국내 통치정책의 측면과 함께 말무역을 통해 대외관계에도 연결된다.⁴⁶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된 시기에는 군마수요가 증대되면서 마정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⁴⁷ 제주도를 사례로 들면, 섬이란 해양환경과 해양요소로 인해 조선의 마정에 있어 핵심지역이었다.

한편, 조선에서 해양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해양을 통한 진출보다 해양을 통해 침범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는 해방정책이 보다 일반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조선에서 해방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는 선조대 임진전쟁의 경험 이후였다. 임진전쟁으로 일본군이 조선전역을 침범하자 조선은 기존의 왜구방비라는 지역적 해방개념에서 수군력을 강화하여 해상에서 일본군을 제압하는 전역적 해방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선조 말기에 해방은 가장 중요한 해양정책이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부세제도 및 군역제도를 해방정책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일례로 1602년(선조 35) 조선은 해방정책으로 군역과 부세의 부담이 많았던 남해 변경에 공물 면제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라도 주사(舟師)의 소속 24개 고을 가운데 무장(茂長),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영암(靈岩), 해남(海南), 진도(珍島), 강진(康津), 장흥(長興), 흥양(興陽), 보성(寶城), 낙안(樂安), 순천(順天) 등 13개 고을은 관상감, 군기시, 사재감, 장흥고(長興庫) 등 4사(司)의 공물을 면제하고 오로지 해방(海防)에 전념하도록 하기도 했다.⁴⁸

조선의 해양정책에서 핵심은 군사적으로 해방정책이었다. 해방정책은 지역적인 구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군력의 강화에 있었다. 조선은 수군력 증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러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해양정책은 수군력 증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은 왜구 등 해양세력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을 적극적으로 양성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지상군과 수군으로 군종을 편제한 조선은 구체적으로 수군의 편제와 무기체제로 전선을 건조하여 수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⁴⁹

선박의 항해거리는 선박의 구조 및 조류 등에 영향을 받지만, 조선의 병선(兵船)에 신도록 규정된 군량규정을 통해 조선시대 병선의 해양활동 기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병

43. 『만기요람』 군정편4, 海防.

44. 『태종실록』권16, 태종 8년 12월 戊戌.

45. 小林仁, 2017, 「中國出土の高麗青磁」, 『中近世陶磁器の考古學』 第6卷.

46. 『태종실록』권13, 태종 7년 1월 갑술; 권23, 12년 2월 신유; 권29, 15년 1월 경신; 『조선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9월 병인.

47.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戰術체계와 제주戰馬」, 『군사』93, 2014.

48. 『선조실록』권146, 선조 35년 2월 20일(계미).

49. 이민웅, 『임진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32~46쪽.

선은 항상 1개월분의 군량을 신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물론 해양활동의 필요에 따라 신는 군량이 조절되었지만, 기본적으로 1개월 해양활동기간을 상정했던 것이다.⁵⁰ 각 군진(軍鎭)에 배치된 병선은 그 자체로 해양활동 과정에서 성보(城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는 군량규정이 정해졌는데, 연근해 해양활동을 전제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초기에 조선수군이 보유한 전선은 대선(大船), 중대선(中大船), 중선(中船), 병선(兵船), 쾌선(快船), 맹선(孟船), 중맹선(中孟船), 별선(別船), 무군선(無軍船), 추왜별맹선(追倭別猛船), 왜별선(倭別船) 등 다양하였으며, 이들 전선은 해양에서 장기간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도 했다.

또한, 수군의 전선을 해상작전에 유용하며, 평시에 조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갑판을 평평하고 넓게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전선개선작업은 신속주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병조선(兵漕船)이 만들어졌다.⁵¹ 이와 같이 전선의 개선작업 뿐만 아니라 수상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선의 노후화 및 파손에 대한 수리기술도 전승되었다.⁵² 전선의 수리는 해방정책 차원에서 법제화되었다.⁵³ 결론적으로 조선은 해양을 통한 대외적인 진출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해양을 통해 침범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해방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해방정책을 수행할 수군력을 강화하고, 전선의 건조 및 배치, 전선의 수리 등이 법제화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조선후기의 해양정책 및 해금정책은 자연스럽게 국제정세보다 안정적인 통치체제의 구축에 방점이 두어졌다. 임진전쟁이후 현저히 발생빈도가 줄어든 왜구 및 일본선박에 의한 피해감소를 계기로 조선은 수시로 출몰하는 황당선과 이양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해양경계의 침범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청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활용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개항기는 조선이 공식적으로 해양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시기이다. 이때 조선이 개방한 해양유입세력은 정식으로 조선과 국교를 맺은 세력이자 규정에 의거하여 허락된 선박과 인원에 한정된 개념이었다. 이 범주에 벗어난 불법세력 및 군사세력에 대해 조선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방정책을 강화하여 대응했다. 개항기의 초기는 조선의 강력한 해방정책이 쇄국정책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양선에 대한 경계가 높았다. 이는 평양 및 강화도에 진입하는 미국, 프랑스세력과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정도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후고를 기약한다.

IV. 조선의 범월(犯越)과 해금정책의 강화

명청교체의 국제적변기에 조선은 더욱 해양 및 해금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 위험요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해금은 조선의 법제이면서 명, 청의 법제였기 때문에 조선의 대외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일례로 명청교체가 명은 조선에 선척의 무역에 대해 각종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조선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명에 자문을 보내 해금을 근거로 선척의 검사 및 가격결정에 대해 명의 요구를 거부했다. 황 감군이 요구한 선척과 관련하여 해금과 격군에 관한 말은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비변사의 계문에 대해 인조는 승인했다.⁵⁴

조선은 서해를 통해 수시로 출몰하는 황당선(荒唐船)을 엄격하게 대응하여 나포(拿捕)하고 주의하여 감시했다. 이는 왕명으로 하달되어 연해 각도에 신칙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의 황당선에 대한 해금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선박의 속도가 달라 조선의 관선(官船)이 추격하여 나포하기도 어렵고, 나포과정에서 상호간 무력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추가하여 전체 해안에 대해 완벽하게 황당선을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해금정책의 실효를 거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과 청이 해금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청에서 황당선의 출발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즉, 해금정책을 외교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은 청에 해금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일례로 1712년(숙종 38) 숙종은 청에 황당선 출몰에 따른 해금의 어려움과 청의 해금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자문(咨文)을 전달했다. 자문에서 숙종은 조선이 해서지방의 연해에 출몰하는 황당선을 엄격히 대응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청이 해금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선이 청에 해금의 강화를 요구한 것은 여러 차례가 있었다. 1710년(숙종 36) 조선에서 해금강화를 요구하자 청은 봉천부(奉天府)에 공문을 보내어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엄중 금지시키고, 어채(漁採)의 금령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채와 황당선 출몰이 이어지자 결국 1712년에 다시 해금정책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해금의 내용에 조선인의 외부 출항도 금지되었지만, 외부인의 조선 연안 출몰도 주로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숙종이 청에 전달한 자문에 황당선에 대한 나포, 추급(追及)의 어려움과 나포상황에서 충돌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청이 해금을 강화하면 조선의 국경과 해양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있다.⁵⁵ 이는 조선후기 해양을 국경개념으로 인식하고 바다를 통한 국경수호와 통제가 내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대전회통』권2 호진, 兵船載糧.

51. 『宣和奉使高麗圖經』卷37 舟楫 乃若麗人, 生長海外, 動涉鯨波, 固宜以舟楫爲先.

52. 『경국대전』兵典, 兵船.

53. 『대전회통』권6 工典, 舟車.

54. 『승정원일기』인조 13년 1월 16일(정묘).

55. 『비변사등록』64책, 숙종 38년 6월 15일. “莫如自彼國申嚴海禁, 俾不得往來於我國境海洋之爲便”.

이와 같이 해양과 국경개념의 동일시 경향은 전통적인 국경인식의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조선에 있어 국경은 상대국과의 대외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해양문제는 바로 국경 문제이자 외교문제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개념에서 명, 청은 대국(大國)으로 주변국에 대해 변경을 엄히 단속하여 황제가 정한 변경을 함부로 범월하지 못하도록 금단하는 역할이 있었다. 이에 조선도 봉전을 받으면 동일하게 이를 준수하여 변경을 단속하여 명, 청으로 월경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조중관계에서 변경을 엄히 할 의무는 정조가 어명으로 편찬하였던 『동문회고』에 강계, 범월, 범금, 표민 등 외교사안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⁶

조선의 해양인식은 대중국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조선의 입장에서 바다와 육지로 연결되어 늘 군사적, 정치적 위협 대상이었던 중국의 역대 왕조는 국가안위에 최대 위협요소이자 왕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황실이었다. 즉, 조선은 명, 청과의 국경을 접하며 변강(邊疆)을 중시하였다. 결코 조선의 대명, 대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간에 인식하는 변강을 엄하게 준수해야 했다. 문제는 변강이 육지에 한정되지 않고 바다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간 변강문제는 육로를 통한 문제와 해로를 통한 문제가 존재했다.

육로는 조선인과 명인(明人), 청인(淸人)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강(渡江)하여 범월(犯越)할 수 있었지만, 해로는 선박을 통해 육로보다 더 긴 시간을 소요하여 강계(疆界)를 벗어나 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국가입장에서 육로는 주요 길목마다 관(關)과 진(鎭)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강계를 벗어나는 범월을 방지할 수 있지만, 바다는 고정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단이 적절하지 못했다. 원활하고 정기적인 순찰도 어려웠으며, 섬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시가 있더라도 즉각적인 통제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범월은 국경개념과 연결된 문제이면서 해양분야는 범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통제가 불가능했다.

해양과 연계된 범월을 국가차원에서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 해금정책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해금정책은 해양을 통한 범월을 방지하는 부분 이외에 다양한 해양개발 제한, 항로 통제, 도서정책, 말목장, 공납문제, 군사적 분야 등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 범월과 연관된 해금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조선인의 해양을 통한 불법행위, 외부인의 해양을 통한 출몰과 교역 내지 약탈, 조선과 외국인의 표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의 해양인식과 연계된 해금정책을 범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은 국경을 넘어 어채와 채삼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청에 요구하였다.⁵⁷ 이때 주목되는 것은 조선과 청의 국경은 산이나 들이 아니라 강과 바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강을 넘어오는 선박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점이다. 즉, 조선에서 변강을 넘어가는 것이 모두 선박을

통한 범월이었기 때문에 결국 해금으로 연결되었다.

1714년(숙종 40) 황해도관찰사 윤세수(尹世綏)는 서해안에 출몰하는 이양선이 여러 척 무리를 지어 연변의 해상에서 함부로 어채하여 봄에서 여름까지 지속됨을 숙종에게 보고하고, 통제와 추적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숙종은 청 강희제에게 해금의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奏文)을 제출했다. 실제 조선에서 해금의 강화를 요구하면 청은 통상적으로 함부로 조선의 해상에서 어채한 범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해당지역의 순무(巡撫)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다. 당시 숙종의 주문에는 이러한 해양으로 출몰하는 이양선에 대한 해금과 함께 초산군수(楚山郡守) 신명식(申命式)이 올린 첩보(牒報)에 의거 평안도관찰사 민진원(閔鎭遠)이 장계를 올려 보고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즉, 초산지역에 청인(淸人)이 야밤에 범월하여 파수(把守)보던 조선군을 협박하여 염장(鹽醬)을 토색(討索)하고 잡아가두는 사건이다. 당시 청인들은 무리를 지어 수시로 범월하여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며 초창간에 분쟁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이들의 활동기간이 며칠의 단기간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까지와 같이 계절을 넘어서는 장기간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막사를 짓고 둔취(屯聚)하여 오래도록 머물면서 물자를 교환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변민(邊民)과 몰래 서로 왕래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숙종은 강희제에게 청인의 변강(邊疆) 침범과 범월을 엄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숙종 40년을 전후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육로로 범월, 해양으로 해금의 어김이 존재하여 조선은 청과 공동으로 이를 단속하고자 했으며, 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국경의 준엄함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조선이 육로의 국경뿐만 아니라 해양의 해금을 통해 국경개념을 제고하고, 이를 함부로 넘어서는 범월을 경계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범월은 자연스럽게 조선에 있어 해금정책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1788년(정조 12) 3월, 동지정사(冬至正使) 유언호(兪彦鎬), 부사 조환(趙煥)은 귀국하며 압록강을 건너자 사행결과를 정조에게 치계했다. 당시 조청관계에서 침예하게 대립하던 후시(後市)의 세액(稅額)에 대한 활동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청의 정세를 첨가하여 장계했다.⁵⁸ 후시는 조선에게 있어 변강에 설치된 교역장이자 사행을 통한 공식적인 통로였다. 조선시대 대외 교역은 조선의 공식적인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무의의 모두 잠행(潛行), 사교(私交)로 불법이었다. 이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정치, 통치의 위엄이 무너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사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경제문제를 넘어 외교문제이자 조선국왕이 명, 청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봉전에서 강조하였던 변강을 준수한다는 점을 위반하는 사안이었다.

유언호의 장계에는 후시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만에 대한 상세한

56.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2, 2005. 200~201쪽.

57. 『동문회고』 원편, 권61, 犯越13, 上國人, (甲午)講禁斷漁採船奏.

58.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3월 13일(을해).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각지에 흉년이 들어 각 성(省)의 실업민(失業民)이 서로 모여 도적이 되어 사회질서를 위협했다. 그 가운데 유언호는 대만에 주목했다. 도적 가운데 대만의 임상문(林爽文)은 군사가 많고 세력이 커서 가장 제압하기 어렵다고 청에서 고민하였던 대상이었다. 건륭제는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겨우 제압했다. 당시 최고의 군사지휘관이었던 아계(阿桂) 등을 파견함으로써 임상문을 생포하여 복귀할 수 있었다.

대만에 대한 사신의 보고는 이미 정조 초반부터 집중되었다. 1783년 동지겸사은정사 정존겸(鄭存謙)과 부사 홍양호(洪良浩)가 긴급하게 정조에게 『사고전서(四庫全書)』 간행의 일을 보고했다. 북경을 출발하여 귀국하던 도중에 거류하(巨流河)에서 심양에서 운반하던 『사고전서』 운반을 문건하고 한 질이 36,000권, 총목(總目)만 200권의 규모를 보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의 정세를 보고하며, 대만을 집중하여 보고했다. 정존겸은 대만의 총합적인 내용을 정조에게 보고했다. 대만은 광둥성(廣東省) 남쪽 바다 가운데 있어 수로는 매우 멀지만 면적은 매우 넓다고 보고했다. 또한, 명말 청의 판도(版圖)로 들어왔으며, 1644년 이후 요새지에 웅거하여 복종하지 않았는데, 강희 초년에 토벌, 평정되었다. 이에 청은 1부(府) 4현(縣)을 설치하고, 무직(武職)인 수사영(水師營)을 설치한 다음 3년에 한 번씩 2품관 어사를 차출하여 다스리게 했다. 이러한 대만의 대략적인 역사 뿐만 아니라 풍속, 산물, 대만인의 성격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⁵⁹ 당시까지 수시로 반란이 있어 청군의 진압이 지속적이었다는 보고는 유사시 조선으로 해양 유입될 위험성을 고려한 보고였다.

조선은 해양을 변강의 일부분이자 연안으로 인식하면서도 대양으로 확장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해양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해양세력이 조선과 바다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조선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잠재적인 해양유입의 위협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 해양세력 내지 해양국가에 대한 외교정보, 군사정보를 사행을 포함한 표류인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해양으로 경계하고자 했다. 이를 포함한 조선의 해양인식 및 해양정책이 조선시대 해양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 해양을 경유한 교류대상은 일본이 가장 주목되었다. 북방으로 육로를 통한 대외관계는 북방세력의 침입에 대한 방어에 중점이 있었다면, 남방으로 해양을 통한 대외관계는 적극적 교류보다 조일관계에서 각종 유발되는 문제를 통제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이는 임진전쟁 이후 선조와 광해군에 의해 적극 추진된 국교재개를 위한 외교정책에서 확인된다.⁶⁰

해양을 넘어선 외국의 정세에 대한 관심은 이들 국가의 정세변화에 따라 해양으로 조선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사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정세에 대한 외교정보, 군사정보 수집과 파악이 관심사였다. 또한, 조선의 입장에서 가장 근접

한 해양을 경계로 연결된 일본에 대한 정보파악에도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무엇보다 병자호란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일본의 정세보고를 빌미로 조청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유도하고자 했다.⁶¹

무엇보다 병자호란이후 반청의식이 높았던 효종연간에도 조선은 반청의식과 함께 현실적으로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으로 연결된 세력의 정보를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의 야소종문(耶蘇宗門) 문제를 부각시켰던 점에서도 확인된다.⁶² 조선은 의정부, 경상도관찰사, 동래부사 등 해양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의 보고를 근거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이를 청에 전달함으로써 정치, 외교,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⁶³

일본의 정세를 활용한 왜정과 같은 외교사안 이외에 조선은 다양한 해양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자 했다. 조선은 해양과 연결된 주변국 및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유사시 이들 세력이 해양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거나 침입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이 파악한 해양관련 정보는 명의 왕직(王直)세력, 청의 정지룡(鄭芝龍)세력, 마카오, 나가사키, 포르투갈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은 수군의 방어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했다.⁶⁴ 이는 해금정책의 일환이자 이들 세력의 범월에 대한 대비라 할 것이다.

조선의 해금정책에서 어채문제는 조선의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였다. 명, 청의 불법 선박이 조선의 해양공간에 진입하며 이를 강력하게 제지함으로써 조선의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채문제는 조선의 내부적인 단속이 아닌 대외적인 금지사안이란 특징이 있다. 그럼, 왜 대외적인 금지사안인가? 명, 청의 어선이 조선의 해양공간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어채활동을 펼치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해금정책으로 어채문제를 범월사안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청관계에서 조선은 수시로 청에 불법 어채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의 핵심근거로 명, 청으로 부여 인증받은 강역에 함부로 범월하였다는 점을 제시했다.⁶⁵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를 넘어 19세기 근대 개항기로 이어지기도 했다.⁶⁶

조선의 해금정책과 범월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외교사안으로 표류사안이 있다. 조선은 전통적인 명,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안정적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통치권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조명관계, 조청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대중국관

59. 『정조실록』 권15. 정조 7년 3월 24일(을묘).

60.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6월 15일. “莫如自彼國申嚴海禁, 俾不得往來於我國境海洋之爲便”.

61. 김경록, 「17세기 朝·淸관계와 “倭情”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 94, 2015.

62. 손승철, 「17세기 야소종문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응」, 『사학연구』 58-59, 1999.

63. 『동문회고』 原編, 卷78. 倭情, 己丑 陳請築城備倭奏.

64.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2010; 강석화, 「조선 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국문화』 38, 2006.

65.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 48, 2017, 205-206쪽.

66.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 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기후, 바다, 어업분쟁: 1882~1910년 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중국사연구』 63, 2009; 조세현, 「19세기 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역사와 경계』 90, 2014.

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중관계에서 왕래한 각종 외교문서를 정리함으로써 외교관계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 이는 정조대 편찬된 『동문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⁷

『동문회고』는 조선이 대외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교사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25개 외교사안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해양정책 및 해금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표민(漂民)”, “왜정(倭情)”, “사신별단(使臣別單)”, “약조(約條)”, “변금(邊禁)”, “쟁난(爭難)”, “체대(替代)” 등이다. 이들 사안 가운데 특히 표민은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표류한 인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각종 외교문서를 정리했다.⁶⁸

표민은 교류 및 이동의 목적으로 해양이란 공간을 통해 발생한 재난인들이다. 이들에 대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구호하여 해당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표류민정책을 시종일관 시행했다. 물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조중관계와 조일관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 발견된 표류민은 지역별로 구호와 조사작업을 통해 송환의 단계가 시행되었는데, 문제는 이들 표류민이 문견한 바와 각종 외교정보를 습득하여 송환된다는 점에서 표류민정책의 난맥상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철저한 격리를 통한 송환이었다. 이런 경향은 명과 청에 표류한 조선인에 대한 명, 청의 대응도 유사한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조선후기를 사례로 들면, 조선은 표류민에 대해 조선의 정보가 청에 유출되지 않도록 청나라 표류민의 관리를 철저히 했다. 반대로 조선인이 청에 표류하였다가 송환되어 오면 이들을 통해 청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⁶⁹ 이와 같이 조선과 청의 표류민에 대한 각종 정보 파악 및 정보유출 방지노력은 주로 군국업무를 담당하였던 비변사에서 담당하였으며, 지역의 역관들이 활동했다.⁷⁰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해금정책은 범월의 한 부분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해금정책의 제 부분에서 조선은 명, 청, 일본과 외교관계와 함께 인식하고 대응했다. 해금정책의 중요한 부분하면서도 제약보다 구호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던 표류정책은 대중국관계, 대일관계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은 해금정책과 범월을 동일한 범주에서 인식하고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선의 통치질서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 대외관계 유지에 활용되었다.

V. 맺음말

조선은 해양을 먼 바다, 큰 바다로 인식하기 보다 연해안을 중심으로 도서로 연결된 공간

으로 인식했다. 해양의 자연요소와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 조선은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해방정책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했다. 조류와 같은 자연요소는 해양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을 제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항로를 역사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 무엇보다 조선은 해양의 지정학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해양정책을 전개했다.

조선의 해양정책은 국가안위와 국왕중심의 통치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통치질서의 안정화는 명,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만한 대중국 관계가 필요로 했다. 이에 명, 청의 해양정책에 영향을 받아 조선도 해금정책을 기본으로 채택했다. 조선의 해양정책은 해방정책으로 표출되었으며, 해방의 핵심은 해양이란 공간을 통해 침범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함으로써 조선의 군사, 정치적 위기를 방지함에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은 수군력을 초기부터 양성하고 편제하였다. 한반도의 삼면이 바다로 연결된 특성으로 수군은 평안도에서 함경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군진을 조성하고 많은 수군력을 배치했다. 해방정책의 주력이었던 수군군진은 군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동하기도 했다. 해양이란 공간과 연결된 연해안과 도서지역에 조선은 마정을 시행함으로써 국방체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마정은 국내 통치정책의 측면과 함께 말무역이란 대외관계와 연결되는 성격도 있었다.

조선의 해양정책에서 계서적인 국제질서와 연결되는 세부 정책이 해금정책이다. 해금정책은 대내적으로 불법적인 해양진출을 제어하면서 대외적으로 해양을 통해 진입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는 이중성이 있었다. 또한, 조선의 해금정책은 국제질서와 연결되어 명, 청의 해금정책과 공조되는 성격이 있었다. 즉, 해금정책은 국내 통치정책이자 국외 외교정책이었다. 해금정책은 또한 조선시대 변경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조선은 육로로 북방에서 국경을 형성하면서 해양으로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과 변경을 형성했다. 조선의 국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규정하는 강계는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어야 했다. 왕권이 미치는 범주라는 점에서 왕화(王化)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강계를 함부로 벗어나 왕법(王法)을 어기는 점에 대해 단호한 금제(禁制)를 시행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은 해금정책을 범월(犯越)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금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의 해금정책은 시기별로 조선초기에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 조일관계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해양침입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해방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때 해방정책은 해안지역에 수군진을 설치하고, 상륙한 왜구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건국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명의 해금정책에 영향을 받아 해금정책을 강화한 측면도 있었다. 임진전쟁과 명청교체기에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화 및 전쟁경험으로 수군력을 강화하고 해로사행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금정책을 시행했다. 수군력 강화는 통제영의 설치 및 운영,

67.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2, 2005.

68.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206~209쪽.

69. 『동문회고』原編 卷66, 漂民1.

70.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정묘·병자호란을 통해 강화도를 유수부로 활용하는 국방정책 변화도 있었다. 조선후기에 국 제정세가 안정되고 조일관계가 회복되자 조선은 황당선의 출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해방정책을 시행했다. 이 시기 해금정책은 조청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행되었다. 해금정책이 해상에서 범월이란 개념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해금정책을 시행하여 표류민에 대응했다. 개항기에 접어들며, 조선은 해양을 통한 소통과 교류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국가차원에서 인증된 범주에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해양인식과 해금정책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 해금정책에 대한 연구와 연결되면서도 범월의 관점에서 해금정책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시론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적지 않은 논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조선시대 해양인식, 해양정책, 해금정책, 범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향후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척되어 조선에서 인식한 해양개념의 실체가 규명되고, 해양인식에서 출발한 해양정책이 논증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선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大明律直解』, 『경국대전』, 『대전회통』, 『海東諸國記』, 『만기요람』, 『동문회고』
『東萊府接倭狀啓啓錄可考事目抄冊』

강봉룡,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2005.
김성준, 『한국항해선박사』, 문헌, 2014.
김재근, 『朝鮮王朝 軍船研究』, 한국문화연구소, 1977.
김재근, 『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84.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연구』, 경인문화사, 2003.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출판사, 2013.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민웅, 『임진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정진술 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도서출판 신서원, 2008.
조영록 편, 『한중문화교류와 남방해로』, 국학자료원, 1997.
최완기, 『한국의 전통 선박 한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한정훈, 『조선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王賽時, 『山東沿海開發史』, 齊魯書社, 2005.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국문화』38, 2006.
김경록, 「17세기 朝·淸관계와 “倭情”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94, 2015.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해양정책」, 『명청사연구』48, 2017.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146, 2018.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2, 2005.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 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문기, 「기후, 바다, 어업분쟁-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 『중국사연구』63, 2009.
김용근, 「조선전기 조군-조운과 관련하여-」, 『명지사학』 창간호, 1983.
김재근, 『朝鮮王朝의 水軍』, 『군사』1, 1980.
나중우,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한일관계사연구』10, 1999.
남이슬, 「강희연간 청국인의 해양범월과 조·청 양국의 대응」, 『명청사연구』44, 2015.
남호현, 「18세기 조선의 위기의식과 해방 논의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87, 2018.
戴琳劍, 「조선후기 정부의 海洋認識에 나타난 防禦의 성격 - 漂流民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32, 2019.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손승철, 「17세기 아소종문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응」, 『사학연구』58-59, 1999.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53, 2010.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 : 軍役關係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5, 1970.
이준태, 「중국의 전통적 해양인식과 해금정책의 의미」, 『아태연구』,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2010.
임영정, 「조선시대 해금정책의 추이와 울릉도·독도」,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1997.
임영정,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31, 1997.
조세현, 「19세기 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역사와 경계』90, 2014.
조영현, 「명 후기 短命으로 끝난 漕糧의 海運과 그 의미」, 『역사교육』100, 2006.
최낙민, 「명의 해금정책과 천주인의 해상활동-가정연간이후 해구활동 중심으로」, 『역사와경계』78, 2011.
최완기, 「조운과 조창」, 『신편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2.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93, 2014.
한문중, 「조선의 남방지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한문중, 「조선전기 조일간 어업분쟁과 해양권의 강화」,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한임선, 신명호, 「조선후기 海洋境界와 海禁」, 『동북아문화연구』21, 2009.

Abstract

The perception of the ocean and ocean prohibition policy in the Joseon Dynasty

Kim Kyeong-lok

Joseon recognized it as a space connected by islands around the coast, rather than recognizing the ocean as a distant sea or a large sea. Due to the natural and geopolitical factors of the sea, Joseon established and continued ocean policy centered on the ocean defense policy at the level of national rule. Although natural factors such as tidal current restricted the activ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the ocean, nevertheless, various routes were recognized and utilized as historical experiences. Above all, Joseon was interested in the geopolitical elements of the ocean and developed maritime policies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Joseon's ocean policy w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stabiliz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king-centered ruling order. Stabilization of the ruling order required smooth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royal family in the China-centered international order. Influenced by China's ocean policy, Joseon also adopted the ocean prohibition policy as the basis. Joseon's ocean policy was expressed as a ocean defense policy, and the core of ocean defense was to prevent the military and political crisis of Joseon by defending against external forces invading through the space of the sea. Due to the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eing connected by sea on three sides, the naval forces formed a vast military base from Pyeongan-do(平安道) to Hamgyeong-do(咸境道), and deployed a large number of naval forces. The naval force, the main force of the ocean defense policy, carried out not only military but also social-economic functions, thereby driv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Joseon tried to satisfy the demands of the national defense system by implementing a horse policy in the coastal and island regions connected to the space called ocean. The horse policy was related to the external relations of horse trade as well as the aspect of domestic governance policy.

In Joseon's ocean policy, a detailed policy that is linked to the discriminatory international order is the ocean prohibition policy. The ocean prohibition policy had the duality of con-

trolling illegal entry into the sea internally and defending external forces from entering through the sea. In addition, Joseon's ocean prohibition was linked to international order and had a characteristic in harmony with China's ocean prohibition policy.

Keyword Joseon Dynasty, Perception of the Ocean, Ocean Policy, Ocean Prohibition Policy, Ocean Defense Policy, Horse Policy

논문투고일 : 2021. 10. 20.
심사완료일 : 2021. 11. 26.
게재확정일 : 2021. 12. 0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 내용 검토

2015년도와 2019년도 검정본의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나행주 건국대학교

I. 머리말

II. 영토교육의 강화

1. 검정기준의 강화

2.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의 강화

III. 역사교과서의 독도 서술

1. 대표적인 교과서 2종

2. 좌우성향을 대변하는 교과서 4종

3. 기타 교과서 3종

IV. 맺음말

초록

2006년에 이루어진 아베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일본의 역사교육은 애국심과 애항심, 전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12년의 제2차 아베내각 발족이후 역사교육과 영토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것은 2014년 교과서검정제도상의 기준 강화와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의 부분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독도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로서 2015년도 검정본의 일본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이고,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과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대화)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술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도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전면 개정을 거친 이후의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9년도 검정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독도에 대해 일본 측(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이고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실효 지배' 를 말해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토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주제어 일본역사교과서, 독도기술, 영토교육, 교과서검정,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해설

I. 머리말

본고의 문제관심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고 2021년도 현재 일본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독도(일본명 죽도[다케시마]¹)에 대한 서술 및 영토교육 내용을 분석·검토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전 2006년의 아베정권 등장과 함께 전후 최초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역사교육 및 영토교육이 어떻게 강화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012년의 아베정권의 재등장 이후, 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영토교육이 어떻게 지속·강화되어 나가는지를 교과서검정시스템,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의 개정과정 및 변화내용과의 관련성 등에 주의하면서 2015년도 검정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³

본고는 전고의 후속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아베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면서 보다 강화된 영토교육의 내용이 현재 중학교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9년도 검정본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이나 영토교육상에 있어 2015년도 검정본의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서술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점인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검토대상인 일본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는 2019년도에 1차적으로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東京書籍), 데이코쿠서원(帝國書院), 교이쿠출판(教育出版), 니혼분쿄출판(日本文教出版), 레이와서적(令和書籍), 마나비샤(學び舎),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 이쿠호샤(育鵬社)의 8종에, 1년 뒤인 2020년에 2차적으로 재검정에 통과한 자유사(自由社) 교과서 1종을 포함한 총 9종류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 분석한다.

분석은 우선 본론의 II장에서 일본 중학교의 영토교육이 교과서 검정시스템의 강화와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의 개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점을 개관한 다음, III장에서는 실질적인 분석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9종 교과서를 3그룹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우선, 시장 점유율(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과 데이코쿠서원의 2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는 현재 중학교 역사교육의 현장에서의 독도 및 영토교육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2종 교과서를 통한 독도 및 영토교육은 미래세대인 일본 젊은이들의 독도와 영토에 대한 상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들 교과서의 내용은 미래에 미칠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이하 본문에서는 독도로 표기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죽도 혹은 죽도(다케시마)나 竹島 혹은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한다. 아울러, 중국 및 대만과 문제가 되고 있는 尖閣諸島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센카쿠열도, 인용문에서는 센카쿠제도 로 표기하며, 러시아와 분쟁중인 北方領土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라 기술한다.

2. 나행주, 201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3. 나행주, 2020,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다음으로 가장 우려를 자아내는 우익적인 대표적인 교과서 2종(이쿠호샤와 자유사)과 이와 대조적인 진보적인 교과서로 평가되는 2종(교이쿠출판 및 니혼분교출판)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혹은 양자의 내용상에 차이는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채택률은 미미하나 9종 교과서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로 평가되는 마나비샤, 이번에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출판한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⁴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중학교 교과서 시장에 참여한 레이와서적의 내용도 참고로 살펴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향후 4년간에 걸쳐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 속의 독도 서술 내용, 독도 교육을 비롯한 영토교육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통해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및 영토교육의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금후 한국의 독도 및 영토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II. 영토교육의 강화

일본의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독도를 비롯한 영토교육은 초등학교(소학교) 고학년 단계인 5학년 사회과에서 시작되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지리, 공민, 역사교과목을 통해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영토교육은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이 주도, 작성하는 교과서 검정시스템과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 검정은 대체로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도는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검정의 해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0년 3월에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9종이었다. 채택률 상위권을 차지한 도쿄서적(東京書籍)과 데이코쿠서원(帝國書院), 자유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이쿠출판(教育出版)과 니혼분교출판(日本文教出版), 보수우파진영을 대표하는 교과서로 자유주의사관·역사수정주의를 주창하는 소위 '새역모' 계통의 이쿠호샤(育鵬社)와 자유사(自由社), 그리고 최근에 중학교 교과서 출판에 가담한 레이와(令和)서적, 마나비샤(學び舎)⁵ 및 2019년도에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행한 야마카와출판(山川出版)⁶ 등 9개 출판사이다.

4. 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야마카와출판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은 가장 바람직한 서술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영토교육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5. 본고에서 검토대상으로 삼은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출판사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쿄서적, 데이코쿠서원과 같이 일본음과 우리음을 함께 사용해 표기하기로 하는데, 마나비샤(學び舎)와 대표적인 우익교과서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쿠호샤와 자유사의 경우만 일본음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다.
6.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경우 종래에는 고교 일본사 교과서인 <<상설 일본사(詳説 日本史)>>를 출판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교 일본사 교과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일본사 교육현장에서 가장 높은 채택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행했으나 점차 그 영향력(시장 점유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2019년도 중학교 검정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었던 교과서가 우익계의 대표적인 교과서인 자유사 교과서였다. 지정된 검정 당해 연도(2019년도)에 재검정을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최다의 오류가 지적되어⁷ 1차 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탈락하였다. 그러나 자유사 교과서가 대폭적인 수정을 거친 후 다음 연도인 2020년도에 재차 검정을 신청하였고 마침내 재검정에 통과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⁸ 이로 인해 중학교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처음에는 교과서 채택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유사판 교과서에 대해, 이전 2015년도판 자유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일부 학교들 가운데에서 재차 자유사 교과서 채택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전 자유사판 이외의 교과서를 채택했던 결정이 번복되는 등의 해프닝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자유사판 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났다.⁹

2019년도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각 학교에서의 교과서채택률은 도쿄서적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고, 데이코쿠서원이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자유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이쿠출판과 니혼분교출판이 뒤를 이었고, 자유주의사관·역사수정주의를 주창하는 소위 '새역모' 계통의 보수우파진영을 대표하는 이쿠호샤와 자유사의 경우는 2015년도 검정본에 비해 그 채택률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중학교 교과서 출판에 가담한 레이와서적, 마나비샤(學び舎) 및 2019년도에 처음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행한 야마카와출판사 등의 경우는 아직은 채택률이 미미한 상황이다.¹⁰

전술한 것처럼, 현재 일본의 역사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가운데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검정을 통과한 우익계 이쿠호샤와 자유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익교과서의 채택 저조 현상은 그 원인의 하나로 2012년 이후 장기집권 해오던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수상 사임, 이로 인한 정치 일선에서의 일시적 후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베의 정치적 퇴장 및 2019년도 검정에서의 자유사 교과서의 탈락 등으로 소위 자유사 교과서로 대표되는 '새역모' 계 우익교과서의 교육현장에서의 퇴출(채택률 저하)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자유사 교과서의 우여곡절을 거친 재검정 통과와 자유사판 교과서 채택 움직임이 재차 나타남으로써 일부의 기대에 찬 희망이 결국 우려로 뒤바뀐 상황이다.

7. 자유사 발행의 교과서는 2019년도의 검정 과정에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려 230곳 이상의 오류를 포함한 405곳의 검정의견(수정요구)이 지적되어 당해 연도에 재검정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고 검정에 탈락되었다. 오류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재검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기준에 의한 조치였다.

8. 2020년도의 재검정에서는 83건의 검정의견(수정요구)이 있었으나 모두 수정을 거쳐 검정을 통과했다.

9. 예를 들면,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오다와라(小田原)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미 채택해 사용하고 있던 데이코쿠서원 교과서에서 자유사 교과서로 교체하였고, 동 요코하마(横浜)시 및 시즈오카(静岡)현 시즈오카시의 경우도 중간에 자유사 교과서로 교체하였다.

10. 2019년도 검정본 역사교과서의 채택률 상위 3개사를 보면, 도쿄서적 52.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고, 데이코쿠서원이 25.2%로 2위, 교이쿠출판이 11.4%로 3위를 차지하였다. 니혼분교출판이 뒤를 이었고, 우익계의 이쿠호샤는 이전에 비해 대폭적으로 채택률이 감소하여 1.1%에 그쳤고, 새롭게 선을 보인 야마카와출판사의 경우 1.7%였다. 아울러 소위 '새역모' 그룹으로부터 가장 자학사관 교과서로 지명된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마나비샤의 경우 0.5%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2015년도 검정본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도쿄서적 51.0%, 데이코쿠서원 17.9%, 교이쿠출판 14.1%, 니혼분교출판 9.4%를 점하였고, 우익계의 이쿠호샤가 6.3%로 크게 늘어난 반면 자유사는 미미한 채택에 그쳤다. 마나비샤의 경우는 0.5%였다.

1. 검정기준의 강화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중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토교육은 한국과 관련된 독도 교육, 러시아와 관련된 북방영토, 그리고 중국 및 대만과 관련된 센카쿠열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토를 둘러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의 기본적인 입장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 정부, 외무성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중국 및 대만과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¹¹

이하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중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데, 그 과정은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제1단계는 영토교육 강화를 위한 문부성의 제도적 장치로서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 자체에 대한 검정 및 검정기준 강화를 통해서이며, 제2단계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 내용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문부성의 영토교육과 관련한 교과서 검정기준의 강화는 2014년에 이루어졌고, 이 시기를 전후해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의 일부 개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교과서 내용 전체를 좌우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 교과서 검정시스템이 어떻게 교과서의 내용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정 시스템을 통해 영토관련 서술 내용의 강화(강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소위 ‘새역모’ 계 교과서를 지지하는 우익세력으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는 교과서가 진보성향의 교과서로 평가되는 교이쿠출판과 히혼분교출판의 역사교과서이다. 여기서는 교이쿠출판의 경우 2011년 검정신청본 이후의 서술 내용 변화 및 현재에 이르는 독도 관련 교과서 내용의 변화상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¹²

① 2011년도 교이쿠출판 검정신청본 독도 관련 내용

역사의 창 영토문제 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251쪽)

현재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대해 반환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북방영토(홋카이도) 이외에 다케시마(시마네 현)와 센카쿠제도(오키나와 현)를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

11.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무성(外務省) 홈페이지의 다음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北方領土問題(<http://www.mofa.go.jp/mofaj/area/hoppo/>) · 竹島問題(<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 日中間係(尖閣)(<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 및 동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등을 참조.

12. 아래의 내용 정리는 교이쿠출판 중학교 역사교과서 2011년도, 2015년도, 2019년도 검정본에 의한다.

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토를 둘러싼 주장에 상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지나 해에 위치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2011년도 문부성 검정의견 수렴 후의 수정내용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홋카이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의 반환을 요구하는 교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방영토와 함께 다케시마(시마네 현)와 센카쿠제도(오키나와 현)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토를 둘러싸고 주장에 상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동지나해에 위치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2015년도 검정본의 내용

[현재에 남겨진 과제~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257쪽)

죽도(시마네현)

죽도는 일본해에 위치하는 동도와 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1905(메이지38)년의 각의결정으로 ‘죽도’로 명명되어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1954(쇼와29)년부터 섬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합의(대화)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④ 2019년도 검정본의 내용

죽도는 일본해에 위치하는 여도(동도)와 남도(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죽도에서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뚝토리번의 주민들이 강치나 전복의 어획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강치수렵이 본격화하자 1905(메이지38)년 일본정부는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것을 각의 결정 하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단계에는 한국은 ‘일본이 방기할 지역으로서 죽도도 포함시켜 달라’고 미국 국무장관에게 요구하였지만 ‘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유권의 주장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의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해양주권선언’을 단행하여 소위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죽도를 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1954(쇼와29)년부터 섬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에 엄중하게 항의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대화(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268쪽)

위의 자료 ①에서는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즉 사실관계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부성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이라는 검정의견 즉 지적을 받고 수정한 내용이 ②인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다케시마(시마네현)’ 즉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의 위력이다. 이후 2015년 검정본에 이르면 ③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대화로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내용의 변화(강화)는 검정시스템과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후술)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가장 강도 높은 서술 내용은 2019년도 검정본(④)에 그대로 이어진다.

2.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의 강화

다음으로 영토교육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내용 변화의 과정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동 해설서 내용의 변화 과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정부(문부성)는 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교과 수업에서의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교사용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해설 내용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그리고 2014년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과 개정 전후의 내용상의 차이를 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학습지도요령)

領土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학습지도요령해설-개정전)

「領土의 画定」에서는 러시아와의 領土의 확정을 비롯하여 琉球의 問題나 北海道 개척을 취급한다. 그 경우,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취급한다.

(동 해설-개정후)

「領土의 画定」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하여 琉球의 문제나 北海道의 개척을 다룬다. 그 경우, 우리나라가 國際法上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竹島, 尖閣諸島를 정식으로 領土로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 또한 中国이나 朝鮮과의 외교도 취급한다.

위 표를 통해 2014년 이전 단계의 학습지도요령 및 그 해설서에는 영토교육과 관련해 그 주안점이 어디까지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중국 및 대만과의 센카쿠열도의 문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아직 우리와 직접 관련된 독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2014년 개정 이전 단계의 일본정부의 영토교육에 있어서의 기본 입장은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중시 및 강화를 중요한 교육 과제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에 새롭게 일부 개정된 해설서에는 일본정부의 영토편입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명시하고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죽도’(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후 독도에 관한 교과서 기술이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이 강화되어 나갔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토교육에 있어서 독도에 관한 서술 내용의 강화는 2018년의 학습지도요령의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18 전면개정 이후에 보이는 해설서의 변화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지도요령)

[부국강병·식산흥업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 아래 신정부가 행한 폐번치현, 학제·병제·세제 개혁, 신분제도의 폐지, 영토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경우,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함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동 해설)

부국강병·식산흥업 정책에 대해서는, [폐번치현, 학제 병제 세제의 개혁, 신분제도의 폐지, 영토의 확정](내용의 취급) 등을 취급하고, 학제 등 오늘날에 이어지는 제 제도가 만들어진 점이나 신분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의 확정을 비롯하여 류큐의 문제나 북해도의 개척을 다룬다. 그 경우,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국경설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함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국이나 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한다.

2014년의 해설서 일부 개정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초중고교의 사회과 해설이 전면 개정되었다. 양자의 내용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4년 일부 개정

우리나라가 國際法上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竹島, 尖閣諸島를 정식으로 領土로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①

2018년 전면 개정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②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4년과 2018년 해설서 내용의 공통성은 ①에 대한 내용이고, 양자의 차이는 바로 ②의 내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국제법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3.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及び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の一部改訂について(通知), 25文科初第1159号, 2014년 1월 28일 참조

이 새로운 해설서 개정은 점차적으로 학교교육의 현장에 적용되는데, 2020년에 초등학교, 2021년 중학교, 2022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공표된 이 새로운 개정 내용은 이미 공식적인 적용 이전 시기인 2018년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2019~2020년의 중학교 검정, 그리고 2020~2021년부터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의 실질적인 검정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¹⁴

2006년의 아베 정권의 탄생과 함께 전후 최초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애국심과 향토애를 중시하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¹⁵ 한편으로 이와 궤를 같이하여 영토교육의 강화를 명시한 2008년 7월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영토, 특히 독도(일본명 '竹島=다케시마')¹⁶에 대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역사·공민)의 기술이 강화되고 있음은 전고를 통해 확인했다.

즉 2012년 아베 재집권 즉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독도를 비롯한 영토교육과 역사교육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합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문부성의 검정제도, 특히 영토 관련 검정기준 강화,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 내용의 강화를 통해 독도를 비롯한 영토 관련 기술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영토교육 또한 강제화 되고 있다. 그 첫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앞서 교이쿠출판의 서술내용으로 확인한 것처럼 2015년도 검정본에 기술된 독도 관련 교과서 내용이다.

부연하자면, 2012년 아베정권 재탄생(제2차 아베 내각)으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제가 더욱 노골화 되면서 그 제도적 장치로서 2014년에 마침내 교과서 발행의 당부를 결정하는 검정기준 강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시정에 헌신해 온 고(故) 다와라(俵) 씨¹⁷에 따르면 강화된 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실은 '애국심의 정도'라는 것이다. 즉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애국심 정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의 발행 여부를 결정짓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한편으로, 아베 정권 하에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2014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정 이전에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독도 관련 언급이 나타나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전면 개정판에 이르면 보다 강화된 형태로 외무성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해설서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영토교육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영토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고 학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지도 표시, 영토 영

유의 역사적 경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연표 등 보다 다양한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본문에서의 사실관계 나열에 머무는 정도의 기술이었으나 2015년도 검정본 이후의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단순히 본문에서의 사실에 관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진 등 자료 제시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자료-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 일본인들의 독도에서의 어업 활동 사진, 실효지배의 자료로서 어업허가권 신청 및 발행 자료 등-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후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2018년도에 전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 내용(즉 전제 ②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해설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독도 교육과 관련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가)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점, (나)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다)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라) 앞의 (나)와 관련해,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각별히 주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주지(주입)시키는 서술이자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2011년을 기준으로 교과서 기술 정도·단계를 중학교 사회과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류해 보면 최저 0단계에서 최고 4단계의 총 5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중학교 역사·공민·지리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비교표(2011년 검정본)

	교이쿠출판	데이고쿠서원	도쿄서적	니혼분교출판	시미즈서원	이쿠호샤	지유샤
지리	고유(2)	고유(2)	고유·점거(3)	고유·불법점거(4)	미발행	미발행	미발행
공민	(1)	(0)	고유·불법점거(4)	(1)	고유·점거(3)	고유·불법점거(4)	고유·불법점거(4)
역사	고유(2)	(1)	(0)	(1)	(0)	(0)	(0)

위의 <표 1>을 통해 확인되는 점은 2차 아베 내각 등장 이전의 2011년도 검정본의 경우 지리 교과서 외에 공민과 역사교과서에서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교과서가 존재했던 것이다. 즉 데이고쿠서원의 공민교과서, 도쿄서적, 시미즈서원, 심지어는 새역모 계통의 이쿠호샤, 지유샤 발행의 역사교과서에서도 독도에 관한 서술이 일체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영토교육 가운데 독도 교육은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직 지리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4. 나행주, 2020, 위의 논문 참조

15. 나행주, 2011, 위의 논문 참조

16. 이하의 서술에 있어 일본교과서 내용이나 일본 측 자료의 직접 인용 외에는 독도로 표기하기로 한다.

17. 다와라 씨는 '교과서넷21'을 결성하여 일생 동안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점차 공민교과서의 독도기술 강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고, 아직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의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의 영토관련 기술에 대한 검정기준의 강화로 말미암아 역사교과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검정본에서는 (0)단계 즉 독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가 존재했으나, 2015년도 검정본에 이르러서는 시미즈서원이 최저 2단계이며 이를 제외한 6개 출판사의 교과서는 3단계 이상,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의 기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검정과정의 철저 및 검정기준의 강화, 학습지도요령 및 동 해설서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영토교육 강화의 결과이다.

표2.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변화표

역사	교이쿠출판	니혼분교출판	데이고쿠서원	도쿄서적	이쿠호샤	지유샤
2011년 검정본	(2)고유	(1)주장 차이	(1)주장 차이	(0)	(0)	(0)
2015년 검정본	고유+불법점거(4)+평화적 해결 노력	고유+점거(3)+평화적 노력	고유+불법 점거(4)+역사적 근거 제시	고유+불법 점거(4)+역사적 근거 제시	고유+불법 점거(4)	고유+불법 점거(4)+실효지배
변화(강화) 정도	2단계 업(강화)+알파	2단계 업(강화)+알파	3단계 업(강화)+알파	4단계 업+역사적 근거	4단계 강화	4단계 강화+실효지배

나아가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전면적 개정 이후의 교과서 서술 내용의 변화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연도별로 그 서술 정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단계 비교표(2011년-2019년 검정본)

역사	교이쿠출판	데이고쿠서원	도쿄서적	니혼분교출판	시미즈서원	이쿠호샤	지유샤
2011	(2)고유	(1)	(0)	(1)	(0)	(0)	(0)
2015	(4)+평화적 해결 노력	(4)+역사적 근거 제시	고유+불법 점거(4)+역사적 근거 제시	(3)+평화적 노력	(2)	(4)	(4)+실효 지배
2019	(4)+자료=(5)	(4)+자료=(5)	(4)+자료=(5)	(4)+자료+평화적 해결 노력=(5)	미발행	(4)+자료=(5)	(4)+자료

2019년도 및 2020년도 검정을 통과하여 2021년 현재 일본 중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를 보면, 4단계 이상, 실질적인 5단계의 영토교육 즉 독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도 검정본 단계와 비교해 볼 때, 2019년 이후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독도에 관한 서술 내용은 이미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 점거”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4단계의 강도를 지나, 여기에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연원이 깊은 고유영토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각인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 명명해 시마네현에 편입한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점, 역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현재의 실효지배 행위가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이전 즉 2011년도 검정본 단계에서는 독도에 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그 정도(강도)에 따라 총 5단계(최저 0단계에서 최고 4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제0단계: 독도 관련 언급이 없는 경우

제1단계: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표현하거나, 독도를 지도상 일본의 국경선 안에 표시, 혹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제2단계: 독도를 직접적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경우

제3단계: 한국의 [점거·점령]이라 서술한 경우

제4단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경우이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의 경우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서술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5단계(최저 1단계에서 최고 5단계)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즉

제1단계: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표현하거나, 독도를 지도상 일본의 국경선 안에 표시, 혹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경우

제2단계: 독도를 직접적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경우

제3단계: 한국의 [점거·점령]이라 서술한 경우

제4단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경우

제5단계: 독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2019년도 검정본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사례로 중학교 교과서 시장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7~8종 교과서 전부에서 강도 높은 3단계 이상의 독도 관련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Ⅲ. 역사교과서의 독도 서술

이하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독도 관련 서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¹⁸

1. 대표적인 교과서 2종 - 도교서적과 데이코쿠서원

현재 일본 중학교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가운데 시장점유율 즉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 2종이 도교서적, 데이코쿠서원 출판의 교과서이다. 이하 이 두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서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고, 공통성과 함께 그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2015년판과 2019년(일부 2020년) 검정본의 서술 내용 비교를 통해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그 변화상 및 특징을 파악하기로 한다.

먼저, 일본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가운데 시장점유율 즉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교과서가 도교서적 출판의 교과서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곧 일본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청소년들의 독도에 관한 일반적 상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검정본 이후 독도에 관한 서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전고¹⁹를 통해 확인했다. 즉 동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지리나 공민에서는 이미 2011년도 검정본의 단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3~4단계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에서는 직접적인 독도 관련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도 검정본에 이르면 역사교과서에서 4단계 수준의 기술 강화와 함께 종래의 본문 기술이 중심이었던 데 대해 관련 지도는 물론 사진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영토교육이 보다 시각적·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도교서적 역사교과서의 2015년 검정본과 2019년 검정본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2015년도 검정본의 독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지금까지 일본 사회와 교과서를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서술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연구 성과가 많으나, 그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 사회와 교과서를 집중분석한 연구로는 황용섭, 2017,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 김주식, 2013, 「한일간의 현안: 독도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strategy 21』 제16권 1호, 통권 제31; 박병섭, 2011, 「일본의 사회와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11; 남상규, 2014,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연구』 통권 76 등이 있고,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독도 교육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남상규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동, 2011, 「전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동, 2016,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 20; 동, 2016, 「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 한국교원신문(2016.5.11)). 아울러,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한 남상규, 2012,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및 홍성근의 연구(동,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동, 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김영수의 연구(동, 2015,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 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 2014년 전후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독도연구』 19; 동, 2013,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와 분석」, 『동북아역사문제: 주요 현황 분석』 통권 8호)도 참고가 된다.

19. 나행주, 2020, 위의 논문 참조

① 「국경과 영토의 확정」²⁰

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국경선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에 대해 구미의 근대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국경선은 확실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제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근대적인 국제관계를 배우고자 했던 일본에게 있어서 국경선을 정하고 영토를 확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촉주-동지나(중국)해의 센카쿠제도(1895년에 오키나와 현에, 일본해의 죽도는 1905년에 시마네 현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② 「넓어지는 일본의 외교관계」²¹

한국과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촉주-한국과의 사이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③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²²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변국들과 우호관계를 깊게 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 현재에도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시마네현 오키노시마 隠岐島), 러시아연방과의 사이에는 북방영토(홋카이도 네무로시 등),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과의 사이에 센카쿠제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역사적인 배경을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죽도

죽도에서는 에도시대 초부터 막부의 허가를 얻은 鳥取번의 주민(정민)이 어업을 행하여 아시카(강치)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 아시카업이 본격적으로 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중의 1905(메이지38)년1월에 각의결정을 행하여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2월22일에 지사가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 죽도에서의 어업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1941(쇼와16)년에 중지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한국은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당시의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는 선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어 그 한국 측에 죽도를 집어넣어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엄중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은 죽도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죽도 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마네 현은 2005(헤이세이17)년에 죽도의 시마네 현에의 편입을 고시한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외교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1)시마네현의 고시(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2)메이지시대의 죽도 사진(개인소장) 1907년경에 시마네현의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과 그 설명문입니다.

(3)아시카(강치) 어업의 모습(1935년)과 아시카어업의 허가증(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21. 동, 250~251쪽.

22. 동, 252쪽.

23. 도교서적 2019년도 검정본, 178쪽.

우선, 2015년 검정본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은 자료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메이지일본은 근대적인 국제관계에 입각해 ‘일본해에 위치한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점, ②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③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죽도 문제가 존재하지만,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에도시대 초기 이래 돗토리번 어민들이 강치잡이나 전복 채취 등의 어업활동을 하였고, 1905년의 시마네현 편입 이후는 시마네현이 어업 허가권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독도 주변에서의 실질적인 어업활동은 1941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 즉 일본의 실효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9년 검정본의 독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국경과 영토의 확정²³

〈메이지시대의 국경과 영토의 확정〉 연표

1895년 센카쿠제도의 일본령에의 편입을 내각에서 결정하다.

1905년 죽도의 일본령에의 편입을 내각에서 결정하다.

(2)영토를 둘러싼 문제의배경²⁴

죽도, 센카쿠제도, 북방영토는 어떠한 경위로 일본고유의 영토가 된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는 섬들의 영유

현재의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보아 **고유의 영토**이면서도 주변제국과의 사이에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마네현의 죽도와 북해도의 북방영토는 각각 대한민국(한국)과 러시아에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역이 어떠한 경위로 일본고유의 영토가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강치어업의 무대 죽도

죽도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송도’라 불리우고 있고 그 서쪽에 있는 울릉도가 ‘죽도’나 ‘기죽도’로 불리고 있었는데 에도시대에는 현재의 울릉도와 죽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작성된 지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에도시대인 1618년에는 돗토리번의 주민이 번을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로 건너가는 허가를 얻어 전복채취나 강치어업 등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중에 있는 죽도는 항해의 이정표나 정박지가 되는 한편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강치수렵 등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은 메이지시대 말경부터 본격화하여 많은 어민이 어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키노미의 한 사람이 안정된 어업을 위해 죽도의 영토편입과 10년 간의 불하를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이를 받은 정부는 1905년(메이지38) 1월에 죽도의 시마네현에의 편입을 각의 결정하여 정식으로 ‘죽도’라 명명하고 2월에 시마네현 지사가 고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정부는 **죽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강치어업은 태평양전쟁으로 1941년(쇼와16)에 중지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우선, 자료(1)에서 〈메이지시대의 국경과 영토의 확정〉이라는 연표를 통해 근대일본의

센카쿠열도와 독도 등의 일본영토로의 편입 즉 국경 확정 과정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이어 (2)에서는 앞서 본 2015년도 검정본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점,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지속되어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확립되었고, 메이지시대에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2015년도 검정본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추가적인 기술이 확인되는데, 독도와 관련된 명칭에 대한 기술과 독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을 말해주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교과서 서술 내용 중 ‘실효지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2015년 검정본에서는 ‘실효지배’라는 용어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우익을 대표하는 지류사 교과서 속에 유일하게 등장했었으나, 2019년 검정본에서는 이 용어가 도교서적 등의 3개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전 지류사 교과서가 유일하게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실효지배를 언급했으나 타사(도교서적 등)의 교과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일본의 실효지배를 명시하고 있으며,²⁵ 레이와서적의 경우는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의 실효지배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비롯한 영토관련 내용 속에 ‘실효지배’라는 용어가 보다 많이 보이고 있는 점을 전체로 하면 금후에는 점차 모든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검정본의 교과서에서는 실효지배 혹은 고유영토가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그 경위를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 역사적 기원은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국제법적으로는 근대 시기인 1905년의 시마네현에의 편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는 1945년, 더 나아가 1954년의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효지배’라는 용어가 독도와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일본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대조시켜, 한국 측의 불법성을 애써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검정본 단계에서부터 영토교육이 보다 다양한 자료를 구사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19년 검정본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독도교육을 위한 보다 풍부한 자료 활용이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도를 비롯한 영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지도 및 사진 등 매우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최근의 역사교과서 독도 관련 서술에서 확인되는 가장 주목되는 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후술).

23. 도교서적 2019년도 검정본 178쪽.

24. 동, 180~181쪽.

25. 레이와서적 306쪽은 중국의 센카쿠열도 주변으로의 빈번한 해군 함대 파견을 일본의 실효지배를 흔들려는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중국 및 대만과는 영토문제가 일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과 러시아와는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자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데이코쿠서원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서술 내용을 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획정하는 국경²⁶

1905년에는 죽도도 현재의 시마네현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도-메이지초기의 일본의 국경과 외교

역사를 탐구하자²⁷

일본의 영토획정과 근린제국-일본의 영토획정과 영유의 경위-

1 북방영토 2 죽도 3 센카쿠제도

2 죽도²⁸

죽도에는 어떠한 경위가 있었던 것일까?

죽도에서는 에도시대 초기에서는 돗토리번의 요나고(米子)의 사람들이 1900년대부터는 오키(시마네현) 사람들이 강치어업이나 전복 채취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키 도민의 청원을 받은 메이지정부는 1905년에 죽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각의 결정하여 자국의 영토로 하는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죽도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을 거절당한 대한민국(한국)은 평화조약의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에 관한 권리를 선언하여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1954년부터는 죽도에 해양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데이코쿠서원의 경우, 독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전제로 한 4단계에 해당하는 기술 내용임은 분명하나, 본문의 문면상으로 ‘고유영토’나 ‘불법점거’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주목되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가운데에서는 연표, 지도는 물론 고지도 등 가장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도를 ‘竹島’로 표기한 지도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한 사실을 적은 연표 제시는 물론 여기에 <죽도와 센카쿠제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재차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 속에서는 일본의 영해를 색으로 구분한 지도 속에 ‘일본해’와 ‘죽도’가 표시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 에도막부나 메이지정부 발행의 어업허가증 및 돗토리현 및 시마네현 사

람들의 강치어업 사진, 고지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적 연원의 유구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²⁹

여기에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사용된 지도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관련 자료 일람

① 지도와 연표 <메이지초기의 일본의 국경과 외교> 등³¹

②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내용(일부발췌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³²

제2조 (a)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b)일본국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c)일본국은 치시마열도 및 ...화태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하는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③ 고지도 <小谷伊兵衛로부터 제출된 竹嶋之繪圖>³³ 등

1696년 에도막부의 요구에 응해 돗토리번에서 제출된 회도(繪圖)의 부분입니다. 당시 죽도는 松嶋라 불렸고 현재의 울릉도를 竹嶋(磯竹嶋)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④ 어업활동 사진 오키섬 사람들에 의한 죽도에서의 강치잡이 모습(1935년) (개인장(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제공))³⁴

⑤ 정부 증명서 시마네현이 발행한 강치어업 허가증 (시마네현 제공)³⁵

⑥ <죽도와 센카쿠열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³⁶

이상의 자료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동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에도시대 이래로 일본 고유영토이며, 일본 메이지정부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한국은 이러한 일본 측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무시하고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제점령 즉 약탈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일본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독도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과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30. 구체적인 이미지는 본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 참고자료를 참조

31. 도교서적 2019년도 검정본 178쪽, 데이코쿠서원 179쪽, 교이쿠출판 177쪽, 니혼분교출판 192쪽 등 거의 모든 교과서에 지도와 연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32.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266쪽, 도교서적 258쪽, 이쿠호샤 266쪽, 지유샤 262쪽 등 참조

33.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267쪽 및 도교서적 180쪽, 이쿠호샤 267쪽 등에도 고지도가 보이고 있다.

34. 도교서적 2019년도 검정본 180쪽, 데이코쿠서원 267쪽, 교이쿠출판 268쪽, 니혼분교출판 293쪽 등 참조

35.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267쪽 참조

36.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267쪽

26.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179쪽

27. 동, 266~267쪽

28. 동, 267쪽

29. 데이코쿠서원 2019년도 검정본 179쪽, 266쪽, 267쪽 참조

2. 좌우성향을 대변하는 교과서 4종 - 이쿠호샤·지유샤 및 교이쿠출판·니혼분교출판
이하, 좌우의 성향을 대변하는 4종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개 출판사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상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성과 차이성을 확인할

출판사	독도 관련내용
①이쿠호샤 ³⁷	<p>〈역사 중인 우리나라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의 역사-근린제국과의 과제〉 竹島 시마네현의 죽도는 오키제도의 서북 약 158킬로미터에 위치한 2개의 작은 섬과 수십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에도시대의 초기인 1618년(元和 4) 돗토리번(돗토리현)의 상인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지금은 한국의 영토)에서 전복을 채취하기도 하고 강치를 포획하기도 하기 시작해 그 때의 왕래 시에 죽도에 들렀습니다. 1661년(寬文 元)에는 죽도에서도 막부의 허가를 얻어 어업이나 수렵이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메이지38),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죽도를 정식으로 영토로 삼아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습니다. 전후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울릉도를 방기하였지만 죽도는 방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52년(소와27)에 일본해에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죽도를 그 안쪽에 집어넣었고, 그 후 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1965년(소와40)의 일한국교정상화 때에 이승만라인은 없어졌지만 한국에 의한 죽도의 불법점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죽도를 반환하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p>
②지유샤 ³⁸	<p>이승만라인과 죽도문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3개월 전인 1952년(소와27) 1월, 한국은 일본해의 공해에 당시의 대통령의 이름에서 이승만라인이라 불리는 수역경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 내측(한국측)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어선을 계속 나포하였습니다. 또한 라인의 내측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의 죽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자국령이라 주장하고 경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965년(소와40),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p>
③교이쿠출판 ³⁹	<p>죽도(시마네현) 죽도는 일본해에 위치하는 여도(동도)와 남도(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죽도에서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돗토리번의 주민들이 강치나 전복의 어획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강치수렵이 본격화하자 1905(메이지38)년 일본정부는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것을 각의결정하였습니다.</p>

37. 이쿠호샤 2019년 검정본, 267쪽.
38. 지유샤 2019년 검정본, 263쪽.
39. 교이쿠출판 2019년 검정본, 268쪽.

	<p>제2차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단계에서 한국은 '일본이 방기할 지역으로서 죽도도 포함시켜 달라'고 미국 국무장관에게 요구하였지만 '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유권의 주장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의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해양주권선언'을 단행하여 소위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죽도를 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1954(소와29)년부터 섬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u>일본정부는 이에 엄중하게 항의함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대화(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u></p>
④니혼분교출판 ⁴⁰	<p>죽도는 일본해의 시마네현 오키섬 북서에 위치하며 동도 서도 등으로 이루어진 총면적 0.2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군도입니다. 1905(메이지38)년에 일본정부는 어부가 '랑코섬'이라 부르는 섬에 대해 타국이 지배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죽도라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하는 각의결정을 내리고, 죽도를 일본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죽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죽도에 한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선언하고 1954년 이래 연안경비대를 죽도에 주둔시키고 시설을 구축하여 이곳을 불법으로 계속 점거해오고 있습니다. <u>일본정부는 죽도가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국제법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u></p>

수 있다. 우선 좌우 성향을 대표하는 4개 출판사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은 공통점으로서 (가)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 (나)1905년 일본정부는 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점, (다)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라)한국에 대한 항의와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 소소한 차이점으로서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는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쿠호샤, 교이쿠출판, 니혼분교출판 교과서가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지유샤 교과서만 이 점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쿠호샤 교과서의 서술 가운데,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관련 내용 설명과 함께 자료로서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1958년에 출판한 〈〈세계지도집〉〉에 게재된 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센카쿠열도를 센카쿠군도라 표기하고 오키나와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지도와 설명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전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⁴¹ 결국 일본정부 측의 외무성 홈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역사교과서에 영토(독도) 교육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고 제시

40. 니혼분교출판 2019년 검정본, 292쪽.
41. 이쿠호샤 2019년 검정본, 267쪽.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또한 1952년(이쿠호샤와 지유사) 혹은 1954년(교이쿠출판과 니혼분교출판) 이후의 지금 까지 한국의 독도에 대한 불법점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서술 내용도 주의를 요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일정시점 이후의 한국의 영토라는 부기는 마치 그 이전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교묘한 서술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유사 교과서에서 주의를 요하는 서술이 보이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와 일본>⁴³에서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후, 한국은 근거가 없는 전시노동자(징용공) 문제를 꺼내고, 죽도의 불법점거를 지속하는 등 반일자세를 강화하며 북조선(북한)에 대한 결속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이 전혀 근거가 없는 전시노동자(징용공)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소위 새역모계 교과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기술 내용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이쿠출판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검정본과 서술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독도 관련 기술에 있어서 본문에서의 서술 내용은 물론 관련 자료를 더욱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교이쿠출판 교과서의 내용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교과서 검정 문제와 관련해 독도관련 서술내용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사례로서 확인한 바 있다. 제시되고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 검정본에는 독도 사진 1장과 독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1장이 게재되어 있었을 뿐이었으나, 2019년도 검정본에는 보다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즉 독도를 비롯한 영토관련 기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

도1. 독도에서의 강치어업 모습



할 수 있고, 내용 설명과 지도 표기, 관련 자료로서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는 1935년 당시의 일본 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⁴⁴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2015년 검정본과의 차이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니혼분교출판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서술내용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으나, 북방영토와 독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센카쿠열도에는 영토문제가 일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 대해서도

42. 최근의 일본의 독도교육이 일본정부 측 내각관방과 외무성, 그리고 문부성이 삼위일체가 되어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행주, 2020, 앞 논문, 103쪽~108쪽 참조.

43. 지유사 2019년 검정본, 279쪽.

44. 교이쿠출판 2019년도 검정본 268쪽.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 연표는 사실의 확정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니혼분교출판에 게시된 영토관련 연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일본의 외교와 영토획정>

연	사항
1869	개척사 설치, 에조지(蝦夷地)를 홋카이도(北海道)로 개칭
1872	류큐(琉球)왕국을 류큐번으로 함
1874	대만에 출병
1875	러시아와 가라후토·치시마교환조약체결
1876	오기사와라제도의 영유를 통고
1879	오키나와현을 설치(琉球처분)
1895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1905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3. 기타 교과서 3종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신규로 제작된 3종의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레이와서적의 독도관련 서술 내용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 문제에

레이와서적 ⁴⁶	<간장하는 동아시아 정세> 다케시마 문제도 반환을 위한 교섭에 진전은 없습니다.
야마카와출판 ⁴⁷	<일본의 영토의 변천> 일본의 영토에 관해 일본정부는 현재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 죽도에 대해서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1970년대 이후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 에도막부는 1635년(寬永12),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했는데 일본해에 떠있는 죽도에의 도항은 일본국내라는 인식에서 금지하지 않았다. 메이지정부는 1905년(메이지38), 이 무인도를 정식으로 죽도라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것을 각의결정했다. 제2차세계대전후,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한국)은 1952년에 새로운 '경계선'을 일본해상에 설정하여 죽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켰다. 일본정부는 항의했으나 일본은 당시 점령하에 있어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1965년(쇼와40)에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했는데 죽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에 의한 죽도의 지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5. 니혼분교출판 2019년도 검정본 192쪽.

46. 레이와서적 2019년도 검정본, 308쪽.

47. 야마카와출판사 2019년도 검정본, 266-267쪽.

마나비샤 ⁴⁸	죽도의 영유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죽도를 일본의 영토(시마네현)로 편입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	--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술⁴⁹하고 있는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 중이나 아직 진전이 없다고 극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비교적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9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⁵⁰

야마카와출판사의 경우 색인에 독도 즉 죽도(竹島) 항목이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독도 주변을 나타낸 지도 자료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경선과 한국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함께 표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보인다.⁵¹ 다만,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술하고 있으며, 에도 막부가 1635년에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했으나 ‘일본해에 떠있는 죽도에 대한 도항은 일본 국내라는 인식에서 금지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원이 에도시대의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야마카와출판사의 경우, 한국에 의한 독도 지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직접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거나 일본 고유영토 등의 용어를 자제하는 등 비교적 사실 나열에 중점을 둔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9종 교과서 가운데 우익세력으로부터 가장 자학적인 교과서 즉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로 평가되는 마나비샤의 경우, 독도에 관해 가장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본문에서가 아니라 측주에서 “일본정부가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 시마네현에 편입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마나비샤의 경우는 아베정권의 장기화 이후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의 강화와 역사학에서의 자유주의사관·역사수정주의 세력의 대두로 인해 한동안 교과서에서 사라진 내용이었던 중군위안부 문제를 레이와서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언급한 교과서로 주목된다.

이상, 현재 일본중학교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9년도(일부 2020년도) 검정본 역사교과서 9종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48. 마나비샤 2019년도 검정본 189쪽
49. 레이와서적 2019년도 검정본, 306쪽에서 308쪽에 걸쳐 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센카쿠열도에 관해서는 44행을,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5행을 할애하고 있다.
50. 레이와서적 2019년도 검정본, 307쪽.
51. 야마카와출판사 2019년도 검정본 267쪽.

교과서 점유율 면에서 탑은 도쿄서적인데 그런 만큼 동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의 영향력은 중차대하며,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점하고 있는 데이코쿠서원 교과서의 내용 검토를 통해 소위 새역모 계통의 교과서 서술 내용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은 일본 교육현장에서의 영토교육의 강화, 역사교육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의 두 교과서인 교이쿠출판과 니혼분교출판의 경우도 영토문제와 관련된 독도 교육, 독도 기술에 있어서는 우익진영의 교과서는 물론 중도적 성향의 교과서와도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보수성향의 두 교과서인 이쿠호샤·지유샤와 진보성향의 두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정보다는 공통성이 발견된다. 즉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교과서 내용에 차이를 찾기 어렵고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운데 새롭게 교과서 시장에 진출한 야마카와출판사의 경우, 서술의 객관성 면에서 주목되며, 레이와서적과 마나비샤의 경우는 간단한 서술에 그치고 있으나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향후에 미칠 영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년(일부 2020년) 검정본의 주목되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4단계 서술에 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 검정본의 서술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포인트는 본문 내용의 충실화는 물론 관련 자료 제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9년도 검정본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독도 관련 교육에 있어 종래의 본문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나 지도, 연표는 물론 각종 사진이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전에 비해 다양한 자료를 구사해 독도 교육이 시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의 점들이 주목된다. 즉 중학교 교과서에 본문과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자료로서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고유영토를 말해주는 자료, 실효지배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 일본정부의 행위가 국제법에 따른 조처임을 강조하는 자료 등의 제시 및 이용이다.

즉, 2019년도(일부 2020년도) 검정본의 두드러진 특색이자 특징은 독도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 모든 교과서에 지도와 연표가 다수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 실효지배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독도는 패전 후 일본이 반환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말해주는 자료,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를 강조하기 위한 자료가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부성과 외무성, 그리고 내각관방의 산하 조직(영토주권대책실)이라는 삼자의 일체화된 움직임 속에서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영토교육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2019년도 검정본 역사교과서에서 확인되는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자료

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사용된 자료 일람

자료	내용 및 목적
①지도	일본의 영해에 위치한 독도(죽도) 및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독도의 위치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죽도'와 '일본해'를 각인시키기 위함
②연표	메이지 정부의 영토확정 즉 주변 섬들에 대한 일본 영토로의 편입과정을 보여주는 연표를 제시함으로써 독도, 센카쿠열도 등의 편입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
③고지도	독도가 그려진 고지도로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
④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특히 제2조의 내용을 발췌 제시하여 독도가 패전 후의 일본이 반환해야 할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
⑤어업허가증	에도막부 및 메이지정부에 의해 인정 혹은 발행된 어업허가증으로 에도 시대 이래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의 증거로 삼기 위함
⑥어업활동 사진	독도에서의 일본인들의 어업활동 사진으로 시마네현이나 돗토리현 거주 일본인들의 생업(어업)활동의 무대가 바로 독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

이러한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한 독도 교육에서 기대하는 혹은 의도하는 바는 다음의 3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의 상징으로서 어업허가권이 에도 막부 및 메이지 신정부에 의해 인정되고 발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돗토리현 등의 독도와 밀착된 생활 등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원의 뿌리가 1905년의 시마네현에의 편입이 아닌 에도시대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 가운데 제1조와 제2조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전후처리를 위한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결코 일본의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1952년의 한국의 소위 '이승만라인' 설치의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이며 점령하의 일본으로서의 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검정본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가운데 주의를 요하는 점은 '실효지배'라는 키워드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2015년도 교과서

에서는 유일하게 우익계(소위 '새역모'계) 지류사 교과서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그 사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으나,⁵² 역시 2019년도 검정본에서는 도쿄서적, 레이와서적 등의 교과서에서도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의 교과서 서술상에 나타난 특징으로서는 출판사의 이념·성향의 좌우 및 중도를 불문하고 기술 내용에 커다란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어느 한 교과서가 앞서 특정 개념이나 용어,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사의 경쟁 교과서들도 자연스럽게 그 용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효지배'라는 용어 사용 도입이나 새로운 독도 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제시 등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2019년도(일부 2020년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9종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독도 관련 서술 내용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이전에 사용되었던 2015년도 검정본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독도 관련 기술 및 영토 교육에 있어 주목되는 변화상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영토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육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즉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목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우호와 협력,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의 공유와 아울러 지나친 영토교육에 대한 자제가 요구되며, 특히 아베 정권하에서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다시 냉정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9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검토한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일본고유의 영토이고, 각각 러시아와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양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의 실효지배를 전제로 중국 및 대만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측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양국과의 사이에 해결을 요하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9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일본의 영토교육의 현주소이다.

52. 나행주, 2020, 앞의 논문 참조

다음으로, 일본의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편입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행위이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과 독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이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에 보이는 공통점이자 특징은 일본 외무성 사이트의 독도 관련 내용, 즉 일본 정부의 정치적 주장이 기본적으로 교과서 서술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아베 정권하에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동해설서 내용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규 3종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독도에 관한 기술 강화. 일본 측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마카와(山川)출판사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고 주목된다. 즉 한국과 일본 양측의 독도를 둘러싼 주장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와서적과 마나비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레이와서적과 아마카와출판사의 경우, 근년에 역사교과서 속에서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던 위안부(중군위안부) 문제가 다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금후의 교과서 서술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점차적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하 참고로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중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검정본 역사교과서 속의 독도 관련 자료).

1. 독도 사진-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



(좌) 한국의 불법점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독도(지유사, 263쪽)
(우) 독도 사진(도쿄서적, 180쪽)

2. 일본 영해에 포함된 독도 지도-독도의 위치 확인 및 일본영토임을 주장



(좌) 일본의 국경(영해) 속의 일본해와 독도(이쿠호사, 267쪽)
(우) 일본의 영해에 포함된 독도(교이쿠출판, 269쪽)

3. 일본의 영토 확정(편입) 연표-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주장

年	できごと	年	できごと
1869	開拓使をおいて、蝦夷地を北海道と改める	1871	日清修好条約を結ぶ
1872	琉球王国を琉球藩とする	1872	琉球藩をおく
1874	台湾出兵を行う	1874	台湾に出兵する
1875	ロシアとのあいだに樺太・千島交換条約を結ぶ	1875	樺太・千島交換条約を結ぶ
1876	小笠原諸島の領有を通告する	1876	日清修好条約を結ぶ
1879	沖縄県を設置する(琉球処分)	1876	小笠原諸島の領有を宣言する
1895	尖閣諸島を沖縄県に編入する	1879	琉球藩を廃止し、沖縄県を設ける
1905	竹島を島根県に編入する	1895	尖閣諸島を沖縄県に編入する
	日本の領土の画定に関する動き	1905	竹島を島根県に編入する

(좌) 일본의 영토 확정에 관한 움직임(니혼분교출판, 192쪽)
(우) 일본의 외교와 영토의 발자취(교이쿠출판, 177쪽)

4. 어업허가증과 어업활동 사진-실효지배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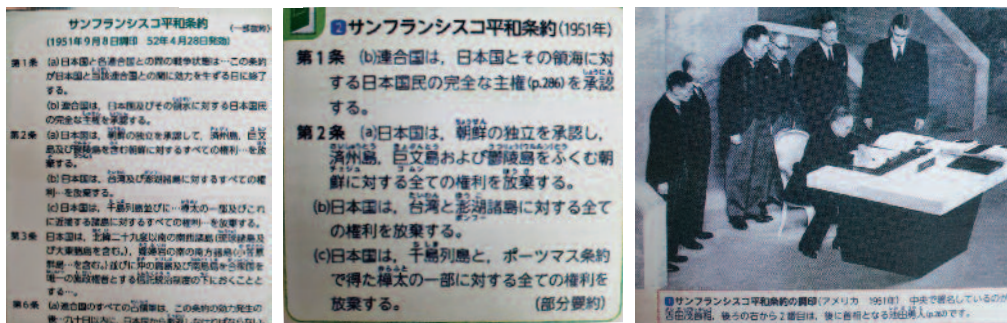
[좌] 시마네현이 발행한 강치어업 허가증(데이코쿠서원, 267쪽)
[우] 1935년 당시의 독도에서의 강치어업 사진(데이코쿠서원, 267쪽)

5. 고지도-고유영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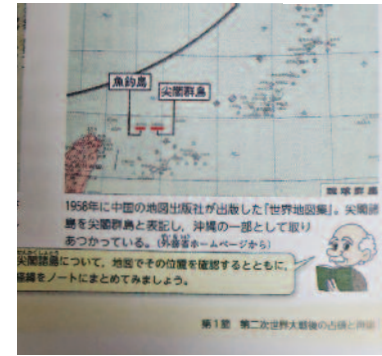
[좌] 기죽도와 송도가 표기된 일본 고지도(데이코쿠서원, 267쪽)
[우] 송도와 기죽도가 표시된 1696년의 에도시대 고지도(이쿠호사, 267쪽)

6.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내용(제1, 2, 3, 6조)-1952년 당시 독도는 일본이 반환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



[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데이코쿠서원, 266쪽)
[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쿄서적, 258쪽)
[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식 장면(도쿄서적, 258쪽)

7. 외무성 홈페이지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영토교육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전제한 침략제도 지도 (이쿠호사, 267쪽)

8. 한국과 일본 양쪽의 주장을 모두 표시한 지도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을 병기한 유일한 지도 (O마카와출판사, 267쪽)

참고문헌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및 등 해설

- 文科科學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地理歴史編(平成30年7月).
- 文科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會編(平成29年7月).
- 文科科學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會編(平成29年7月).
- 중학교 사회과 역사 도교서적(新しい社會 歴史), 교이쿠출판(中學社會 歴史), 니혼분교출판(中學社會 歴史的分野), 데이코쿠서원(中學生の歴史), 이쿠호사(新編 新しい日本の歴史), 지유사(新しい歴史教科書) 등 2015년도 검정본 및 2019~2020년도 검정본.
-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及び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の一部改訂について(通知), 25文科初第1159号, 2014년 1월 28일.

관련 사이트

내각부, 외무부, 교육부, 시마네현 공공 및 민간단체 등

(1) 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

-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
- 竹島問題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
- 日中關係(尖閣) <http://www.mofo.go.jp/mofaj/area/senkaku/>

(2) 内閣官房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のホームページ

<http://www.cas.go.jp/jp/iyodo/index.html>

(3) 外務省パンフレット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o.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논문

김영수, 2015,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 2014년 전후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독도연구』 19.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와 분석」, 『동북아역사문제: 주요 현황 분석』 통권 81호.

김주식, 2013, 「한일간의 현안: 독도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strategy 21』 제16권 1호, 통권 제31호.

나행주, 2011,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나행주, 2019,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식민사학의 고대사 왜곡과 영토문제』 홍익재단,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제4차 Conference' 자료집.

나행주, 2020,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2012,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2014,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교과서연구』 통권 76.

남상구, 2016,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 20.

남상구, 2016, 「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 한국교원신문(2016.5.1).

박병섭, 2011,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11.

서보경, 2016,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 - 2015년도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51.

서보경, 2020,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한·일 관계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송완범, 2008, 「일본국정역사교과서로 보는 '민족주의'」, 『일본사상』 14.

송완범, 2018, 「일본근대검정교과서의 고대 한반도관련기술 분석」, 『일본연구』 29.

송완범, 2020, 「명성사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력과 내용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2016년과 2017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인터넷자료, 동북아역사재단.

황용섭, 2017,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

Abstract

Descriptions of Dokdo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Na Haeng-Joo

After the revision of the Abe administration's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2006, Japanese history education shifted to emphasizing patriotism and affection. In addition, after the launch of the second Abe Cabinet in 2012, history education and territorial education were further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began in earnest in 2014 with the strengthening of standards and partial revision of the textbook certification system, and Dokdo's history textbooks in 2015, Korea's illegal occupation of Dokdo, and Japan's claims are historically and legally justified, but Korea continues to reject it. The biggest feature of the 2019 certifie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aft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2018 study guide commentary is that more specific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through various data that shows Dokdo is historically a Japanese territory and has undergone legitimate procedures under international law.

Keyword Japanese history textbooks(역사교과서), territorial Education(영토교육), Dokdo-related descriptions(Descriptions of Dokdo 독도기술), government- authorized textbooks(교과서검정),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학습지도요령), Explanatory Notes of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學習指導要領解説)

논문투고일 : 2021. 11. 04.

심사완료일 : 2021. 11. 26.

게재확정일 : 2021. 12. 01.



『조행일록(漕行日錄)』 해제

문경호 공주대학교



초록

임교진의 『조행일록』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조운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래 원문으로만 제공되었으나 2020년에 한글로 국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역된 『조행일록』을 토대로 저자인 임교진의 생애와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선 후기 성당창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조운로 및 호송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조행일록』의 주요 내용과 작성 동기 등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임교진의 생애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을 보기 쉽게 연보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조행일록』에 기록된 조운경로 및 호송 방법, 각종 규정과 조운 과정에서 오고간 문서들에 대하여 간략히 구간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조행일록』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항해는 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조세운송을 책임진 영운관은 뱃놀이를 제외하고는 항해 경험이 전혀 없는 관리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러 지역의 호송리들과 신경전을 벌여가며 한양까지의 험한 여정을 소화해야 했다. 적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오랜 경험을 가진 사공과 격군들을 더러는 독려하고, 더러는 형벌로 다스리며 항해했다. 『조행일록』에는 그러한 영운관들의 고충이 잘 담겨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860년대의 세도정치 기간에도 국가의 조운 시스템은 나름대로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 구간에서 형식적으로 점검이나 호송이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으나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이나 연락망은 매우 철저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또한, 1860년대까지도 공권력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예컨대 조운선단에게 매번 식재료를 공급한 다거나 절차를 어긴 호송리들에게 과거장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거나 각 연안에서 일어난 일이 매우 빠르게 조정의 담당관에게 전달된 사례가 그것이다.

같은 제목의 『조행일록』 2편이 모두 성당창 영운관에 의해 작성된 것은 분명 주목되는 사실이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 볼 때 다른 조창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다른 지역의 조창에서 제작된 조행일록이 더 발굴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조행일록, 임교진, 조운제도, 조운선, 성당창

I. 『조행일록(漕行日錄)』은 어떤 책인가?

『조행일록』은 함열현감 겸 성당창영운관(咸悅縣監兼聖堂倉漕稅領運官) 임교진(林喬鎭, 1803~1864)¹이 1863년에 성당창에서 한양까지 조세를 운송한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임교진은 1863년 3월 27일, 조운선 12척에 조세를 싣고 옹포를 떠나 한양의 광흥창, 군기감, 선혜청 등에 조세를 납부하고 6월 2일에 함열로 돌아왔다. 『조행일록』에는 성당창에서 조세를 징수하여, 배에 싣고, 한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창에서 징수할 때의 폐단을 바로잡은 것을 비롯하여 항해 중에 조운선 한 척이 침몰할 뻔 했던 과정은 물론, 경유한 연해 고을의 호송여부 등 조세 징수와 운송의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만약 조운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의 일기가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행일록』은 성당창 영운관(조세징수 및 조운선 인솔자)이었던 임교진이 성당창에서 조세를 싣고 출발하여 한양 광흥창에 도착할때까지의 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업무수행일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기록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였다. 국가에서 수행한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각 관청에서 처리한 업무의 내용, 양반가의 추수기까지 유형과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국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 수행한 관리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거나 다음 관리들에게 남겨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사행록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다녀온 사신들이 남긴 기록은 훗날에 파견되는 사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례가 되었다.

『조행일록』 또한 그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운 관련 일기로는 허균의 「조관기행(漕官紀行)」², 임교진의 『조행일록』, 조희백의 『을해조행록(乙亥漕行錄)』³ 등이 있다. 허균의 「조관기행」은 그가 전운 관관(轉運判官)으로 임명되어 1601년 7월부터 1602년 1월까지 3창(아산 공진창, 옥구 군산창, 영광 법성창)의 조운을 감독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전운관관은 조운의 과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이다. 따라서 허균은 세 조창의 조운선을 출발시킨 후 자신은 육로를 통해 한양으로 돌아왔다. 반면, 임교진의 『조행일록』과 조희백의 『을해조행록』은 성당창 영운관이었던 두 저자가 직접 조운선을 영솔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조관기행」을 제외하고, 두 일기 모두 성당창의 영운관

1. 임교진의 사망일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었다. 필자는 선행 연구(문경호, 2017, 「林喬鎭의 『漕行日錄』을 통해 본 1863년 聖堂倉의 漕運實態」, 『진단학보』128, 진단학회)에서 1865년에 조두순이 그의 죽음을 고종에게 아뢰고, 정려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1865년 경으로 추정하였으나 『羅州 林氏 大同譜』 1권 454쪽에서 그의 사망일이 1864년 6월 25일임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죽보에 기록된 바에 따라 1864년으로 수정한다.

2. 『檀所覆瓿』 卷18, 「漕官紀行」.

3. 조희백, 2011, 『을해조행록』, 익산문화원.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이 남긴 것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두 일기를 분석해 보면 다른 조창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일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두 『조행일록』 중 먼저 알려진 것은 조희백의 『을해조행록』이다. 『을해조행록』은 1874년 함열현감 겸 성당창조세영운관으로 임명된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이 이듬해 1875년 3월 23일에 성당창을 출발하여 다음 달인 4월 19일 조세를 한양에 납부한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표지에는 『을해조행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내지의 제목은 『조행일록』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조행 과정에서 기록한 일기를 통상 『조행일록』이라고 부른 듯 하다. 조희백의 『을해조행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익산문화원에서 2011년에 한글로 풀어 인쇄하였다.

임교진의 『조행일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4년 무렵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조행일록』은 을해조행록보다 12년이나 먼저 발간된 일기라는 점, 조창에서 조세를 적재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운송할 물자를 정한다거나 한강에 진입한 후 각 창고에 납부할 때 계량을 다시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운송해온 조세의 상태와 도량기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는 등 조세 운송의 절차와 과정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초기에는 연구자들에 한해 원문만 공개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국역하여 출판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 만약 『조행일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더라면 『만기요람』에 수록된 조규의 점검(點檢)·분획(分劃) 조항을 지금처럼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II. 『조행일록』의 저자 임교진

임교진의 본관은 나주, 자는 백신(伯臣)이며, 호는 하정(荷汀)이다.⁵ 1803년(순조 3) 9월 1일 통정대부 한산군수 임영철(林穎喆)과 파평 윤씨 정랑 윤광부(尹光孚)의 따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지은 아버지의 행장 「선고군수공행장(先考郡守公行狀)」에 따르면 그의 고조부는 이조판서 담(潭), 증조부는 상의첨정(尙衣僉正)을 역임한 집(諱), 조부는 동부승지 상원(象元)이다.⁶ 상원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은 영춘현감을 역임한 연호(淵浩)이고, 셋째는 우의정을 역임한 정간공(貞簡公) 한호(漢浩)이다. 한호는 현철(顯喆)과 영철(穎喆)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 연호에게 후사가 없었던 까닭에 둘째 영철을 형의 양자로 보냈다. 이후 영철은 순조 신미년에 벼슬에 나가 관직이 한산군수, 대구통판에 이르렀다.

1817년 임교진은 한 살 연상인 대사간 조석정(曹錫正)의 딸 창녕 조씨와 혼인하여 1824

년에 아들을 낳았으나 8삭만에 나온 탓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825년에 또 다시 아들 을범(乙範)을 낳았으나 환두(患痘, 마마)로 7살에 세상을 떠났다.⁷ 창녕 조씨는 을범을 낳고 1년 만인 1826년에 25세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임교진은 1년 후인 1827년에 다시 경주 이씨 이집재(李集齋)의 딸과 재혼하여 슬하에 찬수, 건수, 회수 아들 3형제와 딸 둘을 두었다. 맏아들 찬수는 1858년(철종 9)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건수와 회수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다. 큰 딸은 한양 조씨 조희일(趙熙一)과 혼인하였으며, 차녀는 해평 윤씨 윤정구(尹鼎求)와 혼인하였다. 그의 큰사위 조희일은 1875년 『을해조행록』을 지은 조희백(趙熙百)의 친동생이다.

그의 이름이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826년이다. 유학(幼學)으로서 입격(入格)하여 처음으로 순조를 알현했다는 기록인데, 이후에도 갑오식년감시초시입격유학 임교진(甲午式年監試初試入格 幼學 林喬鎭)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면 1826년에 생진과 초시에 합격하고, 1837년에서야 복시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대과에 급제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문과 급제는 하지 못한 듯 하다.

그가 벼슬에 처음 나온 것은 1856(철종 7)년 12월 11일이다. 이 때에 종9품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어 부임하였으나 1년 만인 1857년(철종 8) 12월 29일에 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조행일록』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성묘를 마치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한, 그가 의학에 해박한 상주(尙州) 묵방(墨坊) 선비 김정식(金鼎植)을 동행으로 데려간 것도 그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항해 기간 동안 임교진은 김정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과 함열 관아에 있는 가족들의 병에 대한 처방을 받거나 조언을 구했다.

경기전참봉에서 물러난 날 공교롭게도 그는 부사용(副司勇)에 임용되었다. 부사용 역시 조선시대 5위 산하의 종9품 잡직이었다. 1861년(철종 12)에는 종6품으로 승진하여 사용원과 한성부의 주부를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인 1862년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함열현감이 되어 외방에 나왔다. 함열현감은 단순히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아니라 성당창의 조운 책임관을 겸임해야 하는 자리였다. 조운은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도중에 조운선이 침몰하거나 조세가 썩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위험부담이 컸다.

따라서 조운선 영술은 60세의 병약한 그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는 타고난 평온한 성품과 엄정함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도중에 조운선 한 척이 파손되어 침몰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그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 없이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인 1864년(고종 1) 6월 20일에 종4품의 익산군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5일 만인

4. 임교진 저, 이문현 외 역, 2020, 『조행일록』, 국립해양박물관.

5. 임교진의 생애 부분은 문경호, 2017, 「林喬鎭의 『漕行日錄』을 통해 본 1863년 聖堂會의 漕運 實態」,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54-56쪽에 간략히 제시된 것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6. 『荷汀草稿』卷4, 「先考郡守公行狀」, 「先考郡守公府君 先妣淑夫人 合葬墓誌」

7. 『荷汀草稿』卷4, 「亡室淑人曹氏行狀」

1864년 6월 25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장군봉 아래이다.

그의 저술로는 1863년에 본인이 지은 시(詩)와 부(賦), 문(文), 기(記), 책(策), 전(傳), 행장(行狀), 묘지(墓誌) 등을 모아 엮은 『하정초고(荷汀草稿)』 5권과 『조행일록』이 있다.⁸ 『하정초고』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필사 형태로만 전하는 것을 보면 간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하정초고』의 서체는 『조행일록』과 대개 일치한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근검하고 경서와 예에 밝았으며, 효성이 깊었다고 한다.⁹ 늦깎이 관리이기는 했지만 효성스럽고 청렴하여 그의 부음을 듣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나라에서는 영의정 조두순의 건의에 따라 정려(旌閭)를 내려주었다.¹⁰ 그러나 아쉽게도 정려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표1. 임교진 연보

연도	나이	
1803년(순조3)	1	한성부에서 출생
1817년(순조 17) 7월 27일	15	부인 창녕 조씨와 혼인
1825년(순조 25) 8월 4일	23	아들 을범(乙範)이 태어남
1826년(순조 26) 11월 29일	24	유학으로 입격하여 순조를 알현함
1830년(순조 30) 7월 22일	28	아들 찬수(瓚洙)가 태어남
1835년(헌종 1) 9월 9일	33	갑오년 식년감시 초시 합격(甲午式年監試初試及格)
1837년(헌종 3) 3월 8일	35	진사 급제(2등 24위)
1838년(헌종 4) 2월 29일	36	제술 진사 합격(製述之次次上進士)자로 알현
1839년(헌종 5) 4월 9일	37	제술 진사 합격(製述之次次上進士)자로 알현
1839년(철종 1) 9월 6일	37	아들 건수(健洙)가 태어남
1845년(헌종 11) 9월 25일	43	아들 회수(繪洙)가 태어남
1856년(철종 7) 12월 11일	54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에 임명
1857년(철종 8) 12월 29일	55	병으로 경기전 참봉 걸체(乞遞)를 요청
1857년(철종 8) 12월 29일	55	부사용(副司勇)에 임명
1858년(철종 9) 3월 17일	56	아들 찬수가 진사시에 급제함
1861년(철종 12) 8월 5일	59	사옹주부(司穰主簿)에 임명
1861년(철종 12) 12월 12일	59	한성부주부(漢城府主簿)에 임명

8.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책은 賦 2편, 詩 147수, 2책은 詩 137수, 序 2편, 記 5편, 3책은 雜文 4편, 祭文 5편, 書 1편, 策 1편, 箋文 53편, 禮狀 12편, 啓 3편, 檄·上梁文·傳 각 1편, 4책은 說 4편, 辨 3편, 解 2편, 行狀 2편, 墓誌 1편, 雜著 4편, 散言 46단, 5책은 學訂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 『高宗實錄』 卷2, 高宗 2年 6月 10日 癸卯.

1862년(철종 13) 1월 4일	60	경릉령(敬陵令) ¹¹ 에 임명
1862년(철종 13) 5월 29일	60	함열현감 겸 성당창영운관에 임명
1863년(고종 즉위년)	61	성당창 조세를 한양으로 운송, 『조행일록』을 기술함
1864년(고종 1) 6월 20일	62	익산군수로 임명됨
1864년(고종 1) 6월 25일	62	사망,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장군봉 아래에 묻힘

Ⅲ. 『조행일록』을 통해 본 조세의 수납과 운송과정

『조행일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첫 부분은 저자가 함열현감에 부임되어 임지로 내려가 조세를 징수하고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둘째 부분은 조세를 조운선에 신고 금강 옹포(곰개나루)에서 금강 하구까지 나가는 과정이다. 셋째 부분은 금강하구에서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가 한강 하구인 강화 월곶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며, 마지막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각각의 창고에 조세를 납부하고 함열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를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세 징수와 출항 준비

임교진의 『조행일록』은 1862년 5월 29일 그가 함열현감 겸 성당창팔읍조세영운관에 임명되어 함열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당시의 조창 중 해안가의 조창은 전라도 3개(성당창, 군산창, 법성창), 경상도 3개(마산창, 가산창, 삼랑창), 충청도 1개(공진창) 등 7개가 있었다.¹³ 또한, 수참(水站)을 담당하는 조창으로 충주에 가흥창이 있었다. 그 중 성당창은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에 있었으며, 소속된 선박은 총 12척이었다. 성당창에 조세를 납부하는 군현은 함열(咸悅)·고산(高山)·진산(珍山)·익산(益山)·금산(錦山)·용담(龍潭)·남원(南原) 등 8개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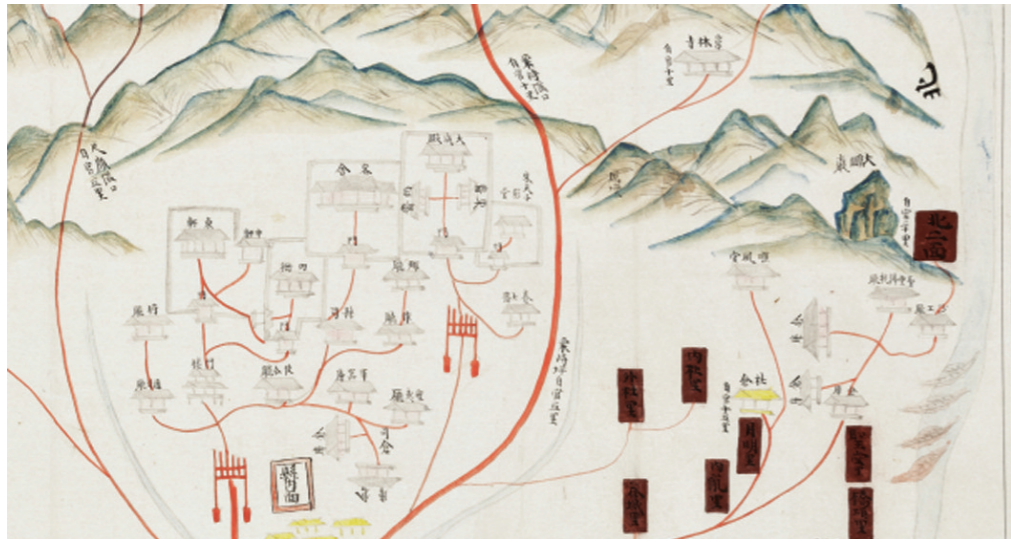
1872년의 함열현 지도에는 성당창이 함열현의 우측에 있으며, 창사 건물이 3개, 봉세청이 1개, 사공청이 1개 그려져 있다. 『조행일록』에 따르면 운봉, 남원, 금산의 창고가 가득차서 곡식을 마당에 적납(積納, 징수한 조세를 마당에 쌓아 두는 것)하였는데, 그 높이가 모두 큰 나무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1872년 지방도에 그려진 세 창고는 아마도 운봉, 남원, 금산의 창고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도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10. 『高宗實錄』 卷2, 高宗 2年 6月 10日 癸卯.

11. 경릉(敬陵)은 성종의 아버지 추존왕 덕종(德宗)과 그의 부인 소혜왕후(昭惠王后)의 합장릉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번지이다.

12. 일정은 임교진 저, 2020, 이문현 외 역, 『조행일록』, 국립해양박물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13. 『萬機要覽』 財用篇2, 漕轉 漕倉.



도1. 1872년 지방도 속의 함열현 관아와 성당창(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¹⁴

조선 성종 무렵에만 해도 전국에는 9개의 조창이 있어 각지의 조세를 조창에 모았다가 관선(官船, 국가의 배)으로 운송해 왔다.¹⁵ 그러나 양난 이후 9개 조창 중 규모가 큰 것들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좀 더 선박이 드나들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되었다. 대신 내륙에 위치한 군현은 포목, 쌀 등으로 납부하고, 연해 지역에 있는 군현들은 해창(海倉)을 두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성당창에 조세를 납부한 8개 군현들은 내륙에 자리하고 있어 독자적인 해창이나 월경지(越境地)를 갖추지 못한 읍들이다.

임교진은 6월 13일에 함열의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동북쪽 20리에 떨어져 있는 창사(倉舍)로 갔다. 창사의 향리들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1862년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해였다. 그해 4월~5월에 인근인 익산, 은진, 연산을 비롯하여 공주, 회덕 일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¹⁶ 또한, 가뭄이 들어 왕이 5월 29일, 6월 1일, 4일, 7일, 10일에 연이어 기우제를 지냈다.¹⁷ 8월 4일에는 홍수가 나서 전주(全州)·태인(泰仁)·익산(益山)·임실(任實) 등의 고을에서 표몰된 가호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8월 28일에도 홍수가 나서 공주(公州)·정산(定山)·석성(石城)·은진(恩津)의 백성들에게

휼전을 내렸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와 봄 가뭄, 가을 장마는 조세를 거둬야 하는 창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임교진은 아전들에게 강압적으로 조세납부를 독촉하기보다는 회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전의 횡포가 극심했던 곡상(斛上)과¹⁸ 타석(打石)¹⁹도 바로잡았다.

조세를 거두는 일은 몹시 번거로운 일이었다. 임교진은 11월 2일에 처음 창고를 열고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여 그해 12월까지 7번이나 직접 성당창에 행차하여 조세 징수를 감독하였다. 성당창은 함열현 관아에서 20리나 떨어져 있었다. 직책은 함열현감이었으나 실제로 고을 일을 맡아보는 것보다 성당창의 일에 매달린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1863년 2월 말이 되어서야 함열과 익산의 전세 및 대동미 수납을 완료했고, 나머지 6개 고을의 전세를 거두는 일이 끝나기까지는 그 후로도 20일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 해 성당창에서 거둔 조세의 총량은 쌀과 콩을 합쳐 12,598석 14두 8승 9홉이었다.

표2. 『조행일록』에 수록된 성당창 12조선의 조세 적재 현황²⁰

구분	구분	都沙工	해당 郡縣과 稅種	적재한 조세의 종류와 수량
제1선	醜	琴南烈	함열현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2선	瞿	金宗燾	함열현 대동미	米 - 1185석 4두 5승 3리 6사
제3선	恒	朴泰赫	남원부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4선	歸	安弼在	남원부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5선	白 (德積 賃船)	崔得壽	남원부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6선	驢	安弼錄	익산현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7선	萬	朴奎燮	금산현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8선	黎	鄭基殷	고산현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제9선	貢(新造)	徐國賢	운봉현 전세	米 - 898석 4승 4합 1사 太 - 193석 10두 8승 1합 7사 3리

14. 왼쪽이 함열현 관아이고, 오른쪽이 성당창이다. 지도 속의 성당창에는 창사가 3채 있고, 영운관이 조세 징수를 감독하는 성당봉세청과 사공청 등이 있다. 동쪽에는 금강으로 합류하는 부곡천에 조운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에는 조운선단이 떠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순풍당이 있다. 지금 창고터는 모두 민가가 들어섰고, 순풍당 역시 터만 남아있다. 순풍당의 주춧돌은 마을 회관 앞에 옮겨져 있다.

15. 9개 조창은 조읍포창, 금곡포창, 소양강창, 흥원창, 가흥창, 공진창, 덕성창, 법성포창, 영산창이다.

16.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5日 丙戌;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12日 癸巳;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16日;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19日 庚子;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20日 辛丑.

17. 『哲宗實錄』 卷14, 13年 5月 29日 庚戌; 『哲宗實錄』 卷14, 13年 6月 1日 壬子; 『哲宗實錄』 卷14, 6月 4日 乙卯; 『哲宗實錄』 卷14, 13年 6月 7日 戊午; 『哲宗實錄』 卷14, 13年 6月 10日 辛酉.

18. 모미(糶米)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운송 도중이나 계량의 실수, 쥐의 피해, 썩는 일 등으로 부족해질 일에 대비하여 1석당 3되씩 더 거둬들이는 쌀을 의미한다.

19. 본래는 1두씩 계량하여 1석의 무게를 맞출 때 모자라는 쌀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1석에 5되씩 더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조선 후기에는 말질하는 색리(色吏)들에게 추가로 주는 인정미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경세유표(經世遺表)』에는 “주자의 사창은 모미 3승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모미를 10두에 1두나 거둔다. 또 이밖에 간색미(看色米) 1두(또는 5승), 낙정미(落庭米) 1두, 타석미(打石米) 5승이 있으니, 비록 귀신같이 간괴(奸慝)한 아전이라 해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고 하여 각종 잡세가 징수 되는 것을 비판하는 구절이 있다(『經世遺表』 卷12, 地官修制 倉廩之儲).

20. 문경호, 2017, 『林喬鎭의 『漕行日錄』을 통해 본 1863년 聖堂倉의 漕運 實態』, 『진단학보』128, 62쪽에서 인용.

제10선	天 (樂安 貨船)	裴權錫	용담현 전세	米 - 827석 13두 6승 3합 太 - 309석 2두 6승 5합 5사
			익산현 대동미	米 - 132석 4두
제11선	德	尹滋中	익산현 대동미	米 - 812석 11두 4승 太 - 294석 11두 6승 5합 6사
제12선	宙	梁宗厦	익산현 대동미	米 - 833석 4두 3합 太 - 295석 1두 5승 1합
총계				米 - 10,937석 10두 2승 3합 太 - 2,974석 9승 4합

조세 거두는 일이 마무리되자 그것을 배에 적재하고 운송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3월 1일에 함열현의 전세를 상선(上船, 영운관이 타는 배)에 실었다. 함열현의 조세를 상선에 싣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다고 한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출발에 앞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순풍제(順風祭)를 지냈다. 3월 13일에 선적이 끝나자 3월 15일에는 조운선을 강에 띄워 옹포로 내려갔다. 조수를 따라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옹포에서 바람과 물때를 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성당창과 옹포 사이에는 토사가 쌓인 곳이 많아 작은 배로 일일이 실어나르느라 7~8일이나 소요되었다.

마침내 3월 26일 오전에 이르러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임교진은 3월 27일 금강의 썰물 때에 맞춰 남여(藍輿)를 타고 포구로 이동하였다. 『조행일록』에 따르면 영운관의 행차는 장대하였다. 영악(伶樂, 관리 행차시에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이 앞에서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도2. 1819년 마량포구에 표류한 일본인이 그린 비인현감 출두 모습²¹

21. 『朝鮮漂流日記』는 1819년 7월 3일, 충청도 비인현(庇仁縣) 마량진(馬梁鎭)에 표류해 온 사쓰마 번의 무사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가 기록한 것이다. 야스다는 비인현감 윤영규의 행차 장면을 비롯하여 조선인들과 생활도구 등을 매우 세밀한 그림으로 남겨두었다. 해당 그림은 『조선표류일기』 4권에 수록되어 있다(이근우 외, 2020,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따랐다. 당시의 장면을 추정케 하는 장면이 『조선표류일기』에 있다.

위의 그림은 표류한 일본인들을 만나기 위해 비인현감이 마량진으로 행차하는 장면이다. 비인현감 역시 함열현감과 마찬가지로 종6품직이었으므로 앞에 따르는 영악이나 가마(藍輿)의 형태는 비슷했을 것이다.

조운선 12척 중 상선(上船)은 함자선(鹹字船)이었다. 상선의 길이는 12칸, 깊이는 5장이고, 너비는 두칸 반이었다. 함자선은 12척의 선박 중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영운관이 항해기간 동안 숙식을 할 수 있는 ‘능파루(凌波樓)’라는 1칸의 판옥도 구비되어 있었다. 판옥 위에는 영운관이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장막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기도 했다.

종선(從船)²²을 타고 상선이 있는 곳에 도착한 임교진은 곧바로 도사공을 서천의 용당진에 보내 용당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당시 지은 용당제문과 해신제문은 『조행일록』에는 없지만 그의 문집 『하정초고』에 전한다.²³ 용당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의 나지막한 산기슭에 있는 제당으로 금강과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이 제사지내는 곳이었다. 제당은 사라졌지만 용당이라 불리는 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2) 금강 구간의 항해

옹포에서 출발한 임교진 일행은 금강을 따라 약 20리를 내려와 한산의 기포, 임피의 서포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하루를 묵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온 세상이 암흑같이 어두웠으며, 간간히 보이는 민가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새벽 1시 무렵이 되어서야 임피현감이 향리를 시켜 편지와 떡, 면, 술, 고기 등을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은 성당창의 조운선이 임피현 앞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인사를 하러 나왔으나 배가 강 가운데에 정박해 있고, 날이 어두워 직접 오지는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뜻밖의 대접을 받게 된 그는 직접 인사를 하러 가려 하였으나 밤이 어둡고 바람이 불어 가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야 서포로 나가 임피현감을 만났다.

다시 배로 돌아온 그는 썰물을 기다렸다가 신시(申時)에 바닷물을 따라 내려가 옥구, 군산진, 장암진을 지났다. 그리고 고을의 경계를 지날 때마다 해당 고을에서 호송(필자주-조운선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일)을 충실히 해 주었다는 내용의 과거장(過去狀)을 발급해 주었다.²⁴ 서천포에 도착한 후에는 장암진(현재의 충남 서천군 장암면 장암진성)에 내려 민가에서 유숙하였다. 성당창 조운선단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암진에서 송어와 대하 등

22. 조운선에 딸린 거도선이라는 배이다. 조운선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육지 가까이에 정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거도선을 두어 조운선과 육지를 오가거나 식량, 물, 쌀감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23. 『荷汀草稿』 권2에 ‘龍堂祭文’, ‘海若祭文’, ‘告海神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용당제문의 원문은 “維龍之靈赫臨茲堂 奄鎮水國前開漕程 顧泰領運十二巨艘八州民賦 王國所需神其另佑晏風順俾無多日穩達 京漢茲陳不腆敬禱心誠齋舉高帆恭俟靈應”이다.

24. 문경호, 2017, 『『漕行日錄』을 통해 본 朝鮮 後期 聖堂倉의 漕運路와 漕運船 護送 實態』 『도서문화』 49,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원, 24-33쪽.

을 보내왔다. 이처럼 임교진은 배 안에서 숙박하기도 하고, 더러는 육지에 내려 민가에서 유숙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해당 고을에서는 해산물을 반찬으로 보내왔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해읍(海邑)에서 조운선에 반찬거리를 보내는 것은 상례였다고 한다. 옥구 관아에서는 도미와 준치, 생오징어, 병어, 생대하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장암진에서 하루를 보낸 일행은 다시 출발 준비를 하고 서천포의 선소(船所)²⁵를 떠났다.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동풍을 만나 옥구의 추해에 도착하였으나 썰물 때문에 모래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닻을 내리고 하루를 보냈다. 강물을 따라내려오는 동안에는 동풍이 유리했지만 바다에 들어가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풍이 불어야 했다. 옥구를 떠나면 곧 바다로 들어서야 했으므로 3경 무렵이 되자 해양제(海若祭)를 지냈다. 해양은 『장자』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이다. 순탄하게 항해하려면 좋은 날씨와 그때마다 필요한 바람의 방향이 있었다. 뱃사람들은 해양이 그것을 관장한다고 믿었으므로 해양이 좋아하는 검은 돼지고기를 제수로 써서 제사를 지냈다. 강을 따라 내려온 배들이 바다로 들어서기 전에 해양제를 지낸 사실은 1875년에 제작된 『을해조행록』에서도 확인된다.

3월 29일 오죽도와 조도 두섬의 사이를 지난 일행은 가도(駕島,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가도공원)에서 바람과 물때를 기다리느라 약 5일을 머물렀다.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을 따라온 세 아들과 함열 관아의 관속들을 보내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근심스러운 일이었다. 4월 1일 함열관아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송별하기 위해 왔다. 그들이 타고온 배에 세 아들을 태워 함열관아로 보냈다.

3) 서해 구간의 항해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남풍을 기다리던 일행은 4월 4일이 되어서야 다시 닻을 올렸다. 4월 4일은 임교진의 어머니 파평 윤씨의 기일(忌日)이었다. 그는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죄송함에 육식을 금하고, 몸을 정결히 한 후 관복을 입고 앉아서 제사를 대신하였다.

가도를 떠난 선단은 고군산도를 지나 서천의 연도를 바라보며 개화도(開花島)²⁶로 나아가 개화도 하촌에 정박하였다. 개화도는 죽도(竹島)²⁷의 옆에 있는 섬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로 내려온 함열의 백성들을 만났다. 함열의 주민들이 개화도까지 나가 머물며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4월 4일과 5일은 정사월의 경진일과 신사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뱃사람들이 비를 걱정하

였다. 『조행일록』에는 이와 유사한 뱃사람들의 상식 또는 금기에 관한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예컨대 초하루에 비가 내린다면 임진(壬辰), 계사(癸巳), 경진(庚辰), 신사일(辛巳日)에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 등이다.²⁸ 결국, 개화도를 떠나 북상하려면 그와 일행들은 다시 개화도와 죽도 사이에 조운선을 정박시켰다. 뱃사람들은 배에 머물렀으나 임교진은 죽도에 내려 민가에서 유숙하였다.

4월 5일은 비를 피했지만 6일 밤부터는 비가 내렸다. 동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더니 만자선(萬字船) 1척이 풍랑에 휩쓸려 닻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내려가다가 암초에 걸려 배가 부서졌다. 모든 배의 사공과 조졸들이 종선을 타고 만자선 아래로 달려가 곡물을 내렸다. 본래 조운선이 부서지면 호송 지역의 수령이 도착하고 난 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운의 규칙이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수령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으나 임교진은 사공과 조졸들을 시켜 곡물을 내리게 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배가 부서지고 곡물은 바닷물에 빠졌을 것이다. 그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곡물은 무사하였으나 곡식 천 석을 실을 수 있는 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서천군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탓에 서천군수도 달려와 자신이 오기 전에 곡물을 내린 것에 책망하였다. 그는 서천군수를 납득시키고, 배를 구하느라 접고생을 해야 했다.

임교진은 만자선에 실었던 곡식은 죽도에 쌓아 두고 사람들을 두어 지키게 한 후 나머지 배 11척을 이끌고 고대도에 정박하였다. 고대도에는 예감고(禮監考)가 있어 안홍첨사가 조운선의 곡식을 점검하는 동안 영운관이 잠시 설 수 있었다. 고대도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은 영운관을 위해 찬거리를 상납하였다. 섬 주민들의 호수가 줄고, 잔약해진 것을 본 그는 매 끼니 때마다 반찬을 바치던 것을 하루에 한끼만 바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처럼 그의 청렴함과 합리적인 성품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만자선의 곡식을 실어오기까지 임교진은 계속 고대도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임교진이 지나가는 당두리선을 잡아, 신고 있던 물건을 내리고, 만자선의 곡물을 옮기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중후반까지도 영운관이 지나가는 선박을 잡아 조운에 이용할 만큼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부 구간에서 호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조규에 따라 제반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대신 이틀 동안 경강선을 빌린 비용으로 9냥을 지불했다. 지나가는 배를 잡아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임대료는 규정에 따라 지급했던 것이 관례였던 듯 하다.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상당창 조운선은 연이어 고대도에 머물며 만자선을 기다렸다. 기다림에 지친 임교진은 김정식과 함께 고대도의 모래 사장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흥합 껌데기로

25. 선소(船所)는 해안가에 설치된 일종의 해군 기지를 일컫는 말이다. 선소에는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과 무기를 보관하는 집물고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서천포의 선소는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화산천 하구 선소마을에 있었다(문경호, 2020, 『태안 인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해양문화』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4쪽).

26.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이다.

27. 전북 군산시 옥도면 죽도리이다. 개야도의 서쪽과 죽도의 동쪽은 마주보며 원의 형태를 하고 있다. 배가 정박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28. 문경호, 2018, 『조행일록』을 통해 본 19세기 상당창 조운선의 항해술과 항해의례, 『도서문화』 51,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2-29쪽.

수저를 만고, 소라껍질로 술잔을 만드는 것은 청렴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노인을 만나 그가 잡은 갈치, 조기, 오징어, 가오리 등을 구경했다. 별모양으로 생긴 심벽색(深碧色) 불가사리를 보고 신기한 마음에 기록을 남겨두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불가사리를 사패어(絲牌魚)라고 불렀던가, 가오리의 침을 나무에 박아두면 나무가 죽는다는 속설이 있다는 내용도 수록해 두었다.

4월 19일 이에 이르러 고대도에서 출항한 조운선은 안면도와 안흥진을 지났다. 안흥진에는 제승루(制勝樓)라는 명소가 있었으나 일정상 제승루에 오르지는 못했다. 대신 가도(假島)와 주도(廚島), 단도(端島) 사이를 지나 관장목으로 향했다. 주도는 현재 신진도의 남쪽에 있는 섬이고, 단도는 미상이다. 그러나 주도과 단도에 안흥진의 옛 터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두 섬은 현재의 신진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흥진성을 쌓기 전에 신진도에 안흥진 건물들을 먼저 지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때 신진도를 구진(舊鎭)이라고 불렀었다.²⁹

안흥진, 주도, 단도 사이를 지난 조운선단은 마침내 서해를 운항하는 배들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안흥량 관장목(關障項)을 통과했다. 관장목은 수심이 바닥에 석맥(石脈)이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가 전복되기 일쑤였다. 일행은 조수가 7분 이상 차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관장목을 지났으나 뿔뿔히 흩어져 먼저 간 5척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관장목을 지난 후에도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자 임교진은 제문을 지어 해신제를 지내고, 축문을 바다에 던졌다. 신기하게도 제를 지낸 후 파도의 급한 기세가 누그러졌다.

그가 탄 상선과 나머지 6척은 파도를 피해 당진 난지도 옆의 포구로 들어갔다. 선원들이 물을 길러 갔다가 손바닥 만한 벽초잎 2개와 해당화 수십 가지를 따다가 바쳤다. 육지에는 봄이 완연했지만 조운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아직 추위와 싸워야 할 만큼 두 공간의 온도차는 컸다.

당진에서 하루를 묵은 조운선은 곧이어 덕적산(덕적도)과 자오도(자월도) 사이를 지났다. 연흥도에서 하루를 묵은 조운선은 다시 출발하여 팔산도(팔미도)에 머물렀다. 그리고 곧이어 영종도와 대궐도(월미도)³⁰ 사이를 지나 강화로 올라갔다.

안흥량을 넘은 조운선들은 미리 영종진에 도착하여 상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당시 조규(漕規)에 따르면 곤장을 맞아야 하는 중죄에 속했다. 영운선을 버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작대법(作隊法, 필자주-조운선은 대오를 지어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다.)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임교진은 모든 배가 무사하였으므로 별점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다. 영종도 인근에 정박한 조운선은 영종진, 제물포, 인천, 부평 등을 지나 염해(강화와 부평·통진 사이의 바다)로 들어섰다. 염해는 손돌목을 거쳐야 하는 험로이다. 따라서 황산도 아래에서 줄지어 배를 매고, 만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신시(申時, 15~17시) 말에 초지진과 손돌목을 지났다. 일행은 갑곶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바닷물 위로 멀리를 내민 상괭이(토종 돌고래)를 보았다. 그리고 월곶진 앞에 정박한 후 강화의 명소인 월곶진 연미정(燕尾亭)에 올랐다.

4) 한강 하구 구간

월곶진에 머무는 동안 임교진은 충청감영, 호조, 선혜청에 보고한 첩문의 답장을 모두 받았다. 죽도의 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중 충청감영의 회제(回題)에는 곡식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실은 것에 대해 문책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곧 그것이 책임을 면하려고 사실 끝대로 보고한 서천 군수의 첩문 때문이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세곡이 모두 무사하였으므로 걱정할 것은 없었다.

조운선단이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한강의 곳곳에 모래턱이 쌓여 자칫 길을 잘못들면 모래턱에 뱃바닥이 박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4월 말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어 거의 매일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다시피 했다. 성당창 조운선들은 각 고을의 호송리들의 안내를 받아 배를 대기 좋은 곳에 머물고 있다가 서풍을 만나면 밀물을 따라 서서히 한양을 향해 항해하였다.

『조행일록』에는 월곶으로부터 한양까지 선박이 정박한 곳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해문(월곶진) → 강진포(통진 강녕포) → 조강포(통진 조강포) → 장릉(교하) → 시암리(김포 하성면 시암진) → 후평리(김포 하성면 후평리) → 반석리(교하 반석포)와 백암리(고양 백석리) → 절류리, 포례리 → 현암리 통포 → 석동목 → 행주 → 양천목 → 염창목 → 양화진 → 서강 검문소 → 광흥창

다음의 지도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동국여도」의 경강 일대 부분이다. 행주로부터 염창, 공암진, 양화진, 광흥창, 군자감 등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잘 표시되어 있다. 행주와 공암진 사이에 있는 위어소(鰲魚所)가 눈에 들어오는데, 위어소는 행주나루가 있던 곳에 위어를 잡아 상납하기 위해 둔 기관이다. 공암진의 건너편에는 양천의 공암이 웅장하게 그려져 있다. 공암과 양화진 사이가 모래턱으로 유명했던 염창목이다.

한양까지 조세를 무사히 운송했지만 임교진은 그후에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빴다. 먼저 호조에 조운선이 도착했다는 도박장(到泊狀)을 보내야 했고, 호조 판서를 만나 무사히 조세를 운송해 왔다는 보고를 올려야 했다.

29. 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해양문화』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1쪽.

30. 『輿地圖書』에 행궁 관련 기록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미도에 있으며, 자좌오향(子坐午向, 정남향)이다. 정전 8칸, 동서랑 4칸, 서월랑 4칸, 남월랑 7칸이며, 수직칸 3칸, 내중문 1칸, 외중문 1칸이다. 옛 임해사터에 있다. 인천부사 윤부(尹敷)가 창건하여 국방에 대비하였다. 그 후 본진첨사(영종진첨사) 한석량이 증수하였다. 수직군이 세 명있어 항상 거주하는데, 신역과 호역을 면제한다.”(『江都府誌』 『永宗防營圖誌』 行宮) 윤부의 인천부사 재임 기간은 1655년 5월부터 1658년 4월까지이다.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영조 시기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承政院日記』 英祖 8年 閏5月 13日 戊戌).



도3. 「동국여도」의 경강부 임진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운선단이 도착하자 서강의 점검소에서는 5월 9일 각 선의 사공을 모두 모이게 한 후 점검을 시작하였다. 점검 방식은 ① 호조판서가 배의 선호가 쓰인 깃발을 뽑아 배 아래에 ×자형 표기를 한후 광흥창이라는 세 글자를 쓰면, ② 광흥창 관원이 그 배에 올라가 제비를 뽑아 쌀과 콩을 각각 한 섬씩 임의로 가져오고, ③ 무작위로 뽑혀온 쌀과 콩의 부피와 곡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형태였다.

호조 판서의 점검이 끝난 후에는 호조의 아전이 남은 선박의 사공들을 모이게 하여 차례대로 계단에 올라와 제비를 뽑게 하였다. 사공들은 자신들이 뽑은 제비에 쓰여진 대로 별고(別庫),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별영(別營) 등에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동미를 싣고 간 선박들은 납부하는 곳이 선혜청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은 필요하지 않았다.³¹

『조행일록』에 따르면 별고는 모든 사공이 원하는 곳이었고, 별영은 모두 회피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납부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별영의 창고지기들이 각종 트집을 잡아 뇌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공들의 추첨에 따라 각 선박들이 싣고온 조세를 납부할 창고가 정해지자 임교진은 시임 및 원임 삼대신(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의 세 당상을 뵈고 사례하였다. 그리고 본래 친분이 있었던 조두순과 만나 죽도에서의 조운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상동의 큰 사위(조희백)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정동의 둘째 딸 집에 가서 머물렀다.

5월 11일이 되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다. 햇볕이 들 때에만 곡식을 내릴 수 있었

으므로 모든 조세를 다 납부하기까지는 보름이나 소요되었다. 마침내 5월 26일이 되어서야 모든 조세를 납부한 임교진은 5월 27일 새벽에 궐에 들어가 하직하고, 서울까지 마중을 온 둘째 아들과 함께 함열로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시포, 안곡, 사천 등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임영철)와 고조부(임세집), 증조부(임상원) 묘소에 성묘하고, 진천과 양지에 있는 다른 묘소에도 성묘하려 하였으나 장마로 물이 불고, 병세가 악화되어 가지 못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함열 관아로 돌아온 날은 6월 2일이었다.

IV. 『조행일록』의 사료적 가치

『조행일록』은 조선후기 성당창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항로 복원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으로만 남은 조선후기 조운의 여러 가지 관행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조행일록』을 통해 성당창에서 8읍의 조세를 배에 운송하는 방식이나 영운관의 거처, 호송방식, 조운선이 조난했을 때의 긴급조치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의미만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행일록』은 19세기 중후반 성당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 조운제도의 운명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운제도가 처음으로 정착한 것은 고려 성종 무렵이었다. 이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고려 초에 정착된 조운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창에서 조세를 수납하여 수도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징수한 조세를 조창에서 어떻게 수납했는지, 수납한 조세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조운선에 적재했는지, 운송해 간 조세를 수도에 납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등 구체적 방안도 알기 어렵다. 그러한 아쉬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조행일록』이다. 『조행일록』에는 12척의 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각 읍의 전세와 대동미를 싣기 위해 제비를 뽑는 과정, 바닷가의 군현에서 조운선을 호송하는 방법, 수도에 도착한 조운선이 운송해온 곡식의 점검을 받고 각 창에 납부하는 방법 등이 매우 상세하다. 만약 『조행일록』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과정들은 기억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둘째, 『조행일록』에는 조운선에 승선한 인원과 조운선단의 규모 등이 잘 소개되어 있다. 일록에 따르면 조운선 1척에는 선장 1명과 15명의 조졸이 배정되어 있었다. 조졸들은 쌀을 싣고 내리는 일과 함께 급히 운행해야 하는 구간에서 노를 젓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그들을 격군이라고도 했다. 조운선단은 영운관이 타는 상선 1척을 포함하여 총 12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1. 문경호, 2017, 『林喬鎭의『漕行日錄』을 통해 본 1863년 聖堂倉의漕運實態』, 『진단학보』128, 70-74쪽에서 인용.

각각 적재한 곡물의 양은 대부분 1100석이 넘었다. 이는 적재량의 상한선을 1000석으로 규정한 조운 규정보다 많은 양이다. 이처럼 많은 양을 적재한 것은 모미(운송과정에서 흘리는 쌀), 한양 도착 후에 혹시나 계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 각 창고의 실무자들에게 줄 인정미, 뱃사람들이 조운 기간 동안 먹어야 하는 양미(糧米, 식량) 등을 덧실었기 때문이다. 규정보다 10%이상을 더 신고도 특별히 운항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당시의 조선 기술이나 운항 기술이 이전보다 한층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셋째, 『조행일록』은 19세기 중후반까지도 국가의 공권력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락시스템, 보고체계, 법의 집행 과정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호송을 성실히 했다는 증거로 군현에는 과거장(過去狀), 대호송관인 첨사에게는 호송장(護送狀)을 발급해 주었으며, 한양에 도착한 후에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도박장을 비롯하여 장발장(裝發狀), 감합기(勘合記), 호송장(護送狀) 등이 실제로 잘 발급되고 있었다. 이는 조운의 모든 과정이 문서 행정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심지어 임교진은 가도에서 만자선이 침몰할 위기에 놓이자 지나가는 경강선을 잡아서 그 배의 곡식을 내리고, 조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때 영운관은 진의 향리, 마을의 동장 등을 매개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물론, 사선(私船)을 빌려 쓸 때는 임대 기간을 계산하여 반드시 값을 지급하였다. 다만, 조운선 호송을 맡은 연해의 고을에서 제대로 호송을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그 경우 영운관은 직접 지방관을 책망하지는 못하고, 향리를 불러다 곤장을 치거나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 하고 있다.

넷째, 『조행일록』은 1862년의 농민봉기가 일어난 해에도 조세의 징수와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행일록』이 작성된 시기는 1862년 입술농민 봉기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임교진의 일기에는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성당창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하는 익산의 경우 임교진이 함열현감으로 내려가지 불과 몇 달 전에 큰 소요가 일어났었다. 그렇지만 임교진의 일록에는 기록 내용이 없다. 임교진은 그의 문집에 삼정 문란의 해결책을 철종에게 올릴 만큼 당시의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의 일기에 1862년의 농민봉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1863년에는 성당창뿐만 아니라 군산창, 법성창 등 호남 3창의 조운선이 한 척의 침몰사고도 없이 모두 정상적인 양의 세곡을 모두 운송해 와서 한양의 창고에 납부하였다는 점이다. 임교진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근년에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다섯째, 『조행일록』에는 조운선의 크기와 영운관의 숙소로 마련된 관옥의 구조 및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임교진은 일록에 자신이 탄 배의 크기와 숙소에 대한 기록을 매우 상세히 남겼다. 영운관의 처소는 쌍호(雙戶, 두쪽 미닫이 문)가 달린 1칸 규모의 능파루라는 방이었으며, 바닥에는 담뱃잎과 쪽으로 만든 담요를 깔아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또한, 바깥은

곡식 가마를 층층히 쌓아 계단을 겹하게 하였으며, 능파루 위에는 차일을 치고 영운관이 앉을 의자를 마련해 두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안락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여섯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운선단이 지나면 호송을 맡은 고을에서 반찬이 될 만한 해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운관과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상을 장만하여 배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리를 시켜 준치·도미·전어·생대하·생오징어·병어(옥구), 송어와 대하(장암진), 복어(태안), 말린 조개(남양) 등 다양한 종류의 어물을 마련하여 보냈다. 남포의 경우에는 특산물인 오석 벼루를 2개씩 영운관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다. 거꾸로 영운관이 호송관에게 물자를 나눠주는 일도 있었다. 예컨대 임교진이 고대도에 머물 때 마량진 첨사가 병을 앓는데 약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가진 차와 약 등을 보내준 것이 그에 해당한다. 약으로 차를 함께 보내준 것이 인상적이다.

일곱째, 사공과 격꾼은 조운 기간 내내 배에 머물렀지만 조운선의 영솔을 맡은 영운관은 간혹 육지에 내려 민가에 유숙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리가 머무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고대도에서 머무른 예감고라는 건물이 유일했다. 예감고에 머무는 기간 동안 고대도 주민들은 영운관을 위해 반찬 거리를 제공해야 했다. 나머지는 깨끗한 민가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영운관이 밤을 보내거나 쉬었다가 오는 장소로 이용했다.

여덟째, 『조행일록』에는 19세기 후반 서해안의 어장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인천의 팔산도(팔미도, 인천 중구 무의동 372) 앞에는 준치가 잡혀서 고깃배들이 잔뜩 모여서 준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홍주목과 서천 사이의 연도(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는 어살漁箭이 있어 100척 정도나 되는 배들이 일자로 늘어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개화도에는 함열 백성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와서 머무르고 있기도 했다.

아홉째, 『조행일록』에는 조운선이 운항하는 기간 동안 거행된 각종 제례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임교진은 조운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기간 동안 성당창의 순풍당에서 순풍제를 지내고, 서천의 용당진에 조감과 도사공을 보내 용당제를 지내게 했다. 또한, 금강에서 바다로 나오자마자 해양제를 지냈으며, 파도가 높이 일자 파도를 가라앉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제사는 제물을 차리고 제문을 읽는 형태였는데, 당시 임교진이 지은 제문들이 『조행일록』과 그의 문집 『하정초고』에 있다.

끝으로 임교진 개인의 성품에 대한 자료들도 곳곳에 남아있다. 예컨대 4월 4일에 어머니 제삿날을 맞이하자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장면, 함열 관아에 있는 가족들이 병에 걸리자 동행인 김정식에게 약방문을 구해 보내면서도 혹시도 병이 깊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장면, 4월 8일 등석에 조운선에 달린 등불을 보면서 손자들이 함열관아에서 등을 달아놓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흐뭇해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 납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부모님 묘소에 성묘하면서 생전에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아파 하기도 했다. 그

해가 회갑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북받쳤던 것 같다. 그 외에 조운선 한 척이 표몰될 위기에 놓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모습 등에서는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서의 모습도 보인다.

또한, 임교진이 성당창을 떠난 후 함열 관아에서는 거의 날마다 문안사(問安使)를 보내 함열현의 시급한 일이나 가정사를 상세히 보고하였다.³² 임교진은 문안사를 통해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지방관이 가족들을 데리고 부임하면서 현감의 가족들이 현의 물자를 토대로 살아가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사불분리의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행일록』은 당시의 제도와 사람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좀 더 발굴되고 연구된다면 조운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惶所覆菑藁』.

『荷汀草稿』.

『高宗實錄』.

『萬機要覽』.

『哲宗實錄』.

『經世遺表』.

『朝鮮漂流日記』.

『輿地圖書』 『江都府誌』 『永宗防營圖誌』.

『承政院日記』.

고동환,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2015.

나주임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6, 『羅州林氏大同譜』, 회상사.

조희백, 2011, 『을해조행록』, 익산문화원.

임교진 저, 이문현 외 역, 2020, 『조행일록』, 국립해양박물관.

이근우 외, 2020,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문경호, 2017, 『林喬鎭의 『漕行日錄』을 통해 본 1863년 聖堂倉의 漕運 實態』,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문경호, 2017, 『『漕行日錄』을 통해 본 朝鮮 後期 聖堂倉의 漕運路와 漕運船 護送 實態』 『도서문화』49,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문경호, 2020,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해양문화』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경호, 2018, 『『조행일록』을 통해 본 19세기 성당창 조운선의 항해술과 항해의례』 『도서문화』51,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안길정, 2008, 『『조행일록』으로 본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 『사림』 29, 수선사학회.

32. 4월 7일~9일 3일간 연속해서 아들들이 함열 관아에서 보낸 편지를 4통이나 받았다. 편지에는 큰 아들의 병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열이 난다는 소식,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오른쪽 목에 통증이 생겨 증기가 생길까 걱정이라는 소식, 큰 딸은 입에 병이나서 통증이 있는데 오래 낫지 않아 걱정이라는 등의 소식이 적혀 있었다. 임교진은 편지를 받고 김정식에게 자문을 받아 약방문을 보내주었다. 그 외에 공적인 일로는 떠나면서 보낸 장발장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있었다.

Abstract

A sketchy explanation about Chohaengilrok(漕行日錄) written by Im Gyo-jin

Mun Gyung-ho

Im Gyo-jin's Chohaengilrok, exhibited at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s a valuable resource that shows the way the Tax Shipping System was operated in the 1860s. The Chohaengilrok written by Im Gyo-jin is a kind of daily record for official affairs which described the details of transporting the tax crops from Woongpo to Gyeongchang by the author becoming the Hamyeol prefecture governor and transporting official of Sungdangchang. The Chohaengilrok is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was a daily written vivid record by the transporting practitioner when the most of the Tax Shipping System records were limited to the nation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on the tax transporting laws, responsibilities on the treasury. The reason of keeping this type of daily record by Im Gyo-jin seems rather to prepare against the accident could be taken place in the course by recording the weather, maritime conditions and assuring carry by the carrier official than to write his personal feeling and memories. Because the transporting officials were awarded the prize after finishing the transportation safely but they were forced to be punished according when they lost the tax crops.

The Chohaengilrok seems to be similar with the EulhaeChohaengilrok(乙亥漕行錄) written 12 years later, but there are a few differences.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the latter was made by focusing on the Tax Shipping System courses, but the Chohaengilrok provides mor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procedures and real situation of tax transportation at that time because the tax delivering procedures such as procedures of starting from the origin and paying the tax after arrival at Hanyang were described comparatively in detail. The Chohaengilrok describes in detail the procedures of drawing to pay to respective Chang(Warehouse), checking the conditions of corp, counting the quantity and delivering the transported tax crops to tax warehouse after arriving at Gyeonggang. In this point of view, the Chohaengilrok could be evaluated as the most specific and oldest source out of the records related to the tax transportation conveyed till today.

Keyword Im Gyo-jin, Chohaengilrok, Tax Shipping System, Sungdangchang

『고지도, 종이에 펼쳐진 세상』의 다양한 지도 읽기

이근우 부경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750점의 각종 지도를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사료적인 중요성과 예술적인 가치도 함께 갖춘 100여 점을 추려서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고지도, 종이에 펼쳐진 세상』서양편·동양편, 2020년). 두 책에 실린 지도 중에는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다. 다양한 지도들을 마땅히 독자들께서 직접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적 지식을 몇 가지 적어볼까 한다.

I. 서양편

서양편에서는, 1) 16세기, 2) 17세기, 3) 18세기, 4) 19세기, 5) 20세기 및 6) 항해기로 분류하여 소장 자료를 제시하였다. 시대별로 지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기에 좋은 배열이다. 실로 풍성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자료에 대하여 칼라 사진을 제시하였고, 흥미로운 그림을 발췌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하고, 확대한 그림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각 도면마다 친절한 해설이 달려 있다. 누구라도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선 지도가 나타낸 지리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대체로 한국(자료30·35·49), 중국(자료21·24·35-1·41·48), 일본(자료5·18·37·39), 아이슬란드(자료3), 지중해(자료1·7), 태평양(자료13·38), 아시아(자료4·8·11·14·15·19·22·23·25·26·27·45·46), 남·동아시아(자료6·28), 동아시아(자료10·29·31·32), 유라시아(자료20), 세계지도(자료2·9-1·20·34·44·47·136)로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서양편에 수록된 지도를 음미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㉓ 나침판의 사용
- ㉔ 경도의 확정
- ㉕ 각종 도법의 등장

1. 나침판과 포르톨라노 해도

유럽에서는 14기에 이르러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가 가능해졌다. 종래 연안을 따라 항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원양에서도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항해함으로써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침판이 보급되자, 해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도의 여러 곳에 컴퍼스 로즈(compass rose)라고 부르는 나침판 형상을 배치하고, 거기서부터 최대 32개에 이르는 항

정선(loxodrome)을 나타낸 새로운 유형이 출현하였다. 이를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한다(서양 편 <자료1·4·7·13·17> 참조).

그러나 포르톨라노 해도에도 한계는 있었다. 포르톨라노 해도는 바다가 평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중해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곡면을 항해해야 하는 대양 항해에서는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자료1> 「바르톨로메오의 포르톨라노해도」에는 모두 6개의 화려하게 장식된 컴퍼스 로즈가 그려져 있고, 32개의 방위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7>의 「몬노의 해도」에도 지도의 상단과 그 아래 여러 곳에 컴퍼스 로즈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가진 해도는 단순히 항해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후와 귀족들의 위세품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적인 관념을 반영한 마파 문디(mappa mundi)라는 지도가 장식성을 갖춘 지도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가 되자, 실제 항해에 이용할 수 있는 포르톨라노 해도가 각광을 받게 된다. 이로써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종교적인 세계로부터 세속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신앙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시대로부터 각종 물품을 교역하기 위한 항해의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지도의 외관도 바뀌게 된다. 마파 문디는 동쪽을 위로 그렸고, 그 동쪽 끝에는 에덴동산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르톨라노해도는 나침반의 자침이 북쪽을 향하므로, 북쪽을 위

로 그렸고, 항해의 무대가 되는 지중해 등의 바다가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북쪽을 위로 하는 지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바로 나침반에 의한 항해였던 것이다.



도1. 헤리퍼드 성당의 「마파 문디」(1300)

2. 경도의 확정

지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경도의 확정이다. 현재 우리가 어떤 지점을 특정하기 위하여 흔히 경도와 위도에 의한 좌표값을 사용한다. 그 중 위도는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낮이라면 태양의 남중고도, 맑은 밤이라면 북극성과 같은 별의 고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도는 다르다. 특히 항해하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정확한 경도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도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가 과장되었고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일본까지의 거리가 4,300km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모한 항해에 나섰다. 실제 거리는 19,300km였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기에,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의 서쪽에 도착했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카리브해에는 서인도제도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1572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정확한 경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경도를 확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목성과 그 위성 사이에 일어나는 식(蝕)을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그 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정밀한 관측장치를 갖춘 육지에서는 괜찮았지만,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번거로운 방법이었다. 16세기 이후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천문학자들이 승선한 것은 바로 정확한 천체 관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항해 중 정확한 경도 측정은 기상조건이나 온도 변화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인 해상시계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존 해리슨이 태엽을 채용하여 만든 H 시리즈의 해상시계(크로노미터)를 발단으로 하여, 라컴 켈들의 K 시리즈를 거쳐, 존 아놀드와 토마스 언쇼에 의하여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경도 측정 방법의 주류를 이루었다. 아놀드가 해상시계 공장을 개설한 것이 1785년이므로, 정확한 경도를 간편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확보하는 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상시계는 1815년에는 5,000개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도 고급시계에는 크로노미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 20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도달한 시계의 정밀도를 상징한다. 대체로 24시간 기준 5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금속 세공 기술과 과학이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경도 측정의 성과는 이 책에 수록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8>의 「혼디우스의 중국 지도」나 <자료10> 「블라우의 중국지도」에서는 한반도의 좌우측으로 지나가는 선 아래 150과 16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서 18세기 중엽의 보웬의 최신 세계해도에서는 한반도가 120도와 1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자료34>). 여러 지도에 경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 경선들은 반드시 현재의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경선의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경도를 세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동경 180도, 서경 180도로 나누는 방식이 정착되기 전에는 전체를 360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18세기까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자료35>의 「프레보의 『여행의 역사』」에 수록된 한국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142도에서 149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하단에 'Longitude de l'Isle de For'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행복의 섬 현재의 카나리아제도를 자오선 즉 경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계산을 해보면 현재의 정도보다 약 17도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프랑스는 본초자오선이 영국의 그리니치로 합의되기 전까지는 파리를 자오선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리니치 자오선과 약 2.4도 차이가 난다. <자료39> 「보웬의 일본 지도」를 보면 대마도 서쪽으로 130도 경선이 지나간다. 이 경선은 파리를 기준으로 그어진 것이다. 소개된 많은 지도를 우리나라의 정도를 현재와 같이 정확하게 나타낸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지도의 이면에는 인간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각고의 노력 끝에 획득한 지식이 숨어 있다.

이러한 비교와 음미가 가능한 것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지도들을 국립해양박물관의 노력으로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3. 다양한 도법

좁은 범위를 그릴 때는 특별한 도법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넓은 지역 특히 세계지도를 그리려고 하면, 일정한 원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제작에 도법을 도입한 원조는 프톨레마이오스(프톨레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원추도법으로 나타내었다(<자료 20>). 이 도법은 현재도 북반부 전체와 같이 넓은 범위를 담는 지도에서 끝잘 쓰이고 있다.

한편 1569년에 고안된 메르카토르 도법의 최대 장점은 방위가 정확한 등각도법이라는 점이다. 즉 지도상에 도착지와 출발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세계지도 제작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도법이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시누소이드도법이라는 고위도 지역의 왜곡을 줄이는 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도법이 고안되었다. 구체인 지구를 평면에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 다른 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도에 도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고지도 - 서양편』에 실린 지도들을 중요한 특징으로 분류해 보면, ㉓ 아무런 기준선이 없는 지도, ㉔ 나침반 사용에 편리한 포르톨라노 해도, ㉕ 위도와 경도만 표시한 지도, ㉖ 포르톨라노 해도의 테두리에 경도·위도를 표시한 지도, ㉗ 시누소이드 도법·원추도법·평사도법·메르카토르 도법 등 특정한 도법에 의거하여 그려진 지도 등이 있다.

㉘ 자료3(오르텔리우스의 아이슬란드 지도), 자료5(테이세이라의 일본 열도 지도) 등

㉙ 자료2(윈스터의 세계지도), 자료7(몬노의 해도) 등

㉚ 자료4(랑그렌의 동인도 지도), 자료6(오르텔리우스의 동남아시아 지도) 등

㉛ 자료13(안소니우스의 태평양 해도), 자료17(구스의 『해도첩』), 자료19(퀸렌의 아시아 지도), 자료50(『두라도의 해도첩』) 등

㉜ <자료14·15>(상송의 아시아 지도), <자료36>(브루크너의 『새해도첩』), <자료44>(모이데이의 항해용 세계지도), <자료47>(리잘스의 세계지도) 등

이처럼 『고지도 - 서양편』에서는 지도가 제작 혹은 간행된 연대를 중심으로 배열하였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볼 수도 있다. 눈이 밝은 독자라면 이런 5가지 구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해 보고, 또 각 구분 속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어떤 지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갔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지도-서양편』에 실린 지도 중에서 흥미로운 지도를 한 가지만 소개하면, <자료20>의 「메르카토르의 프톨레마이오스식 세계지도」이다. 2세기에 활동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는 조감도적인 시각에서 그린 최초의 지도일 뿐만 아니라, 지구가 구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제작한 것이다. 중세인과 달리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서로 다른 지역의 남중고도를 근거로 지구의 둘레가 46,250km라고 계산하였다. 실제 둘레는 약 4만km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러한 지식을 근거로 원추도법에 의거한 지도를 제작하였고, 그의 저작인 『지리학』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1406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이 번역되면서 비로소 고대의 지구 구체설이 부활하였다. 콜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중세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면서 대지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세계 지도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활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근대지도가 성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메르카토르가 지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지도첩에 포함시킨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원래 지도와는 달리 인도양이 내해가 아니라 개방된 바다로 그렸다. 그리고 이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밝혀지는 과정이 곧 ‘대항해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세기 단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및 아프리카 중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반도, 북부아시아를 거쳐 중국의 정보까지 지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로마시대의 대외 교역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양편에서도 언급할 바와 같이, 지도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뚜렷한 퇴보라고 할 수 있는 과정도 거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II. 동양편

『고지도-동양편』은 시대별로 나눈 서양편과 달리 1) 천문도, 2) 세계 및 동아시아지도, 3) 조선지도(조선전도, 도별지도, 군현·도서 및 관방지도), 4) 주제도 등으로 나누었다. 특히 도별지도의 경우는 동람도형, 정상기형, 수진본으로 분류한 점에 특색이 있다.

1. 도별지도의 분류

도별지도를 동람도형, 정상기형, 수진본으로 나누었는데, 도판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편집상의 제약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두고자 한다.

동람도형이란, 『동국여지승람』(1481)·『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의 부도로 제작된 지도 형식이라는 뜻이다. 이 유형의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목판본 즉 인쇄본이라는 점이다. 인쇄된 지도로는 『해동제국기』(1471)과 더불어 가장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쇄된 지도는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만든 지도보다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과급력이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안내』가 인쇄된 것이 1471년이고, 아메리카 대륙의 정보가 담긴 지도가 인쇄되기 시작한 것은 1504년의 조반니 콘타리니의 지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세계지도첩으로 유명한 마르틴 발트제뮐러도 1507년에 12개의 목판을 이용하여 세계지도를 인쇄하였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최초로 42행 성경(라틴어)을 인쇄한 시기가 1450년대인데, 이보다 조금 앞서서 조선에서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인쇄되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인쇄지도를 제작한 시기가 유럽과 같고, 이보다 앞서 우리말로 된 문헌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역시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세계지도이다. 동람도형 지도가 인쇄지도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다만 동람도형 도별지도는 지리적인 정보가 정확한 지도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행정단위인 군현과 진산(鎭山)을 중심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오상학은 동람도형 지도의 진산에 대하여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주산(主山)이나 조종산(祖宗山) 등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전통적인 산악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고을에서 내려오던 산악신앙을 국가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

리하려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상기형은 1740년대에 농포 정상기(1678-1752)가 만든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단서로 하는 지도들을 말한다. 성호 이익의 벗이자 제자이기도 하였던 그는 방위와 거리가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동국지도』의 발문에서 그는 이전의 지도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지도로서 세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부지기수이지만 손으로 그린 것이든 인쇄를 한 것이든 따질 것 없이, 모두 넓고 좁고 모나고 둥근 종이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산천의 위치와 거리가 모두 어긋나 있다. (중략) 이 지도를 가지고 사방으로 다니고자 해도 하나도 의거할 수 없으니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그는 100리를 1척, 10리를 1치로 하는 이른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여 각도 별로 지도를 만들고 이 지도를 합치면 전국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종래의 지도에서 산줄기와 하천이 표현이 부정확하였던 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산줄기를 정리하고, 이들 산줄기에서 물길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자세히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윤곽을 조선 전기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자료24〉).

수진본(袖珍本)은 옷소매(袖)에 넣는 보물(珍)이라는 뜻으로 접는 책자 형태로 소매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든 지도를 말한다. 〈자료26〉의 「팔도재안(八道在眼)」은 ‘팔도가 한 눈에 들어온다’는 뜻을 가진 지도이다. 단순히 지리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구·농지 면적·병졸의 수, 심지어 거북선 등 병선의 수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양반지배층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28〉의 「청구승람 기봉여지(箕封輿誌)」는 기자에 봉해진 땅에 대한 지리지라는 뜻으로 조선전도와 각도별 지도, 그리고 지리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은 접책 형태의 자료이다. 이러한 지도들은 같은 수진본에 속하는 〈자료27〉 「팔역지도」와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유형의 지도가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동람도형이라고 할 수 있고, 「팔역지도」는 거리를 명기하였고, 상대적인 방향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정상기형 지도에 가깝다. 여러 지도들이 가진 특징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고지도들이 갖는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2. 흥미로운 지도들

수룩된 자료 중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은 「함경도해안지도」(〈자료32〉)이다. 책의 말미의 특집에서 김기혁교수님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해안지형과 마을의 모습까지 상세히 나타내고 있는 지도이다. 특히 가구 수, 수심, 창고 및 염막 등의 시설까지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덕원원산도(德源元山圖)」를 보면, 제1면에는 두남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그려져 있다. 그 상단에 “본읍 즉 덕원읍은 북쪽으로 15리, 안변은 남쪽으로 35리, 학포(鶴浦)는 남쪽으로 80리, 철령은 남쪽으로 100리, 세 방향으로 추가령까지 160리, 서쪽으로 관을 넘는 통로인 마식령(馬息嶺)까지 60리, 원산은 14개 동으로 원래 호구는 480호이고, 부호(付戶)가 천 여가라고 한다. 앞바다(前洋)의 수심은 2장(丈), 중앙(中洋)은 6~7장, 외양(外洋)은 바닥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도상에는 마을 이름과 호구수도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도 내륙의 산지는 바다에서 바라다본 모습으로 해안가의 섬은 대부분 육지에 바라다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각종 문자기록도 육지 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된 것도 있고, 바다 쪽에서 읽도록 되어 있는 예가 있다. 원산 내륙에는 증봉(甑峯), 석근리에는 망덕(望德), 야태(野太)에는 이섭산(李涉山)이 해안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섬이름은 육지 쪽에서 읽도록 기재되어 있다.

〈자료5〉의 「여지전도」는 서구식 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세계지도로, 서양의 지리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며, 조선의 세계 인식에 큰 영향을 준 지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지도와 가장 닮은 지도를 꼽으라면 단연 1402년에 조선이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특히 전체 지도에서 아프리카와 인도 등의 비중, 동남아시아 지역의 표현이 그렇다. 새롭게 나타난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경계나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책에 실린 여러 세계 지도를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의 크기나 남아시아의 거리가 제대로 나타나 있다. 19세기에 그려진 지도인데도, 15세기의 세계관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신대륙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도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각국도』 「일본전도4」의 대마도 지도

〈자료9〉의 대마도지도는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가 사행시 사용, 혹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마도 지도이다. 이전에 조선에서 제작된 대마도지도보다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고 해설하였다. 그런데 이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국도』 중 「일본전도4」로 되어 있는 대마도지도와 동일한 계통의 지도이다. 또한 이 두 지도의 원형은 일본 명치대학(明治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대마국전도(對馬國全圖)」은 계통의 지도이다. 「대마국전도」에서는 해안가를 따라서 더 많은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해안가의 지명이 일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해서 태두리에는 한자로 지명을 다시 써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도는 그 중 일부 지명만 해안가를 따라 한자로 기록해 놓은 차이가 난다.

이 지도는 1864년 부산 지역의 화원이었던 변박(卞璞)이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일본의 대마도 지도를 보고 모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1471년 『해동제국기』에 전하는 대마도 지도보다 자세한 지도를 그 이후 조선을 제작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1700년에 실제 지형과 거의 유사한 대마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변박이 모사한 원도는 1700년 이후에 만들어진 「대마국전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34〉의 「한국염업조사도」는 해당 지도가 실린 『한국염업조사보고』가 1907년에 출간된 것이기 때문에, 1907년에 제작된 것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35〉는 일본 「삼중현 한해어업조합 지예망 어장 연락도」라는 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설명하는 글에서는 1904년에서 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도의 기재사항을 보면 특정 해면에 대하여 일본인 어민들이 지예망 어장 사용을 출원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부산 기장군 대변의 경우는 지마군(志摩郡) 답지촌(荅志村)의 중촌송조(中村松助)와 이등장지조(伊藤庄之助)의 이름이 보이고, 출원 구역은 각각 대변항 내 및 대변항 북쪽 해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1910년까지는 마을 앞 해면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 주민이 전통적인 어업권을 가진 공간이었고, 일정 거리 안으로 일본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예망 어장을 일본인에게 허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도는 1910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3. 축소되는 외부에 대한 관심

『고지도 - 동양편』에 실린 조선의 지도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다. 조선 내부를 그린 지도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자세해지고 있지만, 조선의 바깥을 그린 지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가 없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전기에는 대마도나 일기도에 대해서 일본보다도 자세한 지도를 제작하였고, 일본이나 유구에 대해서도 그 시대에 구

할 수 있는 가장 자세한 지도를 확보하고 이를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조선 전기는 왜구 대책의 일환으로 대마도, 일기도, 구주, 및 본주의 각 지역 세력과 폭넓게 교류하였고, 일본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컸다. 그 결과물이 『해동제국기』라고 할 수 있다. 『해동제국기』에 실린 지도는 당시에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자세한 일본 및 유구국 지도였다고 할 수 있고, 조선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와 일기도의 지도도 대단히 상밀하다. 사실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는 일본이 17세기까지 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지도였다. 18세기에 들어서도 대마도가 직접 제작한 「원록국회도(元祿國繪圖)」를 제외하면, 일본에서조차 극히 개략적인 지도가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의 세계지도나 일본 지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일본지도의 경우도 일본에서 입수하거나 모사한 지도를 제외하고 조선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지도는 극히 소략하다. 세계지도도 마찬가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당시 알려진 구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조선이, 나중에는 「천하도」라는 극히 단순하고 공상적인 지도를 그리는 수준을 퇴보하였다(〈자료19〉, 〈자료20〉). 그렇다고 결코 조선이 지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지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관심은 내부로만 향하고, 바깥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데 멈추어 있었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현재의 우리도 우리 바깥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조선은 내부를 그린 지도는 계속 발전하였으나, 조선의 바깥, 특히 일본에 대한 관심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의 일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이해가 조잡해지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도 결국 미숙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 일본이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지배층과 폭넓게 교류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다. 이처럼 우리는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그 사회의 인식 수준과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고지도는 어느 순간에는 가장 새로운 정보를 담은 자료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새로운 정보를 담은 지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고지도의 효용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지도에는 그 지도가 제작된 시대의 정보가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제작한 사상·지리관·세계관·기술·기억 등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고지도는 한 장의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다. 그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고지도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국립해양박물관의 고지도 컬렉션이 앞으로는 책으로 발간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 실감형 미디어아트 기획전시

심연深淵의 상상想像 : Imagine the Abyss

전시를 되돌아보며

김경민 국립해양박물관

I . 들어가며

인간은 물속에서 호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간은 차가운 바다 속에 들어간다. 누가 언제부터 잠수를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천 년의 세월동안 인류는 바다에서 활동했고 그 중 일부는 생명을 담보로 잠수를 시작했다. 인간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바다 속을 탐구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저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어왔다.

이번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은 인간과 바다의 관계를 '잠수행위'를 통해 살펴본다. 인간이 가져온 해저 세계에 대한 환상, 또 바다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위해 고민해온 흔적들, 그리고 해저가 가지는 미래가치를 소개한다. 또한 <심연의 상상>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관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로 인간의 해저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다양한 영상매체로 표현했다. 5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개최되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인원만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려 코로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 내부 직원들의 노력과 안전방역 수칙을 준수한 모든 관람객 덕분에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II . 전시 내용에 대하여

1. 기획의도

전시는 “바다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는 인간들이 왜 잠수를 시작했으며, 인간에게 해저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두 가지 물음으로부터 기획되었다. 인류에게 바다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바다는 늘 차갑고 거칠었으며, 바다로의 도전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랐다. 특히 '잠수행위'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인류는 거친 바다에 끊임없이 도전하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해저 세계에 대해 동경해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와 설화 속에서도 바다의 신이 존재해왔고, 인간은 끊임없이 해저세계에 대해 자유로이 상상한다. 바다 속에 더 오래, 더 깊이 머무르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깊은 바다까지 탐험한 인류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해저세상을 꿈꾸고 있다.

<심연의 상상>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해저 세계를 가상현실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이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심연에 대한 상상의 인문학적인 가치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2. 주제별 구성

전시는 총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인류, 잠수를 시작하다.”라는 잠수의 기원과 당시 사람들의 상상 속 깊은 바다를 소개한다. 생계를 위해 잠수를 했던 사람들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잠수하는 인류의 흔적을 살펴본다. 또 다가갈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경을 품어왔던 인류가 구전 설화 속에 상상하고 묘사한 해저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2부 “깊은 바다 속, 한계를 뛰어넘다.”에서는 근대과학이 발전된 이후, 1분이라도 더 오래 물속에 머물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잠수장비를 소개한다. 숏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전을 통해 결국 지구 상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바닥까지 도달한 인류의 모험과 탐험의 역사를 소개한다.

3부 “노틸러스21,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해본 새로운 해저 세계를 가상현실의 개념을 도입해 실감나게 표현한다. 이 실감형 미디어아트는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과 ‘딤러닝’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관람객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다채로운 비주얼의 해저 세계에 몰입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부 “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하다.”에서는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해저 세계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왔던 수중로봇과 함께 오랜 시간동안 연구가 이어져온 해저기지, 해저주택에 대한 연구 성과와 현재 개발 중인 해저기지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Ⅲ. 전시 연출에 대해

1. 디자인 계획

전시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람객에게 전시의 정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일 우선 고민되어야 하는 것은 관람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였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가’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존 박물관이 가지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관람객에게 상상의 영역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자연스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를 운영하는 전시연출방식을 사용해 가상세계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연출법은 자칫 잘못 설계하면 전시의 본질 보다 도구에 집중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 매체는 관람객과 기획자가 잘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시연출 디자인을 할 때 디지털 매체를 통해 관람객의 이목을 끄는 것과 동시에 기획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최적의 방향성을 염두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한 의도를 관람객에게 경험으로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전시장 평면 구성을 계획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잠수의 기원, 역사, 과학기술 발전 등 정보성 콘텐츠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1부와 2부의 동선은 선형적 구성했다. 관람객은 강제 동선을 통해 기획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시간 순서로 받아들이도록 계획했다. 3부는 상상 속의 영역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구성된 만큼 1, 2부와 달리 탁 트인 공간 전면에 와이드 스크린을 설치하여 미디어연출의 웅장함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동선을 활용하여 2부에서 3부로 넘어가기 위해 커튼을 넘기는 순간 관람객이 ‘와우’ 할 수 있는 요소를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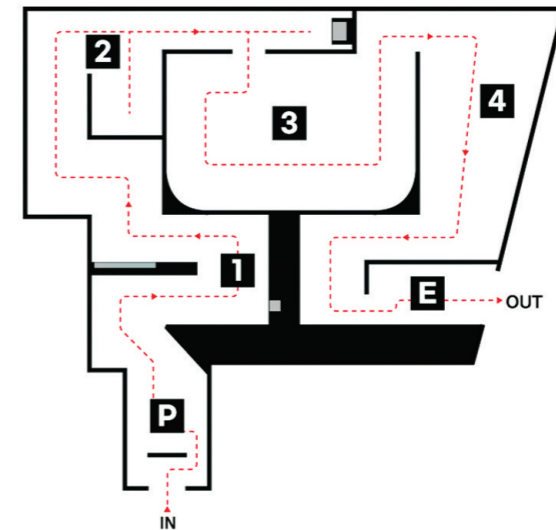


그림1. 전시장 평면 구성

동선 외에도 관람객에게 전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명 연출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색상계획을 통해 전시장 내 톤앤매너를 일관적으로 유지하였다. 공간의 면적과 유물장 내부 컬러를 활용해 콘텐츠의 강약을 조절했다.

2. 실감형 미디어 연출에 대해

인공지능, 통신, AR/VR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박물관 전시의 연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연출 방식은 기존 박물관에서 다루왔던 전시 콘텐츠를 변화하는 양상을 가져온다. <심연의 상상>의 경우에도 잠수의 역사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의 타이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해저 세계를 가상현실로

보여준다. 이로써 전시는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연출을 활용했다.

몰입형 영상 콘텐츠 Immersive Room

이번 전시의 특징은 전시 구성 중 하나의 부, 3부“노틸러스21,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다.”를 전부 몰입형 공간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관람객은 와이드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와 직접 교감하며 몽환적인 상상 속 심연의 세계를 경험한다. 미디어아트는 Sunlight(그림 3) / Midnight(그림4) / Abyss(그림5)의 총 3단계로 나뉘어 각기 다른 해저의 상상을 담았다.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존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이머시브 콘텐츠와는 다르게 각 씬(Scene)마다 오브제들이 가상현실 속에 살아 있어 관람객과의 호흡을 통해 움직임을 머신러닝한다. 각 오브제들의 움직임은 반복적이지 않으며 다른 느낌의 영상을 연출한다. 약 27m의 와이드 프로젝션 맵핑과 스크린 전체 영역을 터치할 수 있는 센서블렌딩을 통해 단발적인 탭핑(tapping) 뿐만 아니라 드래그(drag)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를 세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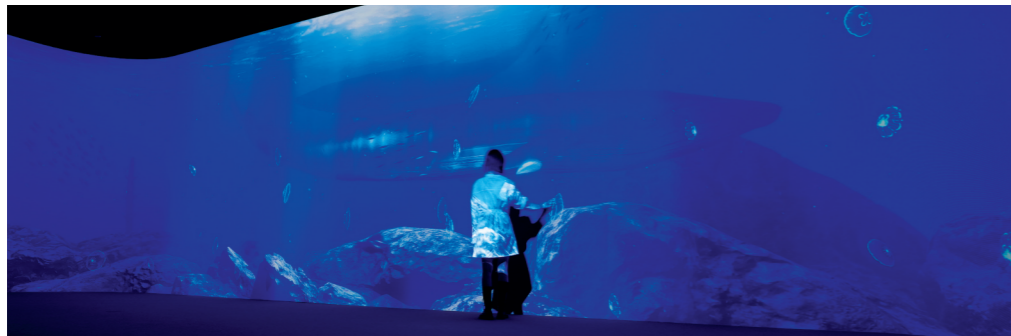


그림2. 이머시브룸 내부

1)Sunlight: 얇은 바다를 비추는 햇빛에 따라 일렁이는 바다의 영롱한 색채와 그 속에서 해양 생물들은 관람객의 터치에 반응하며 함께 유평한다.



그림3. Sunlight

2)Midnight: 우리가 알고 있는 심해에 대한 고전소설 속 크라켄이 등장하며 관람객의 반응을 따라 움직이며 뺨어 나아가는 연출이 표현된다.



그림4. Midnight

3)Abyss: 아무도 닿지 못한 미지의 공간인 심연의 세계, 그곳에 손을 뻗으면 심연의 상상은 빛무리가 되어 관람객을 감싼다.



그림5. Abyss

Sunlight Ocean : 무빙 라이트 연동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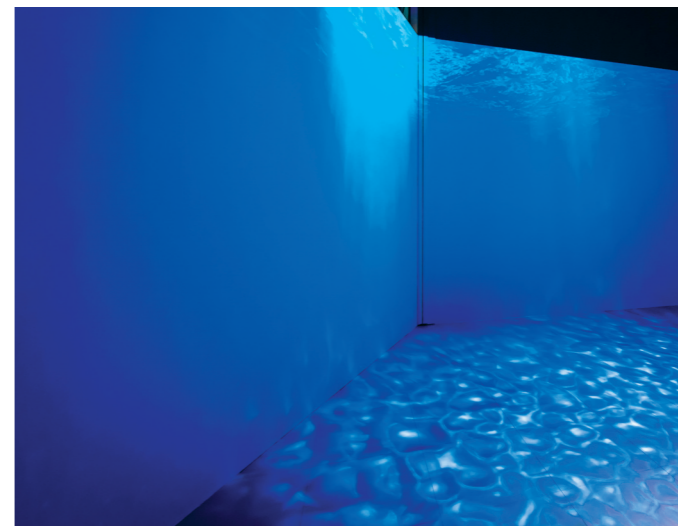


그림6. 프롤로그 전경

전시의 시작점, 인트로 공간에 특수조명을 활용하여 수중 아래 몽환적인 바다를 표현하는 콘텐츠다. ‘해저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전시가 내포하는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연출했다.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듯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시의 도입부부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Particles waves 플로어 프로젝션 맵핑

전시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구간 미디어아트를 구성하여 해저 속 심연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나가는 듯이 연출했다. 파도의 비주얼과 심연의 파티클을 통해 전시 속 메타포가 이어지며 하나의 톤은 유지한다. 포지셔닝 트래킹 시스템에 따라 관람객의 걸음 한걸음마다 심연의 파티클들이 관람객을 감싸게되며 밖으로 나가는 관람객을 따라 이동하며 전시를 마치게 된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잠수정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월 콘텐츠와 절베른의 '해저2만리'의 스토리를 인터랙티브 북으로 제작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연대적 정보를 전시하는 구간에는 LED패널을 액자 형태로 배치하여 영상 자료를 통해 전시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이 연출하여 전시장의 생동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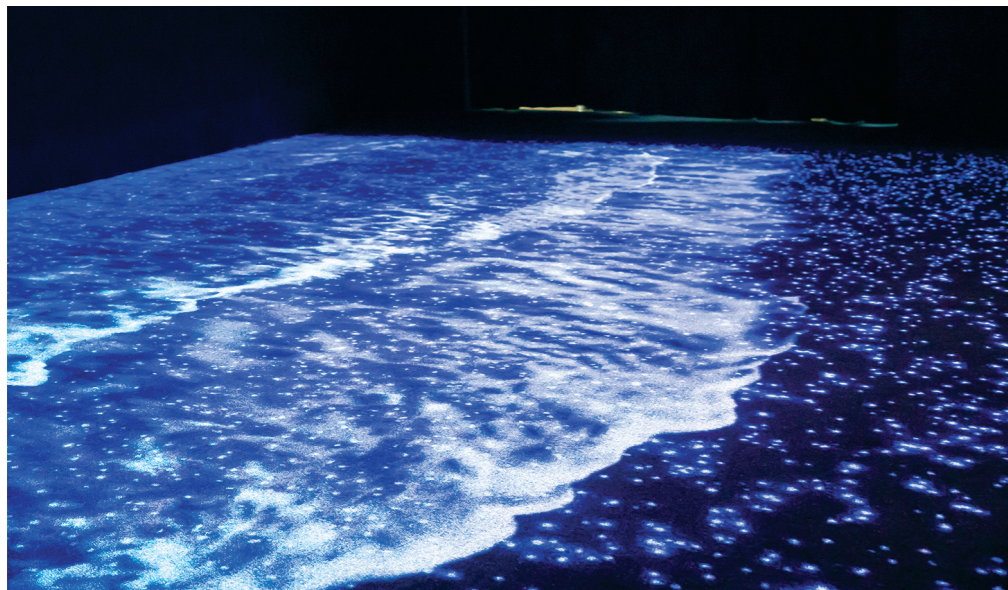


그림7. 에필로그 전경



그림8. 인터랙티브 북




IV 그림9. 인터랙티브 월

마무리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은 예전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일상이 본격화된 지금, 박물관의 전시의 연출 방식을 넘어서 전시 콘텐츠와 형태마저 변화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휴관과 인원제한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올해 개최한 <심연의 상상>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몰입형 연출 방식을 전시에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VR투어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전시 방법을 실험했다.

이번 <심연의 상상>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첫 실감형미디어아트 기획전시를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 이슈로 관람객의 제한이 있었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회자되며 '심연의 상상' 전시명이 수천 회 언급되었다. 기존 국립해양박물관의 주 방문 연령층이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단위 관람객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등 새로운 연령층의 관람객을 확보하고 박물관의 인지도가 다양한 연령층,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1. 10. 30. |
 게재확정일 : 2021. 12. 01. |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기념전시
우리가 열어나가는 바다
전시 리뷰

조민주 국립해양박물관



기획 의도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는 해양수산부의 통합행정 25년을 기념한 전시로서 1996년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그간 행적과 우리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마련되어졌다. 해양수산부의 3대 정책인 '상생', '성장', '포용'이라는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아, '상생=우리', '성장=열어가다', '포용(생명)=바다'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미래의 바다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펼치는 장이 되기를 바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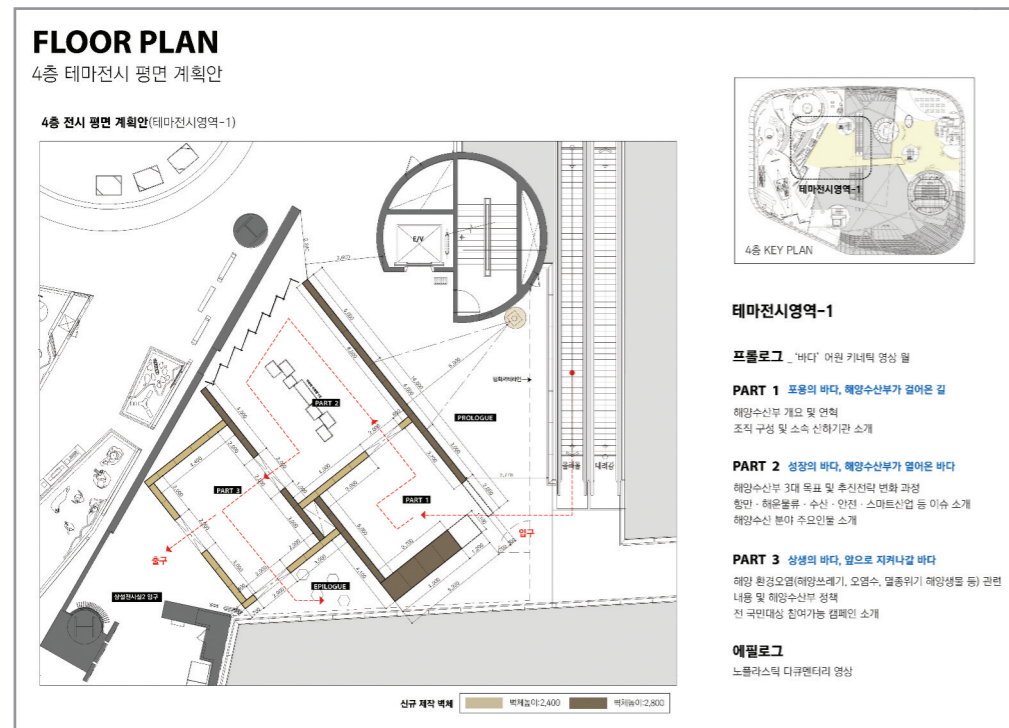
도1. 테마전시 전경



도2. 전시 타이틀

전시 구성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정부 기관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 우리 바다에 대해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따라서 전 국민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참여 형식의 전시로 내용을 준비하였다. 기존에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그려보고, 또 들어보는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3. 테마전시 평면도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4층 기존 테마전시실과 더불어 박물관에서 전시 공간으로 쓰이지 않았던 곳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영역의 확장과 변화를 위한 연출기법으로 바닥 사인물과 전시의 포인트 컬러와 주요 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시 구역은 총 3부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주요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연혁, 설립목적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을 소개하였으며, 연혁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걸어온 길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인포그래픽화하였다. 특히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의 수산청, 해운항만청 시절의 사진들을 선보여 해양수산부의 오래된 역사를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력하는 사업들과 해양수산의 다양한 분야 속의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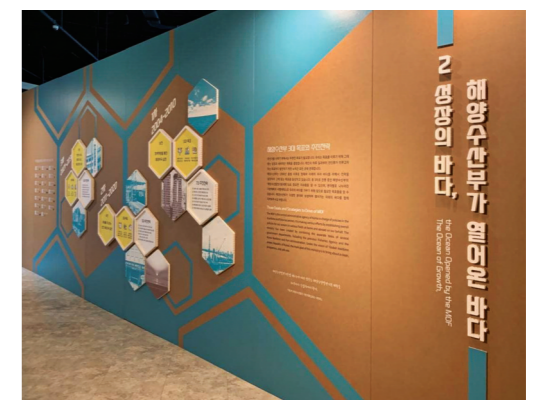
도4. 1부 포인트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 자료를 선보였다.

3부에서는 우리 바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해양 환경'을 전시의 마지막 부에 소개하여 국가 정책과 더불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소개하여 강조하였다.

전시연계 테마 구역에서는 해양을 주제로 한 VR 콘텐츠 및 메시지 존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체험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고자 하였다.

해양 환경 관련 정보를 읽고 따라 그려볼 수 있는 그림그리기 체험과 앞으로



도5-1. 2부 대주제 및 해양수산부 주요정책 소개



도5-2. 2부 해양정책 주요 분야



도6. 3부 대주제 및 해양환경 소개

미래의 바다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린피스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제공받은 영상과 인포그래픽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체험 활동존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어우러져 진행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과 바다를 위한 실천을 적는 청소년들,

그리고 VR 체험과 영상을 관람하는 어른들 등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종종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획했던 여러 체험이 가능한 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상설전시실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수산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친환경 전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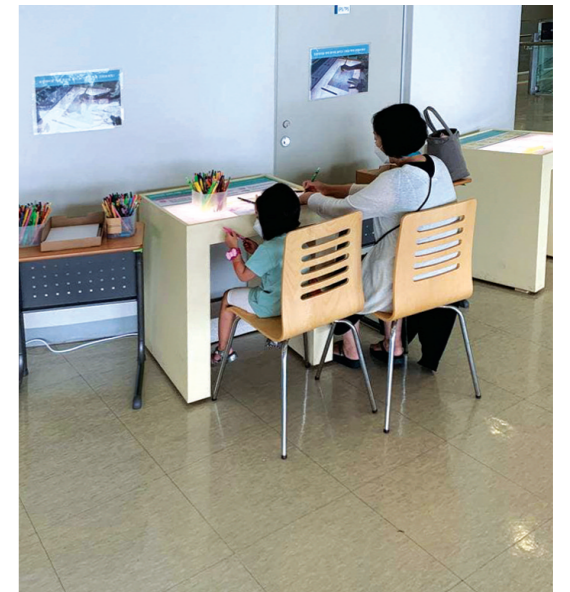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의 발생 등의 환경오염은 인류를 넘어서 지구를 병들게 한다. 이런 현상은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다.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은 문화예술계에서도 점차 퍼지고 있다. 전시 연출에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들은 결국 대량의 산업폐기물이 되며, 이것은 항상 기획자들에게 고민의 대상이었다.

이번 전시는 해양수산부를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성장과 같은 생산적인 정책들과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인 다양한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도7-1. 그림그리기 체험



도7-2. 체험 활동 모습

소개하고자 하였다.

해양수산부의 목표는 해양쓰레기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는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화를 선언하여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 탄소배출 제로 등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 박물관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전시연출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목공은 튼튼하며 연출을 구상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한번 사용하면 폐기해야하고 대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목공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를 사용해보려고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전시 자재로써 목재를 대체할 다양한 후보군 중에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이면서 전시 자료들을 배치할 수 있는 튼튼한 허니콤보드라는 자재를 활용하게 되었다. 견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벽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공간을 구획하기 좋았으며, 특유의 절단면 패턴이 또 하나의 디자인 컨셉이 되었다. 또한 박물관에 제작되어 온 자재들은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던 허니콤보드를 재활용한 것이었고, 우리 전시가 철거 된 이후에는 다른 필요한 곳에서 또 재활용 되었다.

홍보인쇄물의 경우에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현수막으로 제작하였으며, 재생용지를 사용한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혀 환경오염문제가 빠른 시일에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한 이번 전시를 통해 전시를 소비하는 주체들 또한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전시를 마치며



도8. 허니콤보드 벽체 시공 모습

우리 바다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 주지만, 또한 편으론 지켜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배우고 또 알아가는 기회를 통해서 국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번 전시는 해양수산부의 역사를 통해 본

앞으로의 바다와 지구에 대한 주제였던 것만큼,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존의 전시 기법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모두가 점차 고도화 되는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걸 말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며, 이번 전시 리뷰를 마치도록 한다.



도9. <우리가 열어나가는 바다> 포스터

2021년 학술대회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 학술대회 리뷰

김효영 국립해양박물관

기획 의도

국립해양박물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의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휴먼스토리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해양, 수산, 문화, 산업 등 분야별 보통 사람들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삶의 기록을 해양문화유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각 주제별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12명의 생애사를 모아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라는 이름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조사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로 기획하여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의 분야별 조사 성과 및 의의를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술조사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의 과제를 토의하였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개최일인 7월 2일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에 따라 100명 미만의 청중이 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대강당 출입자는 체온 측정, 명단 작성,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입장했으며, 참석자 및 청중 모두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어 원활히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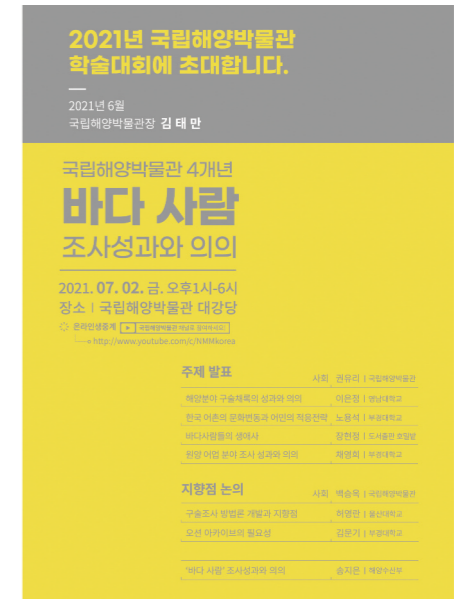


그림1. 학술대회 초대장

발표 구성과 내용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지향점 논의’의 2부로 구성되었다. 4개의 주제 발표는 각각 해양, 수산, 문화/전통음식/민속, 원양어업 분야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이 조사성과와 의의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해양분야 구술 채록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초기에 합류한 발표자는 구술자 선정과 목록, 아카이브의 구축, 구술의 내용과 의

구분	내용	발표·사회자
주제 발표		사회 권유리(국립해양박물관)
	해양분야 구술 채록의 성과와 의의	이은정(영남대학교)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	노용석(부경대학교)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 문화/예술/일상	장현정(도서출판 호밀밭)
	물과 물의 경계를 넘나들다 - 원양어업	채영희(부경대학교)
지향점 논의		사회 백승욱(국립해양박물관)
	구술자료와 『바다 사람의 생애사』이라는 공공문화콘텐츠	허영란(울산대학교)
	바다의 일상, 바다의 열전: '오션 아카이브'의 느리지만 큰 첫 발걸음	김문기(부경대학교)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	송지은(해양수산부)

의, 구술채록의 성과와 전망의 순으로 발표하였다. 12명의 해양분야 구술자를 선정하고 구술자별 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후 각 12명의 구술자의 구술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며 구술 작업에 대한 어려움과 성취감을 공유하였다. 구술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미처 가시화되지 못한 존재와 그들의 삶의 맥락에 관심을 두고 구술자의 경험을 근현대 사회경제사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렌즈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구술자들이 한국의 해양산업 성장과 함께 삶의 좌표를 설정하게 되는 방식과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구술채록의 과정을 수행한 점을 큰 성과라 설명하였다.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과 어민의 적응전략”은 한국 동남 서해안의 연안 어민 12명을 인터뷰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 어촌의 문화변동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술자에게 생애사와 일상 범주에 관해 질문한 결과로 구술자와 공통체가 어떤 위기와 변동에 처해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구술자들은 크게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노동력의 변화, 남획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연안어업의 어려움, 국가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라는 4가지의 한국 어촌이 처한 공통된 문화변동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변동의 요소들은 어민과 어촌에게 그리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마을 정체성의 보존과 활용, 주민주도형 어촌 관광마을의 트렌드 만들기를 들었다. 각 방안은 울산 제전마을박물관과 전남 함평 들머리 마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이번 연구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하며, 구술사를 통해 지역과 개별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다사람들의 생애사 - 문화/예술/일상”은 근대성의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성과 해양성을 들어 새로운 세계관과 시대정신은 주로 육지보다 바다와 연관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로써 바다의 중요성을 표현하였다. 서울 곳곳의 일상을 ‘지도’로 기록한 아마추어 서울, 해방촌 마을기록단, 수원 골목잡지 사이다, 광안리 민락동 구술아카이브, 부산 영도 깡깡이 마을과 대평동 구술생애사, 매축지 마을과 온천장 등 여러 사례를 통해 구술생애사와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만난 12명의 구술자의 삶과 의미를 소개하며 구술사의 활용방안으로서 콘텐츠와 커뮤니티 아이템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의 마지막 발표는 “물과 물의 경계를 넘나들다 - 원양어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2021년 휴먼스토리 연구용역의 원양어업 부분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 원양어업 관련 통계와 지표를 살펴보고 주요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원양어업 발전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구술자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구술생애사 인터뷰의 질문범주는 유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고향, 가족 배경, 교육, 직업, 결혼, 양육 등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또, 원양어업 은퇴자 및 60대 이상의 보통 사람으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을 선정했으며, 어장, 어법, 어종, 제반 산업 별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발표자는 선정된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뒤이어 주제 발표에 대한 총평과 과제에 대한 지향점 논의를 진행하여 구술사학적 및 역사학적 관점 그리고 사업의 배경과 지향점의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향점 논의의 첫 번째 발표는 “구술자료와 『바다 사람의 생애사』이라는 공공문화콘텐츠”로 시작되었다. 발표자는 구술생애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한국 구술사 작업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문화콘텐츠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구술사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시급함’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의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의 경우에도 50-60대의 젊은 구술자를 포함하고 있어 ‘시급성’보다 가까운 과거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주된 내용이라 하였다.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구술 아카이브 축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술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무엇을 위한 구술인지, 어떻게 진행된 구술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구술자의 몸짓, 표정, 목소리 등 현장성을 포함한 구술자의 의도 그대로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원고 집필의 원칙과 취지를 독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찬가지로 구술 출판물이 연구자들을 위한 것인지 일반 독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편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역사학자와 민속학 및 인류학자의 접근방법과 주된 관심이 서로 달라 관련 학문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다의 일상, 바다의 열전: '오션아카이브'의 느리지만 큰 발걸음”에서 발표자는 『바다 사람의 생애사』의 결과물이 유사무서(有史無書)였던 해양사 주인공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광

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직업의 인물발굴과 조사, 해양산업과 해양문화의 현황 및 과제가 반영된 오션 아카이브의 첫 걸음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일상의 기억과 역사적 사실의 기록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 가덕도 ‘송어들이’의 전통어업 방식이 일본의 육소장망어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만들어진 전통과 역사의 검증이 필요하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구룡포의 과메기와 미가키(身欠), 초분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어촌마을 박물관 등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지향점 논의의 마지막은 “바다 사람” 조사 성과와 의의”로 휴먼스토리 사업 목적과 배경, 추진현황, 성과와 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발표자는 휴먼스토리 사업을 해방 이후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생애사 기록을 축적하여 해양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해양 및 수산분야, 연안어업, 사라져가는 해양문화의 주제로 『바다 사람의 생애사』 3권이 출간된 경과를 소개하였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해운/항만, 해녀, 해양과학, 가공업, 영토/환경, 유통/판매업, 레저/관광, 공공영역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사업의 결과로 획득된 사진과 영상, 음성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술조사결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술적·정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며, 박물관과 전시·교육 등을 통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성과와 전망

2021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국립해양박물관 4개년 바다 사람 조사성과와 의의”는 『바다 사람의 생애사』의 구술생애사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특히 역사학, 인류학, 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구술생애사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서로 다른 학문적 시각으로 상호보완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보통의 바다 사람의 생활사 기록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생활사라는 점에서 기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립해양박물관은 휴먼스토리 연구용역 결과로 축적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후 조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바다 사람들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주신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원고투고일 : 2021. 10. 30. |
게재확정일 : 2021. 12.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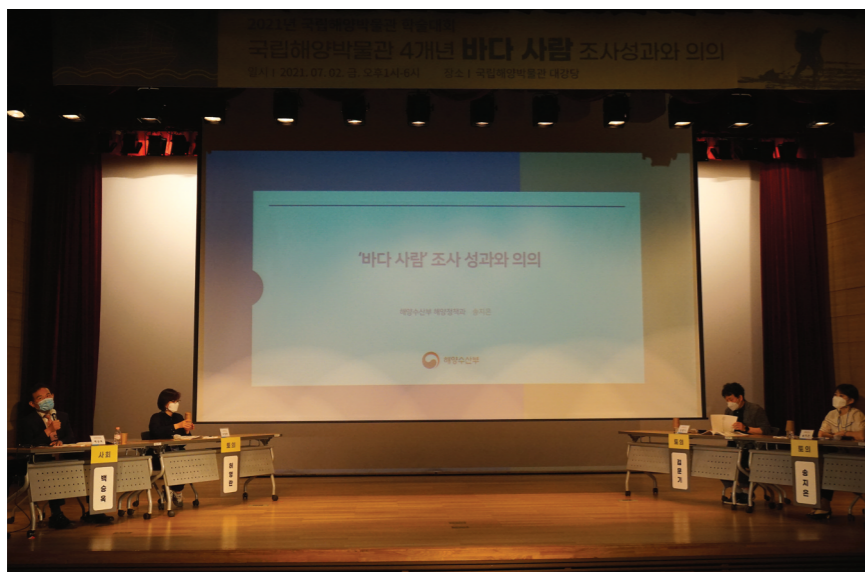


그림2. 지향점 논의 모습

『해양유산(Ocean heritage)』 간행규정

제정 2019.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 해양유산 분야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해양유산의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간행하는 학술지『해양유산(Ocean heritage)』(이하 "본 학술지")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간행)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내용) 본 학술지의 내용은 해양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논평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① 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3인~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보존과학, 역사학, 인류학, 해양학, 해양인문(문화)학 분야 등의 관련 연구자 중,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고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학예연구관,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구성하며 학예연구실의 추천을 거쳐 국립해양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촉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 결정
 - 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 4. 박물관이 간행하는 학술지인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③ 편집간사는 학술연구팀장이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이상,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지며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회의참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원고심사

제7조(심사위원 선정)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원고별 관련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별원고 및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발표 후 보완된 원고는 2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원고심사 원칙)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원고를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평가지표	항 목	배점(100점)
	1. 논문제목의 적절성	5
	2. 형식 및 체제의 정연성	15
	3.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4. 논증과정 및 논거·용어의 적절성	25
	5. 연구 결과의 효용성 및 시사점	25
	6. 참고문헌의 적절성	5
	7. 요약문의 적절성	5

②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의뢰된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미만)’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회에 투고원고심사서(서식3)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게재 여부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심 사 결 과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	• C판정 : 해당위원 재심 • D판정 : 제4자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간행규정 7조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재심사	• C판정 : 해당위원 재심 • D판정 : 제4자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D)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			
기타			게재불가 (반려)	

제4장 심사판정 후 처리사항

제10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원고투고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원고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노트, 보고서,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논문게재의 취소) 투고된 원고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원고의 본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제13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게재 확정된 원고를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집필자로부터 저작물 이양 동의서(서식4)를 받아야 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집필자는 온라인상(인터넷상)에서의 복사, 배포, 전송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박물관에 이양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 비상설위원회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 1인 : 편집위원장이 겸임
2. 투고된 원고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3인 이상

③ 본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선정된 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혹은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기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범위)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하는 모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금해야 한다.

1. 타인의 생각, 연구내용, 연구체계, 연구결과,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
2.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사용하는 '중복게재' 행위
3.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로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4. 연구 대상·자료·과정·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5. 투고된 원고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9조(연구 진실성 검증)

① 본 학술지 게재 원고 및 투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판정 이전에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을 간주한다.

③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및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 등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호 학술지의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지 및 원고료 회수
2. 해당 연구자에게 경고문 발송
3. 해당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② 게재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③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본 학회지의 투고원고를 향후 3년간 심사할 수 없다.

제24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01.)

『해양유산(Ocean heritage)』원고 투고 규정

제정 2019.09.25.

개정 2020.05.29.

제1조 (정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보고문, 서평, 연구노트, 단신, 논평 등으로 구분되며, 해양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해양유산(Ocean heritage)"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된다.

제3조 (원고 투고)

① 투고자는 첨부("『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동 집필일 경우, 주저자(연구책임자)와 공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표시한다.

제4조 (원고 내용)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5조 (원고 매수 및 원고료)

원고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로 인해 원고의 분량이 150매를 넘더라도 최대 10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노트,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은 최대 50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한다.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원고 제출)

원고는 원고저장파일(hwp 또는 doc) 1부, 첨부자료(사진, 도면 등)의 디지털 파일, 초록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저작권 이양 동의서 1부를 E-mail로 원고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 심사)

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 의 경우는 필자에게 재심사 수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8조 (투고자의 권리와 제한)

①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박물관에 이양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기타)

① 필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를 원고 말미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필자의 원고 교정은 3회 이내로 한정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2019.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유산(Ocean Heritage)』 원고작성원칙

1. 원고작성

-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②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한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한글음과 한자의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대괄호 [] '를 사용한다.
- ③ 영어로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한다.
- ④ 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핵심어(Key words)는 5개 이상 기재한다.

2. 필자표기

- ① 필자명에 현 소속기관을 병기한다.
- ②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③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임' 을 명기한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 논문 제목에 각주로 명기한다.
- ④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 ⑤ 투고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반드시 제1 저자를 명시하고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 ⑥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 저자로 간주한다.
- ⑦ 제1 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3. 원고체제

- ① 용지설정 : A4,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60%
- ② 여백주기 : 위 15, 아래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 ③ 글자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 · 인용 9), 휴먼명조
- ④ 문단모양 : 원 · 오른쪽 0, 첫줄 들여쓰기 10

4. 항목

- ① 항목은 1 >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단, 목차는 장(1)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 ②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번호를 매긴다.

5. 표와 도

- ①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 로 표기한다.
- ② 표를 제외한 사진, 도면, 지도, 일러스트 등은 모두 '도' 에 해당되며, 도의 제목은 하단 좌측에 '도' 로 표기한다.
- ③ 표와 도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 ④ 표와 도의 설명은 아래에 ※를 하고 기재한다.

6. 인용문

- ①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석문처럼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원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인용문은 위 · 아래 문단으로부터 한 줄을 띄운 후 내용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10pt).
- ③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7. 각주와 참고문헌

- ① 각주와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표기하되, 참고문헌의 경우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논문의 전체 페이지 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고서, 한글 문헌, 외국 문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 ② 고서 등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三國史記』
- 『朝鮮王朝實錄』

- ③ 한글 문헌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논문 : 필자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혹은 저서명)』권(호), 출판사명, 쪽수.
- 한글 저서 : 저자명, 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쪽수.

- ④ 영문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단행본은 책명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술지명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영문 논문 : 필자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이탈릭체) 권(호), 출판사명, pp.1~5.
- 영문 저서 : 필자명, 연도, 저서(이탈릭체), 출판사명, p.5.

- ⑤ 번역서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번역서 : 저자명, 연도, 『한글저서명』, 역자명(원제, 원저 출판년도), 출판사명, 쪽수.

- ⑥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국문의 경우 '홍길동 등' , 영문의 경우는 'Kim et al.' 양식으로 표기한다.

- ⑦ 하나의 각주에 여러 개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생반점(:)을 사용하며, 동일 저자의 논저를 표시할 경우에는 쌍점(:)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 ⑧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연도, 위의 논문(책), 쪽수.' 혹은 '저자명, 연도, ibid, p.5.' 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⑨ 한글 문헌과 외국 문헌이 함께 서술되었을 경우 한글,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표기한다. 문헌의 표시 순서는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수록한다.

- ⑩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신문사, 1910.01.01 「신문기사 제목」
- 국립해양박물관(<https://www.knmm.or.kr/>)

8. 원고제출

원고에 수록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원고 1부, 원고투고신청서 1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를 E-mail로 원고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 김태만
기획 윤석홍, 백승욱
편집간사 서영남
편집 및 교정 방민규, 김효영, 권현경, 김재휘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 / 051-309-19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발행일 2021. 12. 24.